

발간등록번호 : 11-1290000-000221-14

#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제32집

(2015. 11. ~ 2017. 10.)



국 방 부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 32 집

국 방 부



#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제32집

(2013. 11. ~ 2015. 10.)



국 방 부



## 서 문

최근 사회가 다원화되고 권리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 행정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업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발전에 따라 갈등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국방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령 해석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이러한 현실에 따라 정확하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에 매진하고 있으며, 1964년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1집을 발간한 이래 2016년까지 총 31집의 질의응답집을 발간함으로써 그 노력의 결실을 정기적으로 정리, 국방 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32집은 2015. 11. 부터 2017. 10. 까지의 법령해석 중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거나, 법리적 논점이 대립되었던 중요한 사례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질의응답집이 법치주의 구현에 기여하고, 국방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 3.

국방부 법무관리관 노 수 철





## 목 차

제 1 장 헌법, 행정법 및 조직.....	1
1. 사관학교 명칭 사용 관련 .....	3
2.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의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지 여부 .....	6
제 2 장 인사 .....	9
3. 남성 군인의 불임·난임 휴직 .....	11
4. 재임용 심사 전 군의 치의 장교 명예전역수당 기준 정년 .....	13
5. 전직지원교육 지원 요건 상 복무기간과 휴직기간 산입 .....	16
6. 장기복무장교 5년차 전역 .....	18
7. 구「군인보수법」 제17조 ‘국가비상사태’ 해석.....	23
8.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특정 병과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5
9. 개정된 별정군무원 근무상한연령의 단계적 적용가부 .....	27
10. 전시 예비역 간부의 병역의무 연장 .....	29
11. ‘군수용자’, ‘영창시설’의 개념과 계호업무종사자 범위 관련 .....	31
12. 군무원 근로계약 시 계약 명의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으로 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35
13.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의 허가범위 .....	39
14.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	42
15.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검토 .....	45
16.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해당여부 .....	47
17. 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대원 해당성 .....	50
18.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 유지 연령.....	52



# CONTENTS

- 19. 무단국외여행자 징계 ..... 54
- 20. 기소휴직과 무죄판결 ..... 57
- 21.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 ..... 59
- 22. 군무원에 대한 검직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장인지 여부 ..... 61
- 23. 국방과학연구소 전속 군인에 대한 징계 관할 ..... 63
- 24. 군무원 위병사관 근무편성 ..... 65
- 25. 기능군무원 추가합격 결정 ..... 67
- 26. 국방대학교 교수의 대외활동 검직 가능 여부 ..... 69
- 27. 해군사관학교 교수 산학협력단 연구비 수령 가능여부 ..... 72

## 제3장 병역 ..... 75

- 28. 전시 전방군단 향방예비군 운용 ..... 77
- 29.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 80
- 30. 「예비군법」 제10조 직장보장 ..... 84
- 31. 동원보류 대상자 ..... 86

## 제4장 복지(보수·연금·보훈·국립묘지안장) ..... 89

- 3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한 재심사·재산정 요구 가부 ..... 91
- 33.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여부 ... 93
- 34.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의 의미 ..... 97
- 3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법률관계 ..... 99
- 36.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104



# CONTENTS

37.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 .....	108
38. 합정근무수당 지급 .....	112
39.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114
40. 대출 협약서와 급여 수급계좌 선택권 .....	117
41.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호비 산정시점.....	119
4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시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경우.....	122
<b>제5장 군수 및 방위산업 .....</b>	<b>125</b>
43. 탄약대여 시 대여금액 산정.....	127
44.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	130
45. 경과규정 없는 개정된 훈령의 적용여부 .....	135
46. 이사회물 수송임 비용 .....	137
47. 금속제 모장이 단속대상인지 여부 .....	139
48. 불용군수품 매각 관련 검토.....	141
49. 조약에 따른 군수품 불용결정 시 절차문제 .....	143
50. 군수품 교환계약 .....	146
51. 군 병원 설립과 관련한 검토 .....	148
52. 폐기된 탄약의 성격 .....	153
<b>제6장 시설(군용지 취득·국유재산·군사시설보호).....</b>	<b>155</b>
53.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군사 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	157
54.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 .....	161
55. 「군인복지기본법」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165
56. 군 공중전화 미 철수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	169



# CONTENTS

5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판단시 적용 법조 .....	173
5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5항의 재협의 요청 관련 .....	176
59. 국방규격 관련 업무 주체 .....	178
60. 비행안전 제1구역의 군사시설 설치 승인권자 .....	181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 .....	183
6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185
63. 통신지원업체 행사장소 제공여부 .....	187
<b>제7장 재정 및 예산회계 .....</b>	<b>189</b>
64. 국가채권을 공시송달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	191
65. 분할납품계약에서 지체상금 산출 여부 및 기준 .....	193
66. 용역계약에 있어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가부 .....	195
67.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	200
68. 용역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 여부 .....	202
<b>제8장 기타 .....</b>	<b>205</b>
69.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검토 .....	207
70. 서해 5개 도서의 관할권 문제 .....	209
71.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 .....	218
7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보상 .....	220
73. 동시이행 판결 선고사안에서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의 법률관계 ..	222
74. 안보학 교수의 정년 보장 .....	225
75. 국가보훈처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226
76. 평창올림픽 군 지원 가능여부 등 검토 .....	229
77.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위 .....	232
78. 군수형자 작업분류 .....	235
79. 미송환 북한군 사체의 처리 .....	237

# 제 1 장 헌법, 행정법 및 조직



# 1. 사관학교 명칭 사용 관련

## 【질의요지】

「사관학교 설치법」의 사관학교 설치목적 고려시, 학교법인에서 ○○고등학교를 ○○사관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명칭변경 : ○○사관고등학교(○○ Military High School, ○○士官高等學校)

## 【답 변】

이는 법률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소관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타당한 법해석이 되도록 해야 함.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소관 부서에서 해석대상 법령조문으로 적시해 온 「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의 해당내용을 각 살펴볼 때, 이들 법률조항들은 육군·해군·공군의 각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를 각 설치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법률문언들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당 법률문언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또한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개별법에서는 그 입법목적에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른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있음을 종종 발견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sup>1)</sup>,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3조<sup>2)</sup>, 「군인공제회법」 제6조<sup>3)</sup>,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제4항<sup>4)</sup>, 「한국국방연구원법」 제5조<sup>5)</sup>, 「국방전직교육원법」 제26조<sup>6)</sup>는 유사명칭 사용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 이외에도 상당수의 법률들이 동일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해석대상 법률인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발견할 수 없음.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들 해석대상 법률문언들이 각 사관학교를 설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다른 학교법인에서 “사관학교(士官學校)”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임.

- 
-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 2)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3)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4)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5)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6)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니면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사관학교(士官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군조직의 일부인 사관학교와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군에 대한 신뢰나 명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성은 있어 보임. 그러나 이는 법률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소관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끝.

질의 : 교육훈련정책과-4029 (2017. 9. 1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7983 (2017. 9. 20.)

## 2.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의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음.

### 【이 유】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서는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연수·신분보장 등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제1항에서는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에서는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의 한 종류인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임.

그리고,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는 일반적인 국군조직 내의 군인·군무원과는 차별되는 능력이 요구되는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특별히 교육공무원 수준의 보수·연수·신분보장 등을 함으로써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외부 인력을 교수 요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므로(1997. 1. 13. 법률 제526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3. 시행된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관학교는 일반적인 국군 조직의 구성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할 것임.

한편,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군 조직에 해당하는 사관학교는 군인·군무원 외에 다른 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국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인 군인 외에도 군무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국군 조직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한정하여 그 외의 사람을 두는 것까지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할 것임. 끝.

회신 : 법제처 17-0458 (2017. 10. 23.)

## 제 2 장 인 사



### 3. 남성 군인의 불임·난임 휴직

#### 【질의요지】

남성 군인도 「군인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불임·난임 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남성 군인에게 불임·난임의 원인이 있고 이에 대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신청에 의해 휴직 명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 유】

「군인사법」 제48조 제1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라고 규정하여 휴직 신청주체에 있어 남녀의 구별을 하지 않고 있음.

한편, 「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훈령」 제2조 제3호와 제14조 제1항은 ‘불임·난임의 치료를 위한 휴직 대상’을 여성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군인사법」에서 남녀 구별 없이 인정한 불임·난임을 사유로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군인사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남성 군인에게 불임·난임의 원인이 있고 이에 대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신청에 의해 휴직 명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전문가 자문 결과 남성의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1개월 이상의 휴직은 불필요하다는 소견 및 치료방법<sup>7)</sup>을 고려하여 볼 때 남성 군인의 불임·난임에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아 보임.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간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훈령에 정할 수 있을 것임. 끝.

질의 : 해군본부 법제과-2584 (2015. 9. 23.)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941 (2015. 11. 17.)

---

7) 국방여성정책과-3909(2015. 11. 3.) 남성의 불임·난임 휴직 가능 여부 법령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 4. 재임용 심사 전 군의 치의 장교 명예전역수당 기준 정년

### 【질의요지】

재임용 심사 전에 명예전역을 위해 지원한 군의 치의 장교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정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재임용 심사를 마치기 전이라도 명예전역수당 지급요건 판단에 있어서는 군의 치의 장교에 특수한 연령 정년이 그대로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이 유】

「군인사법」 제8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군의 치의 장교에 대하여 60세의 특수한 장기 연령 정년을 두고 있음.

한편 군의 치의 장교는 장기 연령 정년으로 인한 복무 불성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군인사법」 제8조 제2항 단서를 통하여 일정 시점에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임용 심사 결과 재임용 불가로 판단된 군의 치의 장교는 다시 일반장교의 연령 정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군의 치의 장교가 재임용 심사 시점 이전에 전역지원을 하면서 명예전역을 지원한 경우에,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요건과 관련하여 현역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sup>8)</sup>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군의 치의 장교 특수 연령 정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장교 연령 정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47세인 군의 장교(중령)가 명예전역수당 신청을 한 경우를 가정하여 각 견해에 따른 적용을 하여 보면, 첫째 재임용 심사 시점 이전이라도 군의 치의 장교 특수 연령 정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해당 군의 장교의 연령 정년은 60세가 되므로 연령 정년이 10년을 초과하여(13년) 남아 있으므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둘째 재임용 심사 시점 이전에는 일반 장교 연령 정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해당 군의장교의 연령 정년은 53세가 되므로 연령 정년이 1년 이상 10년 이내 해당하여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요건에 일응 해당하게 되는 차이가 존재함.

재임용 심사 시점 이전이라도 군의 치의 장교 특수 연령 정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규정의 기본적인 문언 상 연령 정년이 60세가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고, 군인사법 상 군의 치의 장교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가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논거로 함(60세 특수 정년이 적용됨에 있어 재임용 심사 탈락이 이른바 ‘해제조건’이 된다고 보는 견해).

반면에 재임용 심사 시점 이전에는 일반 장교 연령 정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재임용이 결정되기 전에는 특수 정년이 적용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임용 심사 시점 이전에는 일반장교와 동일하게 대우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거로 함(재임용이 되어야 비로소 60세 특수 정년으로 연령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는 견해로서, 재임용 심사 통과가 이른바 ‘정지조건’이 된다고 보는 견해).

살펴보면, ① 「군인사법」 제8조 제2항 본문에서는 ‘… 군의과·치의과

---

8)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2조 제1항

장교의 연령 정년은 60세로 하며 …’라고 명시하고 있어 규정의 문언해석 상으로 군의 치의 장교의 연령 정년이 60세의 특수 정년임이 나타나 있는 점, ② 군의 치의 장교의 연령 정년을 일반 장교에 비하여 장기로 규정한 것은 위 장교들의 장기복무를 유도하는 정책적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보장된 연령 정년을 현저히 많이(10년 이상) 남기고 상대적으로 조기 전역하는 군의 치의 장교들에게 명예전역수당 지급 요건을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과거 군교수에 대하여도 재임용 심사 이전 명예전역수당 신청이 문제된 유사한 경우에 지급요건 기준 연령 정년을 특수 연령 정년인 60세를 적용<sup>9)</sup>한 바 있었던 점에서 해석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점, ④ 「군인사법」 제8조 제2항 단서의 명문 규정 내용을 보더라도, ‘… ,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여, 재임용 심사 이전 시점에 있는 군의 치의 장교에 대해서는 특수 정년인 60세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관하여 일반장교 정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에서도 재임용 심사 이전 시점의 군의 치의 장교에 대해서는 특수 정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⑤ 재임용 심사 제도의 도입취지 역시 현행 특수 정년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군의 치의 장교에 관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요건을 산정하는 기준 연령 정년은 특수 연령 정년인 60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관리과-727 (2016. 1. 18.)

회신 : 법무담당관-484 (2016. 1. 20.)

9) 국방부 법무담당관-1276(2009. 3. 4.) 법령해석(군교수 명예전역수당 기산 기준)

## 5. 전직지원교육 지원 요건 상 복무기간과 휴직기간 산입

### 【질의요지】

전역이 예정된 군 간부가 10개월 이상 전직지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인 10년 이상 장기복무에 휴직기간을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전직지원교육 요건 상 10년 이상 장기복무에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이 유】

「군인사법」 제46조의2에서 규정된 전직지원교육은 성실한 복무 후 명예롭게 전역하는 군간부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군간부에게 취업추천, 전직지원교육, 교육비 지급 등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sup>10)</sup>.

이처럼 전직지원교육 제도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침해적 처분이 아니라,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조치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넓은 정도의 재량이 부여된다고 할 것임.

위와 같은 전직지원교육 제도 중 부사관의 전직지원교육 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여부<sup>11)</sup>를 판단하는 복무기간에 휴직기간도

10)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참조

11)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제1항 참조

포함하여 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될 수 있음.

먼저, 휴직기간도 산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의무복무기간 산입 제외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상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데 비하여 전직지원교육 지원 요건 상 복무기간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함.

반면에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전직 지원 제도의 취지 상 장기간 군에서 성실히 복무한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해당하므로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적인 해석을 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함.

살피건대, ① 전직지원교육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 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점, ② 위와 같은 점에서도 전직지원교육 대상의 판단은 해당 조치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넓은 정도의 재량이 부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장기간 성실히 복무를 한 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전직지원교육의 제도적 취지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산이 소요되는 전직지원교육에 대한 요건의 판단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직지원교육 지원 요건 상 복무기간에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전직지원교육 요건 상 10년 이상 장기복무에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끝.

질의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482 (2016. 2. 12.)

회신 : 법무담당관-1240 (2016. 2. 25.)

## 6. 장기복무장교 5년차 전역

### 【질의요지】

1. 국방부 훈령에서 5년차 전역 제한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자가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전역을 허가한 경우 전역일자를 5년차에 해당하는 날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의 경우 복무기간 5년에 해외 위탁교육으로 인한 가산복무기간을 합하여 전역일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4. 5년차 전역심사위원회에서 5년에 가산복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전역일자를 결정한 경우 해외위탁교육 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1. 5년차 전역지원 자체는 제한할 수 없으나 전역을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sup>12)</sup>
2. 5년차 전역지원에 대한 전역시기의 결정은 전역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로 장교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위탁교육으로 인한 가산복무기간을 합하여 전역일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 위와 같이 6개월 이상의 해외 위탁교육을 수료한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에 대해 설령 전역심사위원회에서 5년차 복무만료일에 소정의 가산복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전역일자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탁교육경비 환수 대상에 해당함.

12) 같은 취지의 회신 : 국방부 법무담당관-3068(2008. 7. 25.),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28집 51쪽 참조

## 【이 유】

### ▣ 질의 1 에 관하여

「군인사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이하 ‘5년차 전역지원’이라 함)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 군인으로서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함) 제5조 제1항은 5년차 전역지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참모총장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이와 같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군인력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년차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자라 할지라도 장교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진로를 바꾸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5년차에 1회 본인에게 장교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전역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5년차에 1회에 한하여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의 손실 판단을 미리 가능하게 하여 예측된 군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임.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복무장교가 외국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5년차 전역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전역지원을 받은 참모총장은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역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5년차 전역의 허가 여부는 법 제43조의 전역권자가 개인사정과 아울러 군 인력 운영상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재량행위에 해당함.

한편,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98조 제1항은 군의 특수목적에 의해 양성된 제1항 각호의 군의 사람은 장기복무장교 5년차 전역 제한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호에서 5개월 이상 해외병과교육(해외연수) 수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이 장기활용을 목적으로 양성한 자원을 5년차 전역 제한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5년차 전역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위 훈령 제19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장교도 5년차 전역지원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군인력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질의 2, 3에 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서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장기복무장교는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이하 ‘가산복무기간’이라 함)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5년차 전역지원을 하더라도 그 의무복무기간이 5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5년차 복무 만료일로부터 가산복무기간을 합하여 전역일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sup>13)</sup>

5년차 전역지원에 대한 전역허가 여부 및 전역시기는 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의 전역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전역일의 결정은 5년차 전역지원제도의 취지에 따라 전역권자가 판단해야 하는 재량사항에 해당함.<sup>14)</sup>

13) 같은 취지의 회신 : 국방부 법무담당관-3068(2008. 7. 25.),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28집 51쪽 참조

14)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위탁생 해임자 5년차 전역에 관한 법령해석 및 전역처리 강조사항 지시(통보)” [인사기획관리과-6130(2008. 8. 7.)]에 기초하여 만5년에서 6년 이내에 본인의 전역 희망일을 기준으로 전역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 질의 4에 관하여

「군위탁생규정」 제6조는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 중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면서, 동 규정 제12조에서는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 “수학 중 해임된 자”,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위 제6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비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하나,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부사관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얻어 이의 반납을 6월의 기간 내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시행규칙 제13조는 “군위탁생이 위탁교육을 받는 중에 사망한 경우”, “군위탁생이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군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 또는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함께 그 밖에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법 제7조 제2항은 “군인으로서 외국에서 6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가산은 교육을 의무복무연한내에 종료한 때에는 그 의무복무연한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연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7조는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의 수학기간은 교육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함.

사안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에 6개월 이상 해외 병과교육을 받은 장기복무장교가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년차 전역을 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전역을 하려는 자가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경비의 반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의무복무기간 중에 6개월 이상 해외 병과교육을 받은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에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에 해당하며, 설령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때로부터 법 제7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전역일자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무복무기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급경비의 반납대상에 해당함. 끝.

질의 : 해군본부 법제과-508 (2016. 2. 1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911 (2016. 3. 23.)

## 7.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국가비상사태’ 해석

### 【질의요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 제17조의 전투군무수당 지급 대상자와 관련하여 ‘국가비상사태’에 월남전도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 제17조의 ‘국가비상사태’에는 월남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이 유】

「군인보수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봉급과 수당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투군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국가비상사태는 사전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중요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또는 전시와 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져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를 의미하는바,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영토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한편 위 제17조의 전투군무수당 외에도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업무수행 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전투근무수당이 아니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급여가 지급되는 근거가 마련 되어 있음.

살피건대, ① 규정의 문리해석 상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영토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12-0558 2013. 1. 22. 해석도 같은 취지임), ② 전투근무수당 외에도 특별급여 등 해외 파병 전투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가 존재하는 점(문제된 사안의 해당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월남전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에 대한 침해와 관련이 없는 전투 참여는 국가비상사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끝.

질의 : 복지정책과-3007 (2016. 5. 23.)

회신 : 법무담당관-3697 (2016. 6. 13.)

## 8.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특정 병과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26조 제2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에 있어서 군 전체 병과가 아닌 특정 병과 또는 일부 병과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군인사법」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진급권자가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정한 한도 내에서 특정 병과 또는 일부 병과에 대한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이 유】

「군인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규정 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진급을 앞당기게 되는 효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는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조치에 해당함.

따라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는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비교적 재량의 범위가 넓다고 할 것인데, 특정병과 또는 일부병과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특별히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함<sup>15)</sup>.

또한 일반적인 조치로서는 전체병과에 일률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일응 적정할 수도 있겠으나, 「군인사법」 제11조 임용, 제12조 초임계급, 제15조 임용연령, 제33조 임시계급 부여 등 「군인사법」 상 병과별 차등적 형태로 적용 또는 운용되는 조치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병과별 인력 사정이나 인력의 운영 환경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병과 또는 일부병과에게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조치가 전체 관계 법령의 체계에 반할 여지도 없음.

다만, 위와 같은 조치는 군인 직무의 중요성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 군 인사관계 법령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진급권자가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정한 한도 내, 즉 인력운영을 위한 적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재량의 범위 내 조치일 것이 요구됨. 끝.

질의 : 인력정책과-1724 (2016. 6. 7.)

회신 : 법무담당관-3721 (2016. 6. 14.)

---

15) 과거 국방부 법제 33010-2082 (2001. 3. 21.) 해석에서는 군인사법 제8조 제5항의 정년 단축에 관하여 병과별 차등 단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으나, 정년 단축이 불이익적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 반하여, 위에서 살피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단축은 이익적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 9. 개정된 별정군무원 근무상한연령의 단계적 적용가부

### 【질의요지】

2010. 3. 26.부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별정군무원 근무상한연령(60세)을 위 시행일자 이후 임용된 별정군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조항에 의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개정 취지 및 실제 공고내용 등에 비추어 부칙 제5조의 특례조항에 따른 근무상한연령 단계적 적용을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이 유】

「군무원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일반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됨.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면 별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며, 임용·복무·보수·징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을 일반군무원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과 별표6 에서는 종래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직무분야별로 다양하게 규정하여 왔음.

그 후 2010. 3. 26.부 개정 및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에서는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원칙적으로 60세로 하였고, 다만 부칙 제5조를 두어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음.

위와 같은 2010. 3. 26.부 개정 및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과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일자 이후 임용된 별정군무원은 근무상한연령이 모두 60세인지, 아니면 부칙 제5조에 따른 단계적 연장 연령에 따른 적용을 받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살피건대, ① 2010. 3. 26.부 개정 및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및 부칙 제5조의 문언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 신규 임용된 별정군무원에게 일괄하여 60세의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 점, ② 2010. 3. 26.부 개정 및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개정 이유에 의하면, 위 규정의 개정 취지는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다른 별정직 공무원 또는 일반군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0세로 하되, 장기복무 전역자의 인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 ③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별정군무원의 채용시험 응시 최고연령은 임용 후 2년 이내 근무상한연령에 달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즉, 별정군무원 임용 당시 연령은 근무상한연령으로부터 2년 이상 이격되어야 함), 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조항 시행 후 국방부의 별정군무원 채용 공고 내용에 의하더라도 필수적 자격요건 중 응시연령에서는 ‘2016. 1. 1.기준 56세 이하’, ‘2014. 1. 1.기준 56세 이하’ 등으로 명시되어 옴으로써 응시자 등에게도 근무상한연령이 위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른 58세로 적용됨을 알 수 있도록 공고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0. 3. 26. 이후 임용된 별정군무원에게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조항에 의하여 2022년까지 근무상한연령 단계적 적용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관리과-6899 (2016. 5. 25.)

회신 : 법무담당관-3846 (2016. 6. 16.)

## 10. 전시 예비역 간부의 병역의무 연장

### 【질의요지】

예비역 간부의 병역의무 기간이 전시에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의 규정 및 전시관계법령의 시행 등에 의거하여 전시에 간부 정년 연장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규정 및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예비역 간부의 병역의무 기간은 전시에 연장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이 유】

일반적인 의미에서 ‘병역의무’는 헌법 제39조 병역의 의무에 근거하여,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인 군복무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군복무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하고 있음.

‘병역의무 기간’은 위와 같은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병역법」 제72조에 의하면 병역의무 기간은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兵)과 제2국민역의 경우 40세까지로,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군인사법」에 따른 해당 계급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병역법」 제83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 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위 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서는 위 「병역법」 제72조와 달리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시·사변 등에 병역의무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군인사법령 상 병역의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살피건대, 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이른 바 군간부 경력을 가진 자는 직업군인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헌법 상 국민의 기본의무로서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비하여 가일층 높은 정도의 수준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예비역 간부들은 이에 따라 대부분 연금 등 일정한 예우를 받고 있는 점, ③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는 현역 간부의 정년에 관하여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현역 간부의 연령 정년과 연동되어 예비역 간부의 병역의무 기간이 변경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병역법」 제83조에서 굳이 별도의 연령을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규정할 경우 중복규정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당연해석, 법령의 체계에 따른 규범적 해석 상 현역 간부의 연령 정년과 연동되어 예비역 간부의 병역의무 기간 역시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다만 군 간부의 정년에 대해서는 현재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장은 전시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입법론적 절충설). 끝.

질의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2022 (2016. 6. 9.)

회신 : 법무담당관-4475 (2016. 7. 1.)

## 11. ‘군수용자’, ‘영창시설’의 개념과 계호업무종사자 범위 관련

### 【질의요지】

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의 ‘군수용자’에 징계입창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군교정시설’에 ‘영창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군교정시설에서 계호업무종사자의 범위에 교도관 이외의 직위근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의 ‘군수용자’에 징계입창자는 포함되지 않음.
2.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 따라, ‘영창시설’은 교정시설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3.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계호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 유】

#### ▣ 질의 1에 관하여

“군수용자”는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함(「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이라고 함) 제2조 제4호).

범죄를 저지른 군인(병사 포함) 및 군무원, 민간인(특정범죄에 한함)은 「군사법원법」의 형사절차 진행 여부,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리과정 및 결정에 따라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으로 분류됨.

한편, “징계입찰자”은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에 의하여 징계의 종류 중 영창처분을 받고 현재 영창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구금예정인 병사를 말함(「징계입찰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 제1호). 군 내부 징계절차에 의하여 영창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 형사절차에서의 군수용자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임.

요컨대, ‘군수용자’와 ‘징계입찰자’는 그 신분을 결정짓는 법적근거와 개념요소를 전혀 달리 하므로, ‘군수용자’에 ‘징계입찰자’는 포함되지 않음.

## ■ 질의 2에 관하여

군형집행법 등은 ‘군수용자’에 대한 형의 집행 및 처우를 정한 법령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음. 또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는 “군교정시설”에 대하여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고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위 정의규정에 따라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영창시설은 군교정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움.

한편, 「징계입장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는 “영창 시설”은 “국방부 또는 국직부대에 설치된 교정시설의 일종으로 징계의 종류 중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에 대한 영창집행을 위해 설치된 외부와 차폐된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군의 영창시설은 구금시설에서의 일정기간 격리를 통해 비행을 반성하고 교화개선하는 기능에 있어 군교정시설과 동일할 뿐 아니라, 군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군미결수용실과 영창시설을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대가 있고, 영창시설과 군교정시설의 계호근무를 하는 인원 역시 헌병병과 인원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영창시설이 법문 언상 열거되어 있는 교정시설은 아니지만, 교정시설의 일종으로 본다는 「징계 입장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의 내용이 이로써 설명된다 할 것임.

요컨대, 영창시설은 균형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군교정시설은 아니나, 「징계 입장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을 근거로 하는 군교정시설의 일종이라고 해석될 수 있음.

### ■ 질의 3에 관하여

현행 균형집행법 등에서는 ‘계호’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계호”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써 “경계하여 지킴”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 쉬우나, 교정 학계에서 계호의 의미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안전 및 구금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강제력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격리작용과 개선작용을 위하여 행하는 경계와 보호작용<sup>16)</sup>”이라고 보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계호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로만 국한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16) 허주욱, 「교정학(신정판)」, 342p.

직접 경계하여 지키는 경계업무수행자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경계 및 교화개선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일에 해당한다면 넓은 의미의 계호라고 볼 수 있다할 것임. 다만, 계호의 범위에 관하여 명문으로 구체화하는 법 개정이 요구됨.

따라서,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계호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끝.

질의 : 복지정책과-5001 (2016. 8. 11.)

회신 : 법무담당관-6218 (2016. 8. 18.)

## 12. 근무원 근로계약 시 계약 명의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으로 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근무원 근로계약 시 계약 명의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으로 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조 제1항 및 같은 훈령 별지 제1호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답 변】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조 제1항 및 같은 훈령 별지 제1호는 근무원 근로계약 체결 업무분장을 규정하고 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주체와 효력이 귀속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임이 법리 상 명백하므로 위 훈령의 상위법령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할 것임.

### 【이 유】

계약의 내용 해석은 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의 문제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론에 의할 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에 의한 종합적인 해석을 거쳐 적법 타당한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도출하는 해석에 의하여야 함이 기본 법리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의 내용과 그 법률효과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국가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와 일반 사인 사이에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귀속 주체가 대한민국인 것으로 여기고, 일반 사인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는 계약서 상 명의자가 특정 기관장 또는 부대장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는 대한민국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객관적·합리적 의사표시 해석 상 타당함.

이에 따라 계약서 상 당사자란에 반드시 대한민국이 기재되어야만 계약의 주체 또는 당사자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조 제1항에서는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훈령 별지 제1호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서 작성자를 ‘대한민국’ 등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부대장 명의를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가 일반인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일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위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임<sup>17)</sup>에 관한 조항 역시 그대로 적용되므로, 위 훈령의 규정은 이와 같은 계약사무의 업무분장을 확인한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용자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 위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

17) 위 조항 상 위임의 의미는 민법 상 위임(같은 법 제680조)이 될 수는 없으므로[국가와 국가공무원 법의 공법관계에 의하여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관계이므로 별도의 민사계약 관계로서 사무처리를 위탁할 필요가 없고, 법리 상 그와 같이 할 수도 없음. 이때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는 민법 상 대리인 또는 수임인 보다는 사자(使者)에 가까움] 사실 상 업무의 분장을 의미한다고 판단됨.

효과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법리 상 당연하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실제 실무상 각급 기관 및 부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타계약뿐만 아니라 위 근로계약과 관련하여서도 기관장 또는 부대장 명의를 계약서 작성자로 기재하고 있음.

위 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의거하여 유효·적법하게 체결된 근로계약과 관련한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가 대한민국임은 법리 상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실무 상 근로계약서 명의자로 ‘대한민국’을 기재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각급 기관장 또는 부대장 명의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위 의문점이 실무상 실익이 있는 사항은 계약서 상 당사자 명의로 ‘대한민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급 기관장 또는 부대장 명의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로 판단됨.

살피건대, ① 위 훈령 규정의 내용은 근무원 근로계약 체결 업무분장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주체와 효력이 귀속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임이 법리 상 명백한 점, ② 그렇다면 위 훈령 규정의 내용과 별지 제1호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종합하여 실무 상 계약서 명의로 각급 기관장 또는 부대장을 기재하는 것이 문제인바, 만약 계약서 작성자 명의를 대한민국으로 일률화할 경우 계약 관련 업무담당 부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반면, 각급 기관장 또는 부대장 명의를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자에 업무담당 부대가 나타나 관련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점, ③ 기획재정부 등 국가기관의 일반 계약 주관부서도 계약서 명의자란에 정부기관명과 부서명 등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당연해석, 법령의 체계에 따른 규범적 해석 상 계약서 상 명의로는 각급 기관장

또는 부대장 명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조 제1항은 근무원 근로계약 체결 업무분장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주체와 효력이 귀속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임이 법리 상 명백하므로 위 훈령의 상위법령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끝.

질의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2975 (2016. 8. 26.)

회신 : 법무담당관-7007 (2016. 9. 6.)

## 13.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의 허가범위

### 【질의요지】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인 군인에 대하여 공무 외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는 있는 범위가 어떠한지 여부

### 【답 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의거하여 지휘관은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군인에 대하여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상당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가기간에 준하는 공무 외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유】

「군인사법」 제46조의2에서는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하여 전역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직지원교육은 예산과 복무부대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역이 임박한 자원에 대하여 조속한 사회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제도임.

한편 기존의 「군인복무규율」을 대체하여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서는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에 대하여 지휘관의 재량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있음.

비록 국방부 훈령인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에서는 전직지원 교육 중 해외체류에 대하여 국외자격증 취득교육 및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도입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으로서 상대적으로 상위법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의 효력에 상반하는 범위에서 무효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훈령의 규정을 근거로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의 군인에 대한 공무 외 국외여행을 전적으로 불허할 수는 없음.

다만 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승인할 수 있는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이 무제한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지휘관의 재량을 일탈하여 전직지원교육 제도의 취지에 위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인사법령의 전체적인 취지에 위반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

따라서,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조 및 제5조 등에 의하여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하는 점, ② 위와 같은 기본적 사명과 강령에 의하여 군인은 일정한 사유 발생 시에는 기승인된 국외체류 기간이라 하더라도 국내로 복귀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인 군인이라 하더라도 전역 전에는 현역군인의

본질적인 의무를 부여받은 상태이고, 전직지원교육의 취지 상 사적인 형태의 용무(휴식 등 사적인 용무 형태)로 해당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점, ④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군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공무 외 휴가의 범위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위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이익을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군인에게 부여할 수는 없는 점(공무 또는 전직지원교육 형태의 용무가 아닌 사적인 형태의 용무를 보려는 경우에는 휴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조치받는 것이 본질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임.), ⑤ 위와 같은 군인의 기본적인 사명과 강령, 본질적인 의무 및 사회 복귀를 위한 혜택을 부여받은 상태인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군인이, 사적인 용무로 일반 군인과 유사한 형태의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 경우 보다 더욱 많은 이익을 부여받을 수는 없고 유사한 경우와 형평에 따른 처우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의 군인이 무제한적인 공무 외 국외여행(휴식 등 사적인 용무 형태)을 허가받을 수는 없으며, 지휘관은 사회복귀를 위한 혜택적인 조치를 부여받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인 군인이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는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전직지원교육 기간 공무 외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문언해석, 법령의 체계에 따른 규범적 해석 상 지휘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한하여서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인 군인에 대하여 공무 외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끝.

질의 :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실-975 (2016. 9. 1.)

회신 : 법무담당관-7100 (2016. 9. 7.)

## 14.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 【질의요지】

공상으로 인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입은 부사관이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역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군인사법」 제41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역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 【이 유】

문제되는 사안은 「군인사법」 제41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는 전상·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를 퇴역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 따른 심신장애를 입은 부사관이 스스로 전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른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퇴역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임.

「군인사법」 및 「병역법」에서 “전역”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전역(轉役)”의 사전적 의미는 군에서 현재까지 복무하던 역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으로서, 「군인사법」 제42조도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군인사법」 상 현역 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

관의 전역은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하거나 퇴역하는 것을 말한다 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군인사법」 제41조에 따라 퇴역되는 군인의 경우에도 군인사법상의 전역절차를 통하여 퇴역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와 달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전역절차와 무관하게 「군인사법」 제41조 각호의 사유 발생 시 당연 퇴역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 당연전역사유로 규정하면서 제39조에서는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 제2호는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퇴역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역에서의 전역은 미루어 졌으나 당연히 퇴역되어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전역 등의 기준에 관한 조항은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따른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점, 위 제5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한 퇴역 및 제적의 구분은 「군인사법」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위 시행규칙 제 53조는 「군인사법」 제37조에 의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위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는 경우에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심신 장애를 이유로 퇴역하는 경우에 법 제37조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임.

사안의 경우, 본인이 전역을 원하고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35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이거나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퇴역을 하고자 한다면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임. 끝.

질의 : 해군본부 법제과-2364 (2016. 8. 17.)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992 (2016. 9. 19.)

## 15.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검토

### 【질의요지】

1. 환영만찬, 공식오찬 등 식사 준비간 개인당 3만원 초과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여부

2. 000 방문단에서 한측 참석자 제공 선물, 한국 국방부에서 000측 대표단 참석자 제공선물 5만원 초과시 상기 법 위반여부

\* 과거 사례를 고려시 10만원 정도 예상

### 【답 변】

사안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8조 제3항 제6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제공되는 음식·선물에 대한 상기 법 위반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 유】

####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

이 중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이를 허용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만으로 제한하고 있음(각 3, 5, 10만원). 그러나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금지의 예외로 허용되고 그 가액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법문은 이 경우, 금품등 수수의 추가적요건으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될 것’을 강조하고 있음.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며,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는 차등가능함.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OOO 방문단에게 제공되는 식비와 선물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청탁 방지담당관(국방부 감사관)과의 상담이 필요함.<sup>18)</sup>

질의 : 국방협력TF-1666 (2016. 9. 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994 (2016. 9. 19.)

---

18)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135쪽.

## 16.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해당여부

### 【질의요지】

경징계 처분 후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1회 회부되었다가 ‘계속 복무’로 결정되었던 대상자가 그 후 다른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질의 대상 사안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이 유】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의 일종인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이 신중하고 면밀한 판단 절차로 구성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위 시행규칙 제59조)’, 위 심의 후 강제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취지의 본심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역심사위원회(위 시행령 제50조)’의 2단계 과정을 거치도록 면밀한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제57조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을 상세 규정하여 비교적 공정한 범위 내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절차가 개시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위 규정은 같은 조 제7호에서 ‘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위 규정 제58조에서는 ‘제56조(제4항제5호 제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제57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고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국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을 제한적 열거라기보다는 예시적 열거(예시된 사유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전역 사유 판단의 일응의 기준이 되도록 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경징계 후 1회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계속복무로 판단된 자가 이후 다른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최초의 경징계는 이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사유로 사실 상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대상자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살피건대,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시적 열거의 형태로 일응의 준거를 마련한 규정에 해당하는 점, ② 1회차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는 경징계 처분 자체를 조사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 위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에 의거한 사항을 사유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대상자가 다른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기에 이른 이상, 위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의 ‘같은 사유’에 포섭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 경징계 처분 사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여 위 제68조의 이중조사 금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전체적 취지에 의할 때 질의 대상 사안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이 질의 대상 사안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질의 대상 사안에 관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적으로 적법하다는 판단이 될 수는 없으며, 해당 전역 처분에 다른 절차 상 하자 또는 비례의 원칙 등 실체 상 하자가 존재하게 될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임. 끝.

질의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3598 (2016. 10. 19.)

회신 : 법무담당관-9819 (2016. 11. 3.)

## 17. 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대원 해당성

### 【질의요지】

「예비군법」상 예비군지휘관도 예비군대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대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이 유】

「예비군법」<sup>19)</sup> 제3조에 의하면, 예비군지휘관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예비군지휘관은 위 법률 제3조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일부의 사람’으로서, ‘지역예비군지휘관’의 경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관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군무원 신분이 부여되고,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경우 국방부에서 예비군 관련 업무의 수행을 감독하고 해당 직장에서 그 직장 내 신분을 관리하는 특수한 형태의 민간인(일반 직장인)으로 신분이 부여되어 있음.

반면 예비군대원은 위 법률 제3조 중 「병역법」에 따른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그리고 현역 등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병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상 시에는 공직자 신분 또는 국방부의 감독을 받는 특수 신분이 부여되지 아니하나 「예비군법」 등에 규정된

19) 2016. 5. 29. 시행 법률 제14184호, 같은 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법률명칭 변경

‘동원 명령’, ‘훈련’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소집된 상태에서는 준군인(準軍人)으로 대우하는 등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게 됨.

위와 같이 예비군 조직을 함께 구성하는 인원에 대해서 일부 법조항에서는 예비군대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반면에 일부 법조항에서는 예비군지휘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용어 상 예비군대원에 예비군지휘관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용어가 명백히 구분되는 용어인지 일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살피건대, ① 「예비군법」의 전체적인 체계상 동원소집 및 훈련 등 관련 예비군대원에 관한 규정은 예비군지휘관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조항들이고, ② 실제로 「예비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예비군지휘관과 예비군대원을 명백히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③ 「예비군법」 제8조의2와 제9조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군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 지역예비군지휘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게 되고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그 신분에 맞게 보상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대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다만 일부 관련 법령 상 예비군대원과 예비군지휘관을 위와 같은 법적 지위와 효력에 따라 명백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은 단순히 법규정의 용어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법적 지위와 효력에 따라 예비군대원과 예비군지휘관에 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일반적으로 위 두 신분은 구별되거나 개별 규정의 해석은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 끝.

질의 : 예비전력과-4852 (2016. 11. 2.)

회신 : 법무담당관-10397 (2016. 11. 25.)

## 18. 군중사관후보생의 병적 유지 연령

### 【질의요지】

군중사관후보생의 병적 유지 연령이 몇 세까지 인지 여부

### 【답 변】

군중사관후보생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28세를 초과하여 병적을 유지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존재 시에도 최장 35세까지만 장교 병적편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이 유】

「병역법」 제58조에 의하면 군중사관후보생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중 일정 연령 이내인 자를 군중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군인사법」 상 부여된 군중분야의 특기를 전문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제도적 취지로 함.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군중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이 가능한 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임.

이때 「병역법」 제58조 제3항은 군중사관후보생에 일응 편입된 사람은 35세를 최장의 기한으로 그 장교 병적편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규정을 둔 바 있음.

이 경우 「병역법」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35세의 연령과,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28세의 연령이 다르게 규정된 이유와 그 차이 및 실제로 병적 편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은 몇 세까지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살피건대, ① 「병역법」 제58조의 기본규정은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장교 병적편입(=입관)이 가능한 최장의 기한을 정한 것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병과별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가능 연령과는 구별되고, ② 따라서 일응 군중사관후보생 병적편입 가능 연령인 28세를 초과하게 되는 자는 군중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됨이 타당하며, ③ 다만 만의 하나 해당 대상자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입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병역법」에서 보장한 최장 기한인 35세까지 장교 병적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재학 사유 등 평균적인 병역 연기 가능 연령인 24세 ~ 28세를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등과의 형평에 부합한 해석에 해당하여 헌법 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군중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성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귀국 시 28세를 초과하는 내용의 유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할 것임. 끝.

질의 : 군중정책과-3074 (2016. 11. 16.)

회신 : 법무담당관-171 (2017. 1. 6.)

## 19. 무단국외여행자 징계

### 【질의요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이 훈령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따르지 않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

### 【답 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11조와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의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조사 등의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징계권자가 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 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지휘관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여두고 있음.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은 군인 및 군무원이 국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나가도록 하면서, 제11조는 훈령 상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서 사적 국외여행 시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비상상황 등의 발생 시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 또는 군무원 신분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함에 지장이 없도록 국외여행을 사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군인징계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결등의 요구절차에 따르면 「군인징계령」 제7조는 징계권자는 비위행위자의 비행사실을 통보받거나 발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조사결과 비위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징계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도 제11조에서 비행사실이 통보되거나 발견되면 징계권자는 징계업무담당자들을 통하여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러한 조사결과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장에서는 청렴의무위반사건, 음주운전 사건,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사안은 위와 같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11조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의 의미를 징계권자로 하여금 반드시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군인의 징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 및 징계양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징계권자에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 징계의 필요성이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군인징계령」 제7조제3항의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이러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군인징계령」등 관련규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부여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재량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을 징계권자로 하여금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11조와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의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조사 등의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며, 해당사안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징계권자가 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끝.

질의 : 해군본부 해양법제과-3369(2016. 11. 2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992 (2017. 1. 12.)

## 20. 기소휴직과 무죄판결

### 【질의요지】

단기복무 부사관이 복무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기소휴직 중인 상태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소휴직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다고 보아 원래의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에 당연 전역되는 것인지 여부

### 【답 변】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소휴직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정 전 단계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자로 볼 수 없어 당연 전역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이 유】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은 의무복무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있어 군무이탈이나 휴직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소휴직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서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소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음.

한편, 기소휴직에 관한 「군인사법」 제48조제2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제2항 본문은 “제48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해당사건의 계속기간”이라 함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날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소휴직 된 사람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에 기소휴직기간이 종료되고 복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러한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복직명령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소휴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해당인원이 군인의 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질의서의 제1설과 같이 판결확정 전이더라도 무죄판결의 선고만으로 기소휴직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어 당연전역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판결의 확정시까지를 기소휴직기간으로 두고 있는 「군인사법」 제49조제2항과의 체계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소휴직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정 전 단계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자로 볼 수 없어 당연 전역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공군본부 법제과-322(2017. 1. 1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553 (2017. 2. 17.)

## 21.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

### 【질의요지】

군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군인의 경우 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훈령에 따른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제의 범위 내에서만 탄력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유】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의 일종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2항의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함)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인사혁신처 예규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이하 “예규”라고 함)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사안과 같은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의 경우에도 탄력근무제의 한 형태로 위의 예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음.

한편, 유연근무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에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도록 유연근무제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별로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내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군인의 경우 「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훈령」을 통하여 만 12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외에 그 밖의 군인의 탄력근무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대단위로 건제를 유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위급상황의 발생 시 전투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는 군의 특성상 국군의 구성원인 군인의 경우 전면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군인의 경우 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훈령에 따른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제의 범위 내에서만 탄력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음. 끝.

질의 : 해군본부 해양법제과-44(2017. 1. 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2348(2017. 3. 15.)

## 22. 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장인지 여부

### 【질의요지】

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장인지 여부

### 【답 변】

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하여 소속 부대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이 유】

2015. 12. 29.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하면 제3조에서 군인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되, 군인에 준하여 군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위 법률이 기존의 군무원인사법령과 관계에서 어떠한 범위에서 군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살피건대, ① 「군무원인사법」이 제1조 ‘목적’에서 ‘군무원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임용·복무·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군무원인사관계의 특례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고, ② 더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사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군인의 구체적인 복무정책(2장), 기본권(3장), 의무(4장), 병영생활(5장), 권리구제(6장), 특별근무(7장) 등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군무원인사법」에서 규정한 군무원에 대한 각 분야의 특례, 즉

임용(2장), 복무(3장), 교육 등 능률 확보(4장), 보수(5장), 신분보장(6장), 징계(7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바 없어, 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군무원인사법」의 신법이라거나 「군무원인사법」의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기존의 「군무원인사법」 상 이미 명시되거나 구체화된 규정을 개정하는 취지라고는 전혀 볼 수 없고, 군무원이 군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군무원인사법」 상 구체화되지 아니한 기본권, 병영생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기 위한 취지로 군무원을 적용범위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위와 같은 검토 결과에 의하면, 「군무원인사법」 상 명시적이거나 구체화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 또는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등 하위법령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군무원인사법」 제19조에서는 군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중 겸직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군무원인사법」의 위임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하여 소속 부대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끝.

질의 : 병영정책과-1900 (2017. 3. 16.)

회신 : 법무담당관-2274 (2017. 3. 23.)

## 23. 국방과학연구소 전속 군인에 대한 징계 관할

### 【질의요지】

국방과학연구소에 전속<sup>20)</sup>된자(계급:해군 중령)에 대한 징계권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있는지에 관한 「군인사법」 제58조 제2항의 해석

### 【답 변】

방위사업청장에게 징계권이 있는 「군인사법」 제58조 제2항의 “소속 장성급 외의 장교”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장교에 한정되며,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이며, 업무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전속된 장교는 포함되지 않음. 그러므로, 국방과학연구소에 전속된 자에 대한 징계권자는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름.

### 【이 유】

국방과학연구소에 전속된 군인에 대한 징계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2조 제1항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소속 직원 지휘·감독’에도 불구하고, 군인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국군조직법」 상의 군징계기관에서 수행한다는 점<sup>21)</sup>에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징계권이 없음.

그렇다면,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이며, 국방과학연구소장

20) 전속이란 단위부대에서 다른 단위부대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상 전보(제5조 제6호)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는 공공기관으로 단위부대로 볼 수 없고,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에 규정된 군인이 근무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0조는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전속명령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파견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 질 수 있으나, 파견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 회신된 바 있으므로(국방법령회신 21-52 참조), 이하에서는 전속(전보)으로 보고 검토함.

21) 군인에 대한 징계권자는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군인의 신분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군인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징계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무청장 또는 일반 행정기관의 장은 군인사법상의 징계권자가 될 수 없음[국법부810-263(74. 5. 10.)]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되어있다는 점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군인사법」 제58조 제2항의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으로 보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계권이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군인사법」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의 징계권은 제58조 제1항의 「국군조직법」 상의 군징계기관의 예외로 인정되는 점에서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확대해석하기 어려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그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과는 그 성질이 다르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감독권 역시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권이라는 점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징계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적음.

그러므로, 「군인사법」 제58조 제2항의 “소속”에는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한정되며, 국방부과학연구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국방부과학연구소에 전속된 군인에 대한 징계는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짐. 끝.

질의 : 해군본부 해양법제과-1549 (2017. 5. 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5059 (2017. 6. 15.)

## 24. 군무원 위병사관 근무편성

### 【질의요지】

국군의무사령부 「당직근무규정」개정을 통해 군무원을 위병사관으로 편성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답 변】

국군의무사령부 「당직근무규정」개정을 통해 군무원을 위병사관으로 편성 가능함.

### 【이 유】

#### 1. 쟁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군무원의 당직근무는 소관 부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무원의 당직근무는 소관 부대장이 부대 사정에 따라 편성 및 책무 등을 규정할 수 있으나, 영내위병근무가 당직근무와는 다른 군인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근무이거나, 성질상 군무원이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관 부대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무원의 영내위병근무는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2. 당직근무와 영내위병근무와의 관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특별근무를 당직근무, 영내위병근무 및 그 밖의 근무로 구분하고 있고, 「부대관리훈령」역시 제3편 제10절에 당직

근무, 제11절에 영내위병근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당직근무와 영내 위병근무는 부대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당직근무가 지휘관의 명을 받아 위병 근무자 지휘를 포함하여 부대 전체에 대한 사고예방을 책무로 한다면, 위병근무의 책무는 영문출입 통제를 중심으로 초병관리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책무(책임)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당직근무와 위병근무의 성질은 유사하고, 위병근무는 당직근무 중 특별한 근무로 볼 수 있음.

### 3. 위병근무 특성상 근무원이 근무하기 부적절한지 여부

위병근무는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고, 유사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초병의 근무를 관리 통제한다는 점에서 성질상 근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보면, 근무원의 업무는 국방 정책 등의 행정분야, 총포, 탄약 등 공업분야, 선체, 항해 등 함정 분야 등 다양한 국방 업무를 수행하며, 단순한 행정업무에 한정되지 않으며(「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 1), 직책에 따라 군사비밀을 취급하고, 군인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당직근무 시에도 탄약을 비롯한 군용물을 관리·유지하여야 하고, 영내를 순찰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예하 당직근무자와 영내 위병 등 각종 근무자를 지휘한다는 점에서(「부대관리 훈령」 제75조) 위병근무에 한해서 성질상 어렵다고 볼 수 없음.

### 4. 결론

그러므로 근무원을 위병근무(위병사관)에 편성하는 것으로 「당직근무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부대의 임무·기능 및 상황에 따라 근무원의 위병근무의 구체적인 책무 및 복장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음. 끝.

질의 : 국군의무사령부 법무실-1167(2017. 5. 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5306(2017. 6. 23.)

## 25. 기능군무원 추가합격 결정

### 【질의요지】

기능군무원 채용 최종합격자로 공고한 인원(면접시험 최고 득점자)에 대한 임용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규정은 기능군무원 선발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기능군무원 선발에도 적용됨.

### 【이 유】

군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으로 구분하고, 공개경쟁 채용에는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 채용시험으로 구분함(「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군인사법 시행령」은 시험의 출제수준(제16조), 합격 기준(제18조 제1항 제3호)과 같이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sup>22)</sup>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경력직경쟁채용 중 1급 일반군무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위 규정이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22)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것으로 보기 곤란함.

그러므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규정은 기능군무원 선발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기능군무원 선발에도 적용됨. 끝.

질의 : 군무원정책과-1218(2017. 7. 1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498(2017. 8. 1.)

## 26. 국방대학교 교수의 대외활동 겸직 가능 여부

### 【질의요지】

국방대 교수가 외부 계절학기에 대한 정기 출강 시 겸직 가능 여부

### 【답 변】

「국방대학교 교육운영예규」 제41조 제3호에서 ‘학기단위 정기강의’의 의미는 계절학기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총장이 교내 교육·연구·직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음.

### 【이 유】

#### 1. 관련 법령의 정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에서는 외부강의 시 대가 유무 및 월간 강의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출강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도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하는 경우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국방대학교 교육운영예규」는 위 규정에 터잡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시 총장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외부에서의 ‘학기단위 정기강의’가 교내 교육·연구·직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간 50회 이내, 주당 1과목 3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제41조).

## 2. 교육운영예규 제41조 제3호의 해석

「국방대학교 교육운영예규」 제41조 제3호에서, 주당 1과목 3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학기단위 정기강의’의 개념에 계절학기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계절학기는 일반적으로 각 대학에서 여름학기, 겨울학기 등으로 학기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리큘럼 및 강의시간, 장소가 정기적 일정을 구성하도록 짜여 있음. 교내 교육·연구·직무 상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 강의를 하여야 한다는 위 예규 및 관련 법령의 취지를 볼 때, 계절학기를 정규 학기와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이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계절학기는 위 ‘학기단위 정기강의’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됨.<sup>23)</sup>

## 3. 사안의 경우

다만 예규는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 대내적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며, 교육운영예규 제41조도 총장 및 부서장이 대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그러므로 주당 1과목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내에서의 교육·연구·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총장 및 부서장의 승인이 가능하며, 이는 정책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임.

## 4. 결 론

「국방대학교 교육운영예규」 제41조 제3호에서 ‘학기단위 정기강의’의 의미는

---

23) 만일 계절학기를 제외하려는 의도였다면, ‘정기’강의가 아닌 ‘정규’강의라는 용어로 규정되었어야 할 것임.

계절학기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총장이 교내 교육·연구·직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음. 끝.

질의 : 국방대학교 감찰실-1350 (2017. 7. 1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637 (2017. 8. 4.)

## 27. 해군사관학교 교수 산학협력단 연구비 수령 가능여부

### 【질의요지】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해군참모총장의 검직허가를 받아 별도의 법인인 해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연구비 수령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영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연구용역의 성질에 따라 영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군참모총장의 검직허가가 선행되어야 추후 연구에 따른 합법적 연구비 수령이 가능할 것임.

### 【이 유】

#### 1. 연구비 수령이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군인기본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군인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②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④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야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해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원은 개별 연구 수행 실적에 따라 인건비를

수령하므로 이러한 연구원의 업무는 결과적으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군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에 따른 영리업무에는 해당할 수 있음.

다만, 해사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 및 해군사관학교 학칙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산학협력법 제1조는 그 목적에 대하여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직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사교수로서 군의 발전을 위해 국방과 관계된 연구행위를 하는 것은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한편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지 여부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임.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서 인건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 2. 겸직허가 요건

다만 산학협력단에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영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 하여도, 해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겸직허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군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9조).

### 3. 결 론

결국 사안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연구비 수령이 군인기본법상 영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연구용역의 성질에 따라 영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의 검직허가가 선행되어야 추후 연구에 따른 합법적 연구비 수령이 가능할 것임.  
끝.

질의 : 해군본부 해양법제과-2344 (2017. 7. 5.)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7830 (2017. 9. 15.)

# 제 3 장 병 역



## 28. 전시 전방군단 향방예비군 운용

### 【질의요지】

1. 전시 전방군단 향방예비군을 주요부대 및 시설 경계에 우선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 철수지역 향방예비군은 잔류하여 교대근무 없이 운용 가능 여부
3. 향방예비군 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타 지역 전환운용 가능 여부

### 【답 변】

1. 전시 전방군단 향방예비군을 주요부대 및 시설 경계에 우선 운용할 수 있음.
2. 주민 철수지역 향방예비군을 잔류후 근무교대 없이 운용 가능함.
3. 향방예비군을 타 지역에 전환운용 가능함.

### 【이 유】

#### ■ 질의 1에 관하여

「향방예비군 설치법」<sup>24)</sup> 제2조에 의한 향방예비군의 임무 중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중요시설, 무기고, 병참선 등은 향방예비군이 경비 임무를 수행할 대표적인 시설을 예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시 전방군단 향방예비군을 작전목적에 따라 주요부대 및 시설 경계에 우선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24) 현재 「예비군법」에 해당하며, 동법 제2조 제4호도 “특정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를 예비군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음.

## ■ 질의 2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향토예비군은 동원할 수 있고 그 동원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동원을 해제해야 하는 바 (법 제5조)<sup>25)</sup>, 이와 같은 동원 사유 해소 없이 단지 지역 주민이 철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국방부장관은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의 소멸 내지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의 소개 또는 피난 명령’ 등 긴급조치(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sup>26)</sup>를 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소개 내지 철수가 향토방위작전의 종료를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향토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향토방위작전 기간 동안 주민의 소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주민 철수 지역 향토예비군을 주민철수지역에 잔류시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거주지를 단위로 한 행정구역으로 하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해당 직장의 구내로 편성되나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을 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sup>27)</sup>, 관할구역을 벗어난 직무 응원 시 근무교대가 제한되는 경우 전원근무를 예상할 수 있고, 향토예비군 편성 관련 특전예비군지역대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특전예비군중대·기동대는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단위, 타격대는 동·읍·면 단위로 편성하게 하여 통·리 단위로 편성되는 향방소대와 달리 동·읍·면 단위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고(시행령 제5조 제4항)<sup>28)</sup>, 특히 특전예비군지역대의 경우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근무교대가 제한되어 미교대를 전제로 운용할 필요

25) 현재 「예비군법」 제5조에 해당함.

26) 현재 「예비군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함.

27) 현재 「예비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함.

28) 현재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해당함.

성이 있는 바, 집적지역 주민 철수 시 동원된 향토예비군을 작전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무교대 없이 계속 운용할 수 있다 판단됨.

### ■ 질의 3에 관하여

질의부서에서 문의한 ‘전환 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문명하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직무응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하여 보면 향토예비군은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설치·편성 및 동원(법 제1조)되고 그 임무 또한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된 자<sup>29)</sup>와 달리 법 제2조에 열거된 임무에 한하여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인 관할구역에서 운영하고, 예외적으로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관할구역과 상관없이 직무 응원을 할 수 있는 것인바(시행령 제6조 제2항),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을 확대해석하여 전시 전방군단 향토예비군의 운용을 사실상 병력동원소집되어 입영된 사람과 동일하게 운용하는 경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입법취지와 임무 수행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향토예비군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타 지역에서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음. 끝.

질의 : 합참 법무실-3326 (2015. 12. 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280 (2016. 2. 26.)

29) 병역법 제48조는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9.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이 유】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 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25조제5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같은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환복무 해제요청, 전역 및 병역면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이 수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임.

먼저, 전환복무의 의미와 종류에 관한 「병역법」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역병 등의 복무에 관한 같은 법 제4장에서 전환복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3절),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배경에 의한 전환복무를,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병역처분변경 등의 대상인 현역병의 범위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병역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하고,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호,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현역을 마친 현역병과 같이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전환복무된 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 등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무분야만 현역병과 다를 뿐 그 신분은 현역병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임.<sup>30)</sup>

다음으로, 「병역법」 제24조제7항 및 제25조제6항에서는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함)은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국방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같은 영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은 전환복무된 사람의 근무 특성상 일반적인 현역병의 경우에는 거치지 않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요청이라는 절차가 추가된 것일 뿐이므로, 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병역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서는 현역병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면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

30) 법제처 2010. 5. 10. 회신 10-0087 해석례 참조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제2호),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호), 그 위임에 따라 「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에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sup>31)</sup>에 병역처분 변경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전환복무 해제 등 병역처분변경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임.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끝.

회신 : 법제처 16-0341 (2016. 8. 18.)

---

31) 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함

## 30. 「예비군법」 제10조 직장보장

### 【질의요지】

1. 「예비군법」 제10조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가 휴무로 처리해도 된다는 것인지, 휴무처리도 안되고 불리한 처우도 안된다는 의미인지 여부
2. “유급휴가 처리” 등으로 위 법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1. 휴무처리해서도 안되고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된다는 의미임.
2. 유급휴가 처리 등을 법에 명시할 필요성은 「예비군법」 제10조에 대한 해석 및 판례의 입장을 참고하여, 소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 【이 유】

#### ▣ 질의 1에 관하여

“A 하거나 B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A해서도 안되고, B해서도 안된다고 해석되므로, 「예비군법」 제10조는 휴무처리 및 그 외 불리한 처우도 금지함.

#### ▣ 질의 2에 관하여

“휴무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휴무 내지 휴업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sup>32)</sup>되며, 판례도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당도급제라고 할지라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sup>33)</sup>하였음. 위와 같은 해석 및 판례의 입장을 참고하여 “유급휴가 처리” 등을 명시할지 소관부서에서 결정하기 바람. 끝.

질의 : 예비전력과-3479(2017. 8. 10.)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950(2017. 8. 17.)

---

32) 김형배, 근로기준법, 박영사, 1990, 96면;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8, 178면; 이상윤, 근로기준법, 법문사, 1999, 117면; 임종률, 「단체교섭의대상」 노동법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김형배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4, 367면;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주해, 박영사, 2010. 9. 15.

33)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 1801 판결

## 31. 동원보류 대상자

### 【질의요지】

「예비군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동원보류 대상자의 범위를 행정규칙인 훈령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행정규칙에서 그 대상자를 축소 내지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이 유】

동원보류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원과 훈련소집을 면제하는 것이며, 「예비군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동원보류대상자에 대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 변화에 따라 보류 대상자를 재설정 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는 것은 아님.

그러나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나 절차에 의해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보류 직종 중 일부에 대해서만 동원보류가 인정되고,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나, 동원대상자와 관련해서 시행규칙은 국방부장관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원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있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3항), 동원보류를 받기 위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보류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만 규정하고(제6조의3 제1항) 있을 뿐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보류 직종을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준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거나 위임한 바 없음.

그러므로 행정규칙에서 그 대상자를 축소 내지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예비전력과-3797(2017. 8. 3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7966(2017. 9. 20.)



# 제4장 복 지

[보수 · 연금 · 보훈 · 국립묘지안장]



## 3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한 재심사·재산정 요구 거부

### 【질의요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답 변】

상기 규정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완료되기 이전 사안에 적용되고,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이 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및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또한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현재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분과위원회와 보상금 등 산정분과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다시 위원회로 상정되어 본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한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함) 제18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산정에 대하여 직권에 의해 재심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미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하위 기구로서 유족심사 및 보상금 산정에 있어 일종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할 뿐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위원회가 내리게 됨<sup>34)</sup>. 따라서 만약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위원장 직권으로 재심사 등을 한다면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

또한 조문 체계를 보더라도 시행령 제12~14조에서 보상금, 공로금, 특별 위로금 등을, 제16~17조에서 구체적인 지급신청절차 등을 설명한 뒤 제19조 이하에서는 위원회의 보상결정 및 그 이후의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제18조는 위원회의 보상결정 이전에 위원장이 직권으로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등을 요구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특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도 위원장 직권으로 재심사 요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재심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음. 이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상위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일반적인 법령해석 원칙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

결국 시행령 제18조의 직권에 의한 재심사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완료되기 이전 사안에 적용되고,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끝.

질의 :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1722(2015. 9. 2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9365(2015. 11. 4.)

---

34)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려면 본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

### 33.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여부

####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로서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하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한도인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진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지 여부

#### 【답 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됨.

#### 【이 유】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구 「군인연금법」(2015. 12. 29. 법률 제136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함) 제30조의5 제1항 및 제30조의6에서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5. 10. 29. 대통령령 제2660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라 함) 제59조의3에서는 법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의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와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제2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로서 구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호에 따라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하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한도인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진료비의 경우(대통령령 제26608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또는 법률 제1363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임.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sup>35)</sup>,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입법취지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등에 대하여 특정한 재원을 마련하여 그 부담으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재원으로 공무상 질병 등에 대한 급여 등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급여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연금법」 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우선하도록 하고, 이중급여를 방지하여 국민건강보험 제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군인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요양을 받는 것이 원칙인바<sup>35)</sup>, 이는 공상 군인에 대한 현물급여인 보상(補償)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에 한정하여 군병원에서의 요양이라는 현물급여 대신 군인연금에서 일정한 금원으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당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리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 한도를 실제 요양에 필요한 기간, 응급 상황 해소 여부, 환자의 상태와 호전 정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30일간의 요양비로 정하고 있는 것일 뿐 당초 인정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려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입법취지 또는 구 군인연금법령과 「국민건강보험법」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개별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두고 있는 다른 법령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만약,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되는 군인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령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게 된다면, 공무상 부상 등을 입은 공무원이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아니라

35) 법제처 2014. 8. 14. 회신 14-0339 해석례 참조

36) 법제처 2014. 8. 14. 회신 14-0339 해석례 참조

공무원연금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각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군인의 공무상 부상 등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령에 따른 부담금과 기여금이라는 특정한 재원부담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상군인에 대하여는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그 비용을 부담시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 개별 법령상의 특정한 재원부담체계를 두고 있는 다른 공무원이나 근로자 등과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됨.

이와 관련해서, 군인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을 최초 2년 이하, 필요시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료가 완료된 부상 등이 재발하여 민간병원에서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는 재요양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구 군인연금법령이 개정되었는 바<sup>37)</sup>, 이는 구 군인연금법령의 예외적인 요양비 지급 제도상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로서 구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호에 따라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하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한도인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진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할 것임. 끝.

회신 : 법제처 15-0813 (2016. 2. 18.)

---

37)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30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 개정이유서 및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 34.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의 의미

### 【질의요지】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 여부

### 【답 변】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이 유】

「군인공제회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군인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제1호),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제2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제3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임.

먼저,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군인공제회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제1호)과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제2호)과 같이 사업의 형태를 회원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이라고만 규정하여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의 형태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문언상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이 반드시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그리고, 「군인공제회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는 군인공제회의 정관에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관의 변경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군인공제회는 정관의 변경 등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 외에 다양한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을 포함하여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끝.

회신 : 법제처 15-0878 (2016. 3. 4.)

## 3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법률관계

### 【질의요지】

1.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간주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
2. 보상금을 수령한 자가 다시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접수 단계에서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3. 보상금을 수령한 자가 다시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추가 보상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 보상금을 수령한 자가 다시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1. 특수임무수행 및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2. 접수 단계에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임.
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4. 사안에 따라 각하, 기각 결정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 ▣ 질의 1에 관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17조2에 따르면,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됨. 한편 법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함) 등에 따르면 보상금등은 보상금, 기본공로금, 가산공로금, 기본특별공로금, 가산특별공로금, 사망특별위로금, 장애특별위로금 등으로 나뉘는데, 만약 신청인이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을 신청하고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가 문제됨.

법 제17조2에서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관련 피해 전체에 대한 다툼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결정으로서 일의적·종국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즉 법의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볼 때 신청인이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참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화운동 보상<sup>38)</sup>이 문제된 유사 사안에서도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형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바 있음<sup>39)</sup>. 물론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하더라도 특수

3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9)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물적손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판례<sup>40)</sup>도 있으나, 이는 인적손해와 물적손해의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본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sup>41)</sup>

따라서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등을 수령하였다면, 특수임무수행 및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 ■ 질의 2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됨. 이는 상기 법률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런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은 좁게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결국 법이나 시행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접수 단계에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임.

### ■ 질의 3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 제17조의2는 특수임무수행 관련 피해 전체에

4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1357 판결

41) 또한 이 판결의 내용을 반대해석하면 인적손해일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걸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음

대한 다툼을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일의적·종국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또한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설사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조서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sup>42)</sup>의 입장임<sup>43)</sup>.

실제 법원은 국가가 특수임무수행 보상금을 지급했다가 화해계약을 취소하고 지급액 상당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한 사건에서, 국가의 착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관계는 일종의 화해계약 관계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sup>44)</sup>. 또한 국가가 법 제18조에 따라 보상금환수처분을 한 사건에서도 “법 제17조의2의 취지는 보상금채권이라는 민사적 청구권에 대하여 보상금수급자나 국가가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존부를 다투거나 추가청구(수급자 입장) 혹은 반환청구(국가 입장)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라고 명시하고 있음<sup>45)</sup>.

즉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부여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수급자의 추가청구나 국가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판례의 태도, 최초 제정 법률에는 없던 제17조의2를 2006년 개정을 통해 신설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을 도입한 배경과 일의적·종국적 분쟁 해소라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4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43)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정하였다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나(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이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0. 선고 2009가단468938 판결

45)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누12896 판결. 단 이 판결에서 법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의 반환청구는 부정하였으나, 환수처분까지 부정하면 법 제18조가 무의미해진다는 이유로 법 제18조에 따른 보상금결정의 직권취소로서의 보상금 환수처분은 인정하였음. 한편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으나(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파기사유가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상기 법리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해석됨

위원회에서 기존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sup>46)</sup>.

#### ■ 질의 4에 관하여

기각과 각하는 신청인의 청구를 배척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사실상 구별 실익이 크지 않음. 또한 반드시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만 각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청에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청의 판단 하에 각하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법 제17조의2에 의해 재판상 화해가 간주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기판력의 일반 법리를 살펴보면, 판례는 모순금지설의 입장에서 승소한 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패소한 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 전소와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하는 입장임. 이 법리를 유추적용할 때 보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재신청한 자는 결국 전소에서 패소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각 결정도 가능할 것임. 끝.

질의 :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805 (2016. 4. 2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510 (2016. 5. 27.)

---

46) 단, 법 제18조에 따른 환수처분은 그 성격을 달리 하므로 환수는 가능할 것임.

### 36.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법인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법인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이 유】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법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등(이하 “법정부담금”이라 함)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임.

먼저,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서는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면서 “교육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개념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교육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교육시설과 학교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학교”에는 교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물적 시설과 인력이 함께 요구되는 개념이라 할 것임. 이에 반하여 교육시설 또는 학교 시설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시설을 교사대지(校舍垓地)·체육장 및 실습지, 교사(校舍)·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에서는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교육 관계 법령에서 “학교시설”이나 “교육시설”은 주로 학교와 관련된 물적 시설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할 것이므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도 교사(校舍)·운동장·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 등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 장소 등 물적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의 앞부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지원 대상을 “교육운영 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의 뒷부분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적 보조의 대상을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문언을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한편, “운영”이란 어떤 단체나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서는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규정하여 운영의 대상을 교육시설로 한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시설을 물적인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의미도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제공된 “시설”이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이를 증축·개수·보수 등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인력의 운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더욱이,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는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인자녀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제11225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최초 발의안<sup>47)</sup>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학교 부지 매입, 시설 건축

---

47) 의안번호 제1811543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종표의원 대표발의)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자금 지원의 대상을 학교시설과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수정되어 지원의 형태를 학교 운영 일반에 관한 행정적 지원과 “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재정적 지원으로 구분하고, 그 재정적 지원의 범위도 “예산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비용 보조의 범위는 물적인 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끝.

회신 : 법제처 16-0115 (2016. 6. 7.)

## 37.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

### 【질의요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함)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답 변】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은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이 유】

지뢰피해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뢰사고”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본문에서는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지뢰피해자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1항에서는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제1호),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제2호) 및 피해자 중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제3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에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제1호) 및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제2호)에는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임.

먼저,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확정판결은 법원이 한 중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원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게 된 상태의 판결을 말하고,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판력(既判力)을 가지는 바<sup>48)</sup>,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해당 판결이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패소판결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확정된 패소판결도 기판력을 가지는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패소판결이

---

48)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250 결정례 및 「민사소송법」 제216조제1항 참조

확정된 경우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은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

또한, 지뢰피해자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뢰사고의 피해자 중 국가배상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등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sup>49)</sup>이 경과하였더라도 시효제도와 무관하게 국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지뢰피해자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시효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배상금의 성격을 가진 위로금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50)</sup>. 따라서,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은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제1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등(제2호)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미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권리행사를 한 경우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은 같은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임.

나아가,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입법 경과를 살펴보면, 같은 규정이 최초 발의<sup>51)</sup>될 때에는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현행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최초 발의안의 내용이 「민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에 부합하지 않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는 입법 요구가 폭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판

49) 「국가배상법」 제8조 본문 및 「민법」 제766조제1항 참조

50) 2014. 10. 15. 법률 제12790호로 제정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51) 의안번호 제1903411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자 한기호 의원 등 31인

력에 반하여 위로금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인바<sup>52)</sup>, 지뢰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의 경우에는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지뢰피해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은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 끝.

회신 : 법제처 16-0355 (2016. 10. 24.)

---

52) 2014년 10월 15일 법률 제12790호로 제정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 38. 함정근무수당 지급

### 【질의요지】

함정승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첫 출항을 한 자가 함정승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은 때부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실제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한 경우에는 보직일자를 기준으로 함정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이 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4조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표 11은 특수업무분야 중 선박 및 함정 근무수당에 관하여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을 들고 있음. 이를 구체화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조제2항은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규칙 별표 2에서는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에 관하여 잠수함정의 승무원,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 등을 지급대상으로 두고 있음.

질의사안은 이와 같은 선박 및 함정 근무수당의 지급에 있어 보직된 날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수당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출동시점부터 수당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 대상을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하면서 공무원이 별표 11에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사안과 같은 함정근무수당의 경우에도 위 업무지침에 따를 때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게 해당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점 및 함정 승무원으로 보직된 경우 함정이 장기간 수리 중인 경우 등과 같이 명백히 출동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언제든지 출항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한 경우에는 보직일자를 기준으로 함정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해군본부 해양법제과-1849(2016. 6. 30.)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261(2017. 1. 5.)

## 39.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인지 여부

### 【답 변】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은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님.

### 【이 유】

「군인연금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제1호), 병(제2호), 군간부후보생(제3호)에게는 같은 법 제31조와 제32조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군장학생 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군장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위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에서는 군장학생의 선발은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고, 고교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9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고교 장학생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임.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sup>53)</sup>, 「군인연금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가목), 같은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장학생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르면 군장학생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임.

다음으로,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사관

5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대우(待遇)”란 직장에서 지위나 급료 따위의 근로 조건 또는 직명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그것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직위임을 나타내는 말이므로<sup>54)</sup>, 「군장학생 규정」 제9조 제2항은 군장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는 의미일 뿐,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나아가,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군간부후보생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현역에 해당하고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 등을 받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연금법」 제2조에서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 것임. 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재학생에 불과한 군장학생의 경우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군인연금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은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끝.

회신 : 법제처 17-0120 (2017. 3. 20.)

5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40. 대출 협약서와 급여 수급계좌 선택권

### 【질의요지】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 협약서에 따라 대출 받은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협약과 달리 타 은행계좌로 급여 지급을 신청할 경우 협약서상의 협조의무에 따라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급여 수급계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급여 수급계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없음.

### 【이 유】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 협약은 군인과 대출기관 간 담보제공 없이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이율로 대출계약할 수 있도록, 소속 부대장의 추천서 제출과 퇴직 시 퇴직금수령계좌를 대출은행으로 하는 등 대출 요건에 관한 국방부와 대출기관간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임.

이러한 협조의무는 강행규정에 위반하거나 상위 법규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협약을 이유로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음.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0조의 성질은 「군인연금법」 상의 각종 급여가 퇴직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제7조가 이러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이며, 이 법규의 취지 상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급여지급 통장과 인감 등을 유치하거나, 급여를 대신 청구

하는 것도 금지된다<sup>55)</sup>는 점에서 수급 시 지급방법을 당사자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지정하는 시기는 수급시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나, 수급자의 급여 보호를 위해서 수급시 이전에 지정한 예금계좌와 다르게 다른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수급시를 기준으로 함.

그러므로 대출협약서상의 협조의무를 이유로 시행령 제7조와 다르게 수급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가 아닌 대출은행 계좌로 지급하거나, 수급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지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음. 끝.

질의 : 군인연금과-2353(2017. 6. 23.)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5988(2017. 7. 14.)

---

55) 김종양 · 최재식, 공무원연금제도 217면

## 41.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호비 산정시점

### 【질의요지】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호비 산정시점

### 【답 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함)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지뢰사고의 피해자 중 국가배상제도를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국가의 배상<sup>56)</sup>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임.

이에 따를 때 지뢰피해자에게는 크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이 지원됨. 구체적으로 위로금의 경우 사망자는 사망 당시 월금액 등에 장래취업가능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상이를 입은 자는 월금액 등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취업가능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각각 산정한 뒤,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로부터 보상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됨. 또한 의료지원금은 상이를 입은 자에게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치료비, 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

56) 법률에는 ‘위로금’, ‘의료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배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음 (2014. 7.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비로 나뉨.

문제가 된 보호비의 경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함) 제12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그 산정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실무상 지뢰피해자의 보호비 지급신청으로부터 위원회의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보호비 산정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먼저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물론, 치료비·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이미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향후치료비, 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제4호에서는 기지급치료비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 제12조제4호의 기지급치료비 규정을 보면, 기지급치료비는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치료에 든 직접 비용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기지급치료비 신청일 다음 날부터는 향후치료비를 적용함. 즉 기지급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구분하는 시점은 위원회의 기지급치료비 결정일이 아니라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임<sup>57)</sup>.

이처럼 시행령 제12조에서 기지급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구분 시점을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로 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sup>58)</sup>, 지뢰피해자에 대한 시혜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의 취지 또한 고려되었을 것으로

57) 다만,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 전에 위로금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위로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58) 예를 들어 기지급치료비 결정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 이후 결정 때까지 소요된 비용의 반영·검증이 어려울 수 있음

추정됨. 보통 기지급치료비는 증빙이 어려운 관계로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금액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향후치료비는 지정병원의 치료비 추정에 따라 보다 많은 금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일반적으로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지뢰피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임. 따라서 비록 시행령 제12조제2호에는 산정시점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보호비 역시 의료지원금의 일종임에 비추어 볼 때 법의 시혜적 성격을 고려하여 지뢰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임<sup>59)</sup>.

또한 위원회의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같은 시기에 신청한 지뢰피해자 간에도 위원회의 심사 진행 경과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은 국가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시혜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의결기간이 개별 건마다 상이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정기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를 종합할 때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호비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sup>60)</sup> 끝.

질의 : 지뢰피해자지원단-2407(2017. 8. 1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7732(2017. 9. 12.)

59)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호비를 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지뢰피해자에게 유리함

60) 보호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동법 제9조에서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4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시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경우

### 【질의요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 명의 계좌의 압류가 우려되는 경우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일반조항의 해석원칙에 따를 때,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의 압류가 우려되는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이 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이하 ‘본 규정’이라고 함)에 따르면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외공관의 장(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입원의 경우), 수용기관의 장(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및 읍·면·동장(그 밖의 경우)의 확인이 필요함<sup>61)</sup>.

본 규정의 ‘그 밖의 경우’는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바, 추상적·포괄적 성격의 일반조항은 예시적 입법형식에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sup>62)</sup> ‘이민·입원 그

61) 본 규정의 본문에서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제4호에서는 ‘그 밖의 경우’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조항이라는 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그 밖의 경우’로 통일하여 서술하기로 함.

62) 법제처 해석례(13-0123, 2013. 5. 7.) 참조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 및 제1호부터 제4호는 예시적 입법으로 보아야 함. 그런데 예시적 입법형식에 있어 일반조항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함<sup>63)</sup>.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본 규정의 ‘그 밖의 경우’의 해석은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 즉 이민, 입원, 수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부터 도출되어야 함. 그런데 이민, 입원, 수용은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거나 대상자의 거동이 자유롭지 않음 등 현실적·물리적으로 신청·수령이 어려운 경우라는 공통점을 가짐. 따라서 ‘그 밖의 경우’ 역시 유사한 사유로 대상자가 현실적·물리적으로 보상금의 신청·수령이 제한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할 것임.

그런데 본 사안은 대상자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 명의 계좌의 압류가 우려되는 경우인 바, 이는 법률적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sup>64)</sup> 현실적·물리적으로 신청·수령이 제한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그렇다면 본 규정의 ‘그 밖의 경우’에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 압류가 우려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그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정리하면 본 규정은 일반조항이 사용된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63) 헌법재판소 판례(2007헌바72, 2009. 3. 26.) 참조

64) 참고로 판례에 따르면,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나 이 경우에도 원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고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생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도 가능하므로(대법원 1996. 12. 24. 96마1302 결정 등), 법률적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바, 일반조항의 해석원칙에 따를 때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의 압류가 우려되는 경우는 보상금 신청·수령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끝.

질의 : 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1742(2017. 9. 20.)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8580(2017. 10. 13.)

# 제 5 장 군수 및 방위산업



## 43. 탄약대여시 대여금액 산정

### 【질의요지】

1. (1)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때, 「군수품관리훈령」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물품가액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가 곤란한 경우는 장부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한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약사가 평가금액을 산정한 것이 관련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부

(2) 탄약사가 평가금액 산정 시 회수물질 물량을 개근한 가치로 평가한 것이 적절한 지 여부

2. (1) 기술연구용역을 체결하여 탄약을 처리하는 시험을 할 경우에는 탄약에 대한 양도·대여·교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이 경우 탄약에 대한 대가를 업체로부터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훈령」 제38조 제2항 위배 여부)

3.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화약류 등을 양도·양수·운반 및 폐기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위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지 여부

### 【답 변】

1. 현 「군수품관리훈령」은 2011. 12. 30. 제정된 것으로서 사안의 대여계약 당시 적용되는 훈령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대여 당시 적용되는 규정을 재확인하기 바라며, 군수품 유상 대여 시 대여료의 적정여부는 법적판단사항이 아님.

2. 기술연구용역계약과 군수품 양도·대여·교환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양도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님. 다만, 계약의 방식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기술연구용역계약의 내용에 양도계약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탄약에 대한 대가를 양도로서 받는 것인지 대여로서 받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어느 경우라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양도 또는 대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임.

3. 군에서 대여한 탄약인지 여부는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님. 따라서 사안에서 탄약을 양도·양수·운반 및 폐기 등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행위 시 해당 탄약이 화약류 등으로서의 성질을 잃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 ■ 질의 1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에 군수품 유상 대여 시 대여료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대여 계약 시 적용되는 군수품관리훈령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사안의 경우 대여계약을 2010년도에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현 「군수품관리훈령」은 2011. 12. 30. 제정되었음. 현 「군수품관리훈령」이 대여 계약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시 대여계약의 대여료 산정에 대하여 현 「군수품관리훈령」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군수품관리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액의 의미가 위 법령에 기재된 의미와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음. 감정평가는 감정업자가 동산이나 부동산 따위와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

므로, 일반적으로는 위 법령과 같이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군수품관리훈령」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액의 정확한 의미는 훈령소관부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질의 2에 관하여

기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탄약의 대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기술연구용역계약의 내용에 탄약 대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에 실질적으로 두 개의 계약내용이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탄약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각 호에 열거된 경우 등 법령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안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답변이 제한됨.

#### ■ 질의 3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한 허가에 있어서 군에서 양도한 화약류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군에서 대여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하는 당시 화약류 등의 성질을 잃어 화약류 등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탄약관리과-332 (2016. 1. 2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949 (2016. 2. 12.)

#### 44.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및 제43조(손·망실의 통보)를 군수품의 손·망실에 대한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망실처리)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및 제43조(손·망실의 통보)는 군수품의 손·망실에 대한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망실처리)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됨.

##### 【이 유】

「군수품관리법」 제23조에서는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하였거나 관급한 경우에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물품관리관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장부에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적어 현재량·현재액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및 제43조(손·망실의 통보)의 규정을 군수품의 손·망실에 대한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망실 처리)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임.

먼저, 「대한민국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입법권을 근거로 법률의 위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를 명시해주어야 할 것이나, 대통령령에서 법률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대통령령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그런데, 「군수품관리법」 제23조에서는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정(調整)”이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을 의미하는 것인바<sup>65)</sup>,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등에서는 군수품이 손·망실되었을 때 발생하는 물품출납공무원 등의 보고의무, 통보의무, 관계 장부 수정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손·망실처리와 관련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는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내용이나 절차, 기록의 방법, 손·망실처리에 이어지는 후속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수품이 손·망실되었을 때 조정하여야 하는 내용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6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더욱이, 「군수품관리법」 제23조에서는 조 제목을 “손·망실처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제7절의 제목을 같은 법 제23조의 제목과 같은 “손·망실처리”로 규정하면서 같은 절의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손·망실처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같은 법 제23조의 위임에 따른 규정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7절의 전체 조항이 같은 법 제23조의 위임에 따라 손·망실처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한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군수품관리법」 제23조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군수품에 대한 관리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모법인 「군수품관리법」 제23조의 위임에 근거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달리 없고, 만약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같은 법 제23조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이 아니라고 본다면 같은 법 제23조에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 조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되어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를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군수품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므로 군수품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는 군수품의 손·망실에 대한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끝.

회신 : 법제처 16-0011 (2016. 4. 19.)

## 45. 경과규정 없는 개정된 훈령의 적용여부

### 【질의요지】

'12. 8. 국방부-농림부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기반한 농림부 R&D 예산으로 개발된 '훈련용 식량 겸 아웃도어용 식품'(이하 '이 사건 식품기술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정부업체 공동투자연구개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느 시점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국방부-농림부간 MOU에 기반한 농림부 식품개발사업은 '12. 9. 12.부터 '14. 3. 11.까지 진행되었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12. 2. 3., '14. 5. 26. 개정됨

### 【답 변】

행정처분은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 그러므로 이 사건 식품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훈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으므로 수의계약 가능한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인지에 대한 판단은 적용 당시 훈령인 「국방부전력발전훈령」('14. 5. 26.) 개정본을 적용하여야 함.

### 【이 유】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처분시법주의가 적용됨.[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이 사건 업체는 식품기술개발사업의 연구를 '12. 9.에 시작하여, '14. 3.에 완료하였으나, 위 연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훈령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신 훈령을 적용하여야 함.

그러므로 이 사건 식품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훈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이 판단한 이전 법적검토<sup>66)</sup>와 동일함. 끝.

질의 : 물자관리과-965 (2017. 2. 23.)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2829 (2017. 3. 30.)

---

66)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14. 5. 26. 개정)」 제109조제1항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하나인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을 국방부와 산·학·연이 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훈령상의 정부는 국방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업체는 농림부와 공동투자연구개발을 하였으며, 훈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개발을 한 것이 아니므로 훈령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법률자문 회신 [규제개혁법제과-6448(2014. 8. 4.)]

## 46. 이사화물 수송임 비용

### 【질의요지】

계룡대지역 관사(계룡시 OO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자운대근무지원단에서 계룡대근무지원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계룡시 OO아파트에 거주하던 세대를 다른 아파트로 이주시켜야 할 경우, 훈령상의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데 이사화물 수송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6조제2항의 신·개축 보수, 용도변경, 기존 숙소 철거 등의 예시는 제한적 열거가 아니고, 구체적 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군 관사 관리주체 변경으로 인한 이사는 개인의 의사로 인한 이사가 아닌 관사에 관한 군의 정책 변경으로 보아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을 할 수 있음.

### 【이 유】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이하 ‘훈령’이라 함) 제6조제2항에 인사명령 이외의 사유로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로 ‘관사의 관리주체 변경’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는 법령의 입법취지 및 각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훈령은 원칙적으로 인사명령에 의한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훈령 제6조제1항에서 작전명령에 의한 부대이동을 제2항에서 관사 신·개축 보수, 기존숙소 철거 등을 나열하고 있음.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훈령에서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인의 의사로 이사한 경우가 아닌, 전속 또는 관사에 대한 군의 정책 변경 등임을 알 수 있음.

또한 훈령의 제정 취지는 군인이 국가의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원해줌으로써 군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므로 이를 제재적 규정처럼 엄격히 해석할 필요는 없음.

그러므로 훈령 제6조제2항의 신·개축 보수, 용도변경, 기존숙소 철거 등의 예시는 제한적 열거가 아니고, 구체적 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군 관사 관리주체 변경으로 인한 이사는 개인의 의사로 인한 이사가 아닌 관사에 관한 군의 정책 변경으로 보아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을 할 수 있음. 끝.

질의 :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702 (2017. 3. 3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2914 (2017. 4. 3.)

## 47. 금속제 모장이 단속대상인지 여부

### 【질의요지】

얼룩무늬 전투모에 있는 금속제 모장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 변】

금속제 모장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단속 대상이 되는 군복 또는 유사군복에 해당됨.

### 【이 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단속 대상 품목은 “군복”, “군용장구”, “유사군복”이므로 얼룩무늬 전투모에 달린 금속제 모장 단속 품목 대상의 군복 또는 유사군복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됨.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뜻하고 “유사군복”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및 별표1을 보면 유사군복의 범위에는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관급 장교표지를 포함하고 있음.

법 제2조제1호에 군복 및 법 제2조제3호 유사군복에 계급장이 포함되어 있고, 군인복제령 제7조에 따른 계급장 종류에는 군모장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군인복제령 별도4의 군모장에는 재질이 포제와 금속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금속제 모장은 단속 대상이 되는 군복 또는 유사군복에 해당됨.

만약 민간인이 금속제 모장을 착용하거나 휴대하고 있으면 군인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한 것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군인복제령」 별도4의 금속제 모장과 외관상 유사한 물품을 착용하였다면 유사군복을 착용한 것으로 단속 대상이 됨. 끝.

질의 :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796 (2017. 4. 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370 (2017. 4. 13.)

## 48. 불용군수품 매각 관련 검토

### 【질의요지】

불용군수품 매각처리에 있어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답 변】

불용군수품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물품관리법」이 아닌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이 유】

불용군수품을 매각하고자 할 때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됨.

「군수품관리법」은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군수품관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군수품관리법」 규정으로 특별히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군수품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물품관리법」을 준용해야 하는 규정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때 「물품관리법」 제39조의 매각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준용규정에 있지 않음.

그러므로 불용군수품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물품관리법」이 아닌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질의 :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2501 (2017. 6. 23.)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5450 (2017. 6. 29.)

## 49. 조약에 따른 군수품 불용결정 시 절차문제

### 【질의요지】

미식별 가소성 폭약에 대한 폐기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별도의 국방부 정책결정이나 관련 심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국내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면 군수품 불용결정은 국방부나 각 군 모두 추진할 수 있으므로, 가소성 폭약 폐기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국방부의 정책결정이나 심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이 유】

#### 1. 조약준수의무

대한민국이 가입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함)에 따라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히 미식별 가소성 폭약이 자국의 영토 안에서 폐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sup>67)</sup>

#### 2. 조약준수의무 이행과 국내절차 준수

본 협약은 다자조약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조약이 요구하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만일 본 조약의 이행이 국내법 위반이 되는 경우, 조약의 해당

67) '15년 8월, 군이 보유한 비식별조치 가소성 폭약 처리 문제에 대한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의 법률 자문회신 참조

국내법은 충돌로 인한 우열관계가 문제될 수 있음. 그러나, 본 사안은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사안이 아님. 조약준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준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임.

### 3. 폐기절차

폭약의 폐기는 군수품의 불용결정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불용결정업무의 기본적인 분담관계는 「군수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훈령」에 규정되어 있음. 「군수품 관리훈령」 제31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사항과 불용결정 승인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불용결정 업무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즉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수품 불용결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불용결정의 최종 승인업무를 관장하여야 함. 한편, 각 군 참모총장의 경우 불용결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여야 함.

사안의 경우 폭약폐기의무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 협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① 각 군에서 본 협약을 근거로 하여 소요제기 등 불용결정 업무 전반을 수행한 후, 국방부의 승인절차로 나아가도 무방함. 또한 국방부는 군수품 불용결정 정책 및 제도개선사항을 얼마든지 추진해 나갈 수 있으므로, ② 본 협약을 근거로 국방부가 폭약폐기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 후에 각 군이 불용절차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함.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군수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훈령」의 불용절차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 4. 결 론

그러므로 국내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면 군수품 불용결정은 국방부나 각 군 모두 추진할 수 있으며, 가소성 폭약 폐기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국방부의 정책결정이나 심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끝.

질의 : 탄약관리과-2804 (2017. 7. 1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636 (2017. 8. 4.)

## 50. 군수품 교환계약

### 【질의요지】

폐식용유 물물교환 계약에 있어 국방부가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군수품관련법령 및 법제처 해석<sup>68)</sup> 등을 종합하면 군수품 교환계약에 있어 국방부가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음.

### 【이 유】

「물품관리법」 제3조에서는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품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부 「물품관리법」을 준용할 것을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군수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군수품의 교환에 관해서는 「군수품관리법」 제16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적용해야 함.

그렇다면 군수품의 교환계약에 관해서 국방부가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가 적용되어 교환계약 당사자 선정에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됨.

68) 법제처 유권해석 2009. 6. 26. (법제처 09-0163)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군수품관리법령상 교환에 있어서 그 교환상대자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음.

군수품관리법령은 교환상대자 선정에 있어서 그 선정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교환의 필요성이나 취지·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교환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교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령상의 해당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국방관서의 장 등이 교환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음<sup>69)</sup>.

그러므로 교환계약에 있어 국방부가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음. 끝.

질의 : 육군 법제과-2212 (2017. 6. 2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928 (2017. 8. 16.)

---

69) 법제처 유권해석 09-0163 (2009. 6. 26.)

## 51. 군 병원 설립과 관련한 검토

### 【질의요지】

1. 군 병원인 OO병원 건축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2. 군 병원 건설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유로 허가를 반려할 수 있을지 여부
3. 국가가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1.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므로 OO병원 건설 관련 건축허가를 하면서 OO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이란 부관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분과 부관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위법한 것임.
2. 건축법상 OO병원 건축허가를 민원 등의 이유로 반려할 수 없음.
3. 국가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일반국민에 대한 행정처분등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 유】

#### ▣ 질의 1과 2에 관하여

- 1) 건축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음.

판례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 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라 판시하였음(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즉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므로 OO병원 건설 관련 건축허가를 하면서 OO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이란 부관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분과 부관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위법한 것임.

충청남도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부관을 부과한 사안에서 고등법원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전체 규모에 비추어 기부금액이 골프장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부금이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관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무원의 인·허가시 부담은 법치주의 조세법률주의,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부당결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부관이 공익적 목적이고,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않더라도 이는 부당결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따라서 판례는 부관의 위법성 검토시 부관의 공익성 및 과소한 부담성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OO시가 OO병원 허가를 조건으로 체육시설 조성을

부과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공익이라 하더라도 허용되기 어렵고, 또한 OO시가 요구하는 체육시설 부담 비용은 220억 원으로 과다하여 비례원칙에도 위반되고 있음.

2) OO병원을 인근 주민 반대 사유로 허가를 반려할 수 있을지 여부

「건축법」 제8조<sup>70)</sup>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이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그 법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등 참조).

판례는 인근 주민들이 변전소 건립에 반발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변전소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건축허가의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부산고등법원 1996. 11. 21. 선고 96구1405 판결).

그러므로 OO병원 건축허가를 민원 등의 이유로 반려할 수 없음.

### ■ 질의 3에 관하여

1) 국가가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국가의 항고소송원고 적격성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의 항고적격성을

---

70) 구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현행 건축법 제11조

인정한 판례가 있음.

“항고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므로 개인이 아닌 국가는 원고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가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51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는 항소소송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6. 5. 선고 2009구합6391 판결)

그러므로 국가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일반국민에 대한 행정처분등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참조).

다만 국가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판례<sup>71)</sup>에서 법원은 국가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기관이 행한 조치 및 그 조치에 불응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처분의 근거 법령과 그 내용, 침해되는 국가기관의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우월적 지위에서 고권적인 권한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부조직 내에서 가능한 해결조정 수단이 행정조직법 기타 법령상 존재하는지 여부,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기관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충성 원칙을 검토하여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음.

---

71)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국방부와 OO시 사이에 정부조직 내에서 가능한 해결 조정 수단, 권한쟁의 등 다른 권리구제 수단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2) 쟁송수단에 대한 검토

만약 이 사안에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수단은 다음과 같음.

행정행위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 그 자체로서 행정행위 대상이 될 수 있음(대법원 1996. 1. 23. 95다3541).

또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경우라면 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를 행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다만 이 소송은 부작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극적인 권리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된 판례의 경우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신고필증교부의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약체결증지권고문의 송달 및 매수의사통보로써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이로써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경우는 부작위위법소송이 아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끝.

질 의 : 부대건설사업과-2294 (2017. 8. 16.)

회 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7067 (2017. 8. 21.)

## 52. 폐기된 탄약의 성격

### 【질의요지】

방산물자로 지정된 탄약이 불용 또는 폐기대상으로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에도 방산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군수품 중 방산물자로 지정된 것이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해 불용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방위사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물로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방산물자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sup>72)</sup>.

### 【이 유】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물품 중 국방관서와 각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군수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방위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군수품 중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것을 방산물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들 규정에 의하면 군수품과 방산물자는 그 적용법률을 달리하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군수품 중 방산물자로 지정된 것이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해 불용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방위사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72) 불용결정된 군수품에 대한 방산물자 성격에 대한 판단은 이전 법적검토[법무관리관실(1993. 3. 3.)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수출하는 방산물자 수출업체 지정”]와 동일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물자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방산물  
자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끝.

질의 : 탄약관리과-2930 (2017. 7. 2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7269 (2017. 8. 29.)

# 제 6 장 시설

[군용지 취득 · 국유재산 · 군사시설보호]



## 53.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함.

### 【이 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6조제5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녹색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 전단에 따른 녹색건물 인증

대상 건축물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제1호),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되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건축물로 한정할 것(제2호),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제3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제4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이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가목),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나목),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다목), 진지 구축시설(라목),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마목),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바목),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사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훈령인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훈령」 제4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공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으로 국방시설본부장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안은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임.

먼저,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이 녹색건축법 제16조제5항 전단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군사시설이 국유재산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리(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방·군사시설이 국유재산인 이상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국유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칭은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군사시설의 소관 중앙관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라고 할 것이어서 부동산인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등기에는 국방부가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으로 기재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방·군사시설은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가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그리고, 녹색건축법 제16조제4항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대상 건축물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3호라목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군사시설도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려는 것이 녹색

건축 인증제의 취지라고 할 것임.

한편, 국방·군사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임과 국방부 훈령인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방시설 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령인 「국방시설본부령」 제1조에서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제2항에서는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끝.

회신 : 법제처 15-0593 (2015. 12. 30.)

## 54.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

### 【질의요지】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 주택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주택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위한 허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등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 주택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주택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위한 허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등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함.

### 【이 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통제보호구역(가목) 및 제한보호구역(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함)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등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군사기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방부장관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이하 “기존 주택”이라 함)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이하 “신축·증축등”이라 함)이되,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제1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하는(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 주택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주택의 신축·증축등을 위하여 허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등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임.

먼저, 군사기지법 제13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등에 관한 허가등을 할 때 국방부장관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 등이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건축·설치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과 군사활동·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건축행위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여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상호 협의하여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sup>73)</sup>

다음으로,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제1호),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허가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문언상 국방부장관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의 현황 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73) 법제처 2010. 8. 3. 회신 10-0207 해석례 참조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한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은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이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신축·증축등을 위한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야 하지만(제11조, 제14조, 제22조 및 제38조제1항제1호),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에서는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었고(구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해당 건축물은 기재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다는 점(구 「건축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적법한 건축물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건축물이 적법한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을 할 때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 주택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주택의 신축·증축 등을 위한 허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등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방부장관등은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끝.

회신 : 법제처 16-0283 (2016. 9. 7.)

## 55. 「군인복지기본법」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이하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라 함. 이 경우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말함)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 【이 유】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전단),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후단).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의 매각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임.

먼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는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를 일반인보다 특별하게 취급하여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수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서<sup>74)</sup>, 일반재산의 매각 시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은 종전 국방·군사

74) 법제처 2015. 1. 9. 회신 14-0779 해석례 참조

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용도 및 매각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즉,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의 취지 및 문언을 종합하면,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방식에 의하고, 그 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특정 사업시행자로 한정되는 등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는 등,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중 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명문의 근거도 없으므로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국방부장관이 무주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되어,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의 우선매각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었는바<sup>75)</sup>, 당초 법안의 취지는 주택사업자를 우선 지정한 후 그 사업자에게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우선매각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의 원래 입법 의도는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75) 「군인복지기본법안」(2007. 6. 29. 김명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6924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끝.

회신 : 법제처 17-0022 (2017. 2. 24.)

## 56. 군 공중전화 미 철수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 【질의요지】

공중전화 미 철수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 여부

### 【답 변】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국방부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중전화 미 철수에 따른 국방부의 손해가 특정·증명되어야 하며 그 외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이 유】

국방부는 군 공중전화 사업자 관련, 기존의 장성급 지휘관 승인 하 선정 방식을 10개 계약주체부대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협약기업은 사업자로 미 선정 시 기존 설치된 군 공중전화 및 부스를 계약 완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철수하기로 협약하였음. 그런데 00000의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최근까지 계속 군 공중전화를 운영하며 이득을 취하여 왔는바, 이에 국방부가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함.

####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계약 위반 등의 법익 침해, 손해의 발생, 침해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위법성, 책임능력 등임.

본 사안에 있어 국방부와 OOOOO 간 체결된 협약서는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존 설치된 공중전화 및 부스의 철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약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권리·의무가 도출되는 문서로 볼 수 있음<sup>76)</sup>.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것은 침해행위로 볼 수 있고 위법성, 책임능력 등도 인정되는 데 큰 무리가 없음.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요건이 자신에게 직접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바, 본 사안에서 국방부가 OOOO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함. 그런데 군 공중전화 사업은 10개 계약주체부대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군 부대안에 공중전화를 설치, 저렴한 가격에 병사들에게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해당 사업자가 국방부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선정된 사업자 입장에서는 OOOOO의 공중전화로 인해 자사의 공중전화 이용률이 하락한 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손해를 특정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sup>77)</sup>.

즉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OOOOO가 공중전화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인해 국방부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바<sup>78)</sup>, 이 증명이 충분치 않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이 어려울 수 있음<sup>79)</sup>.

##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권원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76) 만약 본 협약에서 구체적 권리·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국방부의 허락 없이 공중전화를 운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

77) 물론 OOOOO가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만큼 이 상당액을 손해로 특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처분이 가능한 만큼 군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없을 것임.

7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측에서 주장·증명해야 함

79)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면에서 동일함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법리임. 이는 재화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임.

본 사안에서 OOOOO가 무단으로 공중전화를 운영한 것은 법률상 권원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만약 이러한 OOOOO의 행위로 인해 국방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데, 이 때 반환할 이익에 대해 판례는 차액설을 취하고 있음. 즉, 부당이득의 원인사실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재산의 총액에서 그 원인사실이 있는 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의 총액을 뺀 차액을 반환대상으로 보는 것임.

그런데 본 사안에서 OOOOO가 공중전화를 철수하였을 경우의 국방부 재산 총액과 미 철수에 따른 현재의 재산 총액에 차이가 있는지는 다소 의문임.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국방부가 별도의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 이상<sup>80)</sup>, 국방부에 차액설에 따른 반환 대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결국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국방부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차액설에 따를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를 특정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임.

### 3. 국유재산법 상 변상금 처분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본 사안에서 OOOOO는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점유하여 공중전화를 운용한 것이므로 「국유

---

80) 예를 들어 만약 국방부가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공중전화 이용률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OOOOO의 미 철수로 인해 다른 사업자의 공중전화 이용률이 하락하여 결국 국방부의 수수료 수입도 감소하였을 것이므로 이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임.

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sup>81)</sup> 끝.

질의 : 정보화기반체계담당관-345 (2017. 3. 27.)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329 (2017. 4. 12.)

---

81) 다만 국방부는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군 공중전화 설치 및 운용 지시」를 근거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음

## 5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판단시 적용 법조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16에 근거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 시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하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은 ‘국방사업법’,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법」은 ‘군사시설보호법’이라 함.

### 【답 변】

항공기지안의 사업이 아닌 일반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경우라도 위 사업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에 해당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16 다목을 적용하여야 함.

### 【이 유】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16호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정하고 있는 바, 같은 표 제16호 가목에서는 ‘국방사업법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인 것’으로, 나목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이상인 것’으로, 다목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을 살펴보면 국방사업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이란 군사작전, 전투준비에 필요한 시설 외에 군인의 주거·복지 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도 포함하고 있고, 나목의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에 위한 장애물 등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전투진지와 같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가목과 다목에 중복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을, 항공기지에 대해서는 나, 다목을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라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됨.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같은 표 나, 다목에서 ‘해군기지는 제외한다’는 것은 해군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지에는 나, 다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같은표 나, 다목을 항공기지에서 수행되는 사업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축소 해석할 수 없는 점, 방공기지 또는 기타 군사기지에서 행하는 사업의 경우를 항공기지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 국방·군사시설의 경우는 가목을 항공기지의 경우는 나, 다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그러므로 항공기지의 사업이 아닌 일반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경우라도 위 사업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에 해당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16 다목을 적용하여야 함.

#### ■ 법령 개정 권고

국방사업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은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군방·군사시설의 정의를 달리 규정해 놓은 것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위 법을 인용하고 있어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의 경우는 같은 표 가목과 다목에 중복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끝.

질의 : 환경팀-1608 (2017. 5. 10.)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4201 (2017. 5. 17.)

## 5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5항의 재협의 요청 관련

###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동법 제10조 제2항의 사유로 재협의 요청시 재협의 주관기관이 국방부장관인지 여부

### 【답 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해석과 관련하여 제10조제2항의 재협의 대상은 직근 상급기관을 의미함.

### 【이 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9. 4. 23. 2006다81035 참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재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협의 대상자는 직근 상급기관을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동법 제10조제5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재협의 대상은 국방부장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0조제2항의 재협의 대상은 직근 상급기관을 의미함. 끝.

질의 : 시설제도기술과-2095 (2017. 5. 2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4528 (2017. 5. 30.)

## 59. 국방규격 관련 업무 주체

### 【질의요지】

1. 육군 주관으로 연구개발한 전력지원체계 품목 중 중앙조달을 하는 품목의 국방규격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2. 육군 주관으로 연구개발한 전력지원체계 품목 중 중앙조달을 하는 품목에 대한 형상변경관리책임기관이 누구인지 여부
3. 상위법에서 세부절차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방위사업청 훈령을 근거로 타 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답 변】

1. 국방규격 관리에 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이외의 것은 모두 방위사업청장이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육군 주관으로 연구개발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중앙조달 품목의 경우 국방규격 관리 주체는 방위사업청장이라고 해석됨.
2. 군수품의 형상관리 주체에 관한 동법 및 시행령을 살펴보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2조에 제1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이므로 육군 주관으로 연구개발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형상관리 주체는 방위사업청장임.
3. 상위법에서 세부절차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위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훈령을 근거로 타 기관에 업무를 위임할 수 없음.

### 【이 유】

▣ 질의 1에 관하여

국방규격의 관리 주체에 관한 「방위사업법」(이하 ‘동법’이라 함) 및 시행령을 살펴보면 동법 제26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조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 군으로 하여금 규격을 제정하게 할 수 있음.

이를 종합해보면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에 대한 종합적인 표준화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다만 각 군이 국방규격 관리에 관해 방위사업청장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있는 범위는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조달되는 품목뿐임.

즉 국방규격 관리에 관해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이외의 것은 모두 방위사업청장이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육군 주관으로 연구개발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중앙조달 품목의 경우 국방규격 관리 주체는 방위사업청장이라고 해석됨.

## ■ 질의 2에 관하여

군수품의 형상관리 주체에 관한 동법 및 시행령을 살펴보면 동법 제32조에 제1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형상관리 및 형상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형상관리 중 일부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인 동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형상관리의 주체는 방위사업청장인 점, 동법 제61조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각 군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형상관리 중 일부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군수품 형상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 군이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 질의 3에 관하여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는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 맡기고 이를 받은 수임자·수탁자가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를 두어야 함.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을 종합해보면 국방규격 및 형상관리에 관한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상위법에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는 한 권한을 위임하기 어렵고, 만약 정책적으로 방위사업청장 권한의 일부를 각 군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법률에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끝.

질의 : 물자관리과-2189 (2017. 5. 1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5108 (2017. 6. 19.)

## 60. 비행안전 제1구역의 군사시설 설치 승인권자

###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행안전 제1구역 내 군사시설 설치 승인권자에 대한 질의

### 【답 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행안전 제1구역 내 군사시설 설치 승인권자는 관할부대장임.

### 【이 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비행안전 제1구역 내 군사시설 설치 승인권자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어 위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검토가 필요함.

동법의 구조를 보면 동법 제4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있는 점, 동법 제8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 지정사실을 고시할 의무가 있고, 관할부대장은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 등의 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점, 동법 제9조에서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된 행위 중 관할부대장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가 가능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를 종합하면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등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등의 권한이 있고, 관할부대장은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심사·허용 등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동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서 비행안전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곳에 설치되는 도로를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행위금지범위 내에서 제외시키는 권한을 관할부대장에게 부여하였고, 동법 제10조제4항에서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 시설물의 설치 허용 권한을 관할부대장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때 비행안전 제1구역안에서 시설물 등의 설치 허용 또는 금지 권한은 관할부대장이 갖는 것으로 보여짐.

이를 종합해보면 동법의 체계적 해석상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의 군사시설 설치 승인권자는 관할부대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끝.

질의 : 해군 법제과-1923 (2017. 6. 5.)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075 (2017. 7. 18.)

##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

###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의 일정 구역의 지표면을 동법 시행령 별표5 2항에서 규정한 지표면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경우도 동법 시행령 별표 제5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함.

### 【이 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0조에서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동법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명시하고 있는데, 별표 5의 제2항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에서 동법 제10조제2항에 대해서 별표5 제2항의 지표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법 제10조제2항의 경우도 동법 시행령 별표5 제2항의 지표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동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제1항 제2호는 비행안전구역에서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동법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의 금지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고, 동법 제5항은 제1항 제2호 금지행위에 대해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 건축 등을 관할부대장이 허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우선 동법 제10조에서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에서 제6구역까지의 건축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인데 같은 구역 안에서의 지표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법 제10조 제2항의 경우도 동법 시행령 별표 제5의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5를 동법 제1항 및 제5항에만 적용한다면 동법 제2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할 지표면 기준이 없는 점, 같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해서 같은 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허용행위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인 건축물의 지표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동법 제10조 제2항에 대해서도 동법 시행령 별표5 2항에도 적용하여야 함. 끝.

질의 : 시설제도기술과-3064 (2017. 8. 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911 (2017. 8. 16.)

## 6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질의요지】

국·근지단 공사계약 후 발주처의 사업취소로 착공 전 계약해제(지)시 전체공사완성을 위해 업체에서 이미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전체공사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급할 수 있음.

### 【이 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이하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라 한다)는 정부조달계약의 공적 특수성에 비추어 발주기관인 국가 측에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것임.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는 ①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②내용상 (가)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나)손해배상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673조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sup>82)</sup>과 구별됨.

그러나 손해배상의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해 당사자 일방에게 사정변경에 기한 해제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배상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

82) ①일이 완성되기 전 사유를 불문하고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되 ②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

그렇다면, 전체공사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①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 지급하고, ②제2호에 포섭할 수 없는 비용은 「민법」 제673조를 유추적용<sup>83)</sup> 또는 합의에 의해 배상할 수 있음. 끝.

질의 : 국방부근무지원단 시설운영과-3769 (2017. 8. 2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7146 (2017. 8. 24.)

---

83) 다만, 민법 제673조에 손해배상의 범위(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다면 얻었을 이익)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 63. 통신지원업체 행사장소 제공여부

### 【질의요지】

국방대 영외복지관 앞 공터에 한시적(7. 1. ~ 8. 31.)으로 통신지원업체 행사장소 제공 시, 「국유재산법」 상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국방대 영외복지관 앞 공터는 국유지이자 행정재산이므로, 통신지원업체의 해당부지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부대에서 장소사용을 승인한 것과는 별개로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허가를 허가권자인 충청시설단을 통하여 받아야 함.

### 【이 유】

#### 1. 「국유재산법」 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인지 여부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함(「국유재산법」 제2조 제7호). 즉, 사용허가 대상인 재산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어야 함. ‘행정재산’은 국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임. 사안의 영외복지관 인근 공터는 국방대학교 운영 및 소속 공무원들의 거주환경 조성이라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인바, 국유지인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 이외의 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허가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관계를 강학상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 하며, 국유재산을 통해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

시키는 기능을 함.

## 2. 영외복지관 인근 공터의 사용허가권자 및 사용허가의 방법

사용허가권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으며(「국유재산법」 제30조),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음(「국유재산법」 제29조).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경쟁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도 가능함(「국유재산법」 제31조).

결국 사안의 경우, 국유지인 영외복지관 인근 공터를 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인 충청시설단(국방시설본부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관리 위탁을 받은)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부대인 국방대학교의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위 「국유재산법」 상 사용허가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3. 결 론

국방대 영외복지관 앞 공터는 국유지이자 행정재산이므로, 사용부대에서 장소사용을 승인한 것과는 별개로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허가를 허가권자인 충청시설단으로부터 받아야 함. 끝.

질의 : 국방대학교 감찰실-1558 (2017. 8. 2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7831 (2017. 9. 15.)

# 제 7 장 재정 및 예산회계



## 64. 국가채권을 공시송달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 【질의요지】

국가채권을 공시송달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 여부

### 【답 변】

법령에 따라 국가가 납입의 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행한 경우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 해당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 【이 유】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를 때 여기서의 “법령”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한편 「국고금관리법」과 동 시행령에서는 납입의 고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은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sup>84)</sup>. 또한 「민법」 제113조에서도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며 구체적 내용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판례 또한 공시송달에 의한 시효중단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바<sup>85)86)</sup>,

84)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납입의 고지는 서면, 말, 공고, 전자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은 서면에 의한 고지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도 납입의 고지로 인정될 것임.

85) 예산회계법 제73조(현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과 동일)에 의하면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변상관정에 의한 변상금 채권의

이를 종합할 때 법령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가 납입의 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행한 경우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 해당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끝.

질의 : 국군재정관리단 법무실-1700 (2015. 10. 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0053 (2015. 11. 24.)

---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민사상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상책임자가 소재 불명이 된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는 민법 제113조에 정하여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방법이나, 감사원법 제31조 제4항,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정하여진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변상책임자에 대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상책임자가 소재불명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변상판정에 의한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본 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494 판결).

- 86)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채납된 경우에 있어서 인정되고 있는 부수적인 의무인 만큼 그 발생, 소멸에 있어서 부종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1983. 1. 17.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전농에 대하여 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 도합 36,095,046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되어 같은 해 2. 11. 국세기본법 11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그에 대한 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조세 부과권 역시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1985. 5. 9. 선고 84구1137 판결).

## 65. 분할납품계약에서 지체상금 산출 여부 및 기준

### 【질의요지】

분할납품계약에서 1차 납기일에 일부 물품의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산출 여부 및 기준

### 【답 변】

1차 납기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며, 만약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검수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 유】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함) 제74조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을 지체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계약이행완료 시 징수하는 것이므로, 분할납품이 허용된 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지체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된 시점별로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특수조건에 분할물품의 별도 납기일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징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sup>87)</sup>.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87) 기획재정부 유권해석(회계제도과-1153, 2007. 6. 19.)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함.

이를 종합할 때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분할물품의 별도 납기일이 설정된 본 사안의 경우 1차 납기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며, 만약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검수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끝.

질의 : 국방지형정보단 계획운영과-5399 (2016. 10. 3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8702 (2016. 11. 10.)

## 66. 용역계약에 있어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가부

### 【질의요지】

홍보 용역계약에 있어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가부 및 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

### 【답 변】

기 지급된 선금금, 가압류 등 집행 보전된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계약해지 시에는 기존에 수행 완료된 과제에 대한 확정 및 정산이 필요할 것임.

### 【이 유】

본 사안은 국방부가 OOOOO와 ‘2016 국방부 종합기획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OOOOO가 이를 여러 협력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발주자(국방부)-원사업자(OOOOO)-수급사업자(협력업체)’의 구조임. 즉 본 사안에서 계약 관계는 국방부와 OOOOO, OOOOO와 협력업체 간에 존재하고, 국방부와 협력업체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없음.

따라서 국방부는 이미 OOOOO가 계약을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OOOOO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함)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바, 본 사안에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할 경우<sup>88)</sup> 이에

88) 이를 위해서는 본 사안이 하도급거래(하도급법 제2조제1항 참조)에 해당하고, OOOOO가 원사업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1. 국방부가 OOOOO에 기 지급한 선급금(70%) 관련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가능한 4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것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 것임. 즉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이러한 채무들은 소멸하고, 이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직접지급채무로 바뀌는 것임.<sup>89)</sup> 그러므로 만약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임. 특히 하도급법 제14조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사안에 이를 대입하면 국방부가 OOOOO에게 선급금으로 이미 지급한 부분에 한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임.

---

속해야 함(하도급법 제2조제2항 참조). 또한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자이거나(OOOOO가 중소기업자가 아닐 경우), 중소기업자이면서 OOOOO보다 매출액이 적어야 함(OOOOO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일 경우)

89) 판례 또한 유사 사안에서,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는 입장임(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 2. 선급금 외의 나머지 대금(30%) 관련

한편 국방부가 00000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14조 적용 여지가 있음. 다만 본 사안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 00000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하였는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가압류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판례에 따르면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되지 않음(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따라서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임.(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이 경우 ‘직접 지급사유 발생’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것인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고 함) 제9조제1항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직접 지급사유 발생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법 제14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는 달리 동항 제2호는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해 합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동항 제2호에 근거할 경우 '3자간 합의한 때'를 곧 직접 지급사유 발생 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판례는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이 있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sup>90)</sup>. 또한 만약 3자간 합의를 공사 시행 및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는 취지로 본다면 이는 채권양도에 해당하므로,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결국 이러한 판례의 태도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이라고 하여 제2호의 사유와 나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취지를 종합할 때,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직접 지급사유 발생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

90) 또한 동 판결에서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 직접 지불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함

종합하면 국방부가 OOOOO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14조 적용 여지가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보다 먼저 OOOOO의 채권자가 가압류 등의 집행 보전을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3. 국방부와 OOOOO의 계약 해지 관련

해지는 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민법」 제550조) 해지 시점까지 진행된 부분은 유효함. 따라서 국방부와 OOOOO의 계약이 해지된다면 지금까지 수행 완료된 과제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정산절차 등이 필요할 것임. 또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551조), 계약의 해지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일방은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끝.

질의 : 정책홍보담당관-4323 (2016. 12. 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9769 (2016. 12. 9.)

## 67.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 【질의요지】

원가담당 및 계약담당 실무자 등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제12조제3호를 둔 취지를 고려할 때 원가담당 및 계약담당 실무자 등도 제12조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아 국방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보증 설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석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해당 조문을 정비해야 할 것임.

### 【이 유】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국방부는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고 함)을 통해 이를 정하고 있음.

훈령 제12조를 보면 본문에서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하며 제1호부터 제3호를 두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수입징수관 등을, 제2호에서는 물품관리관 등을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명시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국방부, 국방직할기관 또는 부대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훈령 제12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인데, 제3호에서 ‘제1호부터 제2호에 명시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만약 본문의 ‘회계관계공무원’과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이 동일한 의미라면 제3호에 의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포섭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게 됨. 즉 이 경우 제3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될 것임.

따라서 굳이 제3호를 둔 취지<sup>91)</sup>를 추정할 때 훈령 제12조 본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훈령이 적용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의미하고,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실제 회계업무와 관계된 공무원 등 본문의 ‘회계관계공무원’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타 입법례<sup>92)</sup>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조자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들 중 국방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본문의 ‘회계관계공무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는 훈령 제12조제3호를 둔 취지 등을 추정하여 해석한 결과이므로 향후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해당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훈령 소관부서에서는 제12조 본문의 ‘회계관계공무원’과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이 동일한 의미라면 제3호를 삭제하고, 다른 의미라면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른 용어<sup>93)</sup>로 대체하는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임. 끝.

질의 : 재정회계담당관-583 (2017. 1. 13.)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192 (2017. 2. 6.)

9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훈령이 「기획재정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임. 참고로 이 기획재정부 훈령 제2조 역시 ‘회계관계공무원’이라는 단어를 본문과 제2호에서 반복 사용하고 있음

9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등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에서도 조달청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93) 예를 들어 ‘공무원’,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직원’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68. 용역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 여부

### 【질의요지】

정보체계 개발사업(용역계약)에 있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다양한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마다 사업의 목적 및 취지, 별도 특약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이 유】

먼저 질의내용 중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명칭이 특정되지 않고 있으나,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및 제34조(적용 범위)’로 유추하여 볼 때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33조 및 제34조는 선금<sup>94)</sup>에 대한 것이므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이하 “기성부분 등”이라고 함)에 대한 대가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94)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대가지급시기 도래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정부조달계약의 원활하고 안정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기성부분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함<sup>95)</su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 즉 기성부분 등을 검사를 거쳐 인수하였다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도 대가 지급이 가능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중앙관서의 장 등은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는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5항) 다양한 예외 사유가 존재함. 또한 계약 당사자 간에 대가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별도의 특약이나 특수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정리하면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등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다양한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마다 사업의 목적 및 취지, 별도 특약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끝.

질의 : 정보화기획담당관-3182 (2017. 9. 1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8486 (2017. 10. 12.)

---

95) 그 밖에 기성부분 등에 대한 대가 지급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4항)



# 제 8 장 기타



## 69.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검토

### 【질의요지】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제안서 제출 업체의 자문위원인 경우, 이미 실시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술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 【이 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실시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방 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2조는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위원회의 평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제안서 제출 기관의 자문위원인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은, 위 훈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술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질의 :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736 (2016. 3. 2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912 (2016. 3. 23.)

## 70. 서해 5개 도서의 관할권 문제

### 【질의요지】

1.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나목에 규정된 서북 5개 도서에 대한 ‘군사통제’의 의미와 UNC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2. 정전협정 제2조 제15항에 따른 서북 5개 도서 연해수역(3해리)에 대한 UNC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3. 정전협정 체계상 UNC에서 관할하는 책임지역의 범위 및 그와 관련된 권한의 범위

### 【답 변】

1.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도서군(이하 ‘서북도서군’이라 함)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military control)란 정전협정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군사역량 등의 철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군사통제의 실제적 내용은 군정(軍政)의 개념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교전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됨. 또한 군사통제의 개념을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엔군사령관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대한 권한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도 없음.
2. 정전협정에는 서해 5개 도서 연해수역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서해 5개 도서 연해수역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서해 5개 도서 연해수역에는 유엔군사령관이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이 존재하며,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정전협정 전체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전협정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엔군사령관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남북간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연평도 근해에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상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는 인공어초 설치 과정에서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3. 정전협정상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관한 책임을 짐.

## 【이 유】

1.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ㄴ목에 규정된 서북 5개 도서에 대한 ‘군사통제’의 의미와 UNC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함) 제2조 제13항 ㄴ목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military control)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라고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음 문장에서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military control)하에 남겨 둔다.”라고 규정함. 이러한 정전협정의 명문 규정에 의할 때, 서북도서군은 물론 한국 서해안의 섬들 중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있게 되는 것임.

서북도서군에 대하여 정전협정에 표현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군사통제의 통상적 의미를 바탕으로 정전협정의 문맥 및 정전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함. 또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서북도서에 대한 후속적 관행도 군사통제의 의미를 밝힘에 있어서 살펴보아야 함.

### 1) 군사통제(military control)의 통상적 의미

정전협정은 군사통제(military control)의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미국 국방부의 군사용어사전<sup>96)</sup>에도 군사통제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지 않음. 옥스퍼드 사전<sup>97)</sup>에서도 군사통제의 개념을 찾을 수 없음. 다만, 웹스터 사전에서는 군사통제의 개념을 “외국 군대에 의한 어느 한 국가에 대한 통제 (the control of a country by military forces of a foreign power)”로 소개하고 있음.<sup>98)</sup> 그러나 군사통제의 의미를 밝힘에 있어 기준이 되는 통상적 의미란 반드시 순수하게 사전적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의 전체 상황 속에서 합리적으로 표시되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음에서 검토할 정전협정의 대상과 목적, 문맥, 후속적 관행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함.

### 2) 정전협정의 대상과 목적

정전협정의 대상과 목적은 그 서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정전협정은 그 서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정전협정의 조건과 규정들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됨.

### 3) 정전협정상의 문맥

서북도서군에 대한 군사통제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의 전

96) Joint Publication 1-02,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8 November 2010(As Amended Through 15 February 2016) 참조.

97) www.oxforddictionaries.com 참조.

98) www.webster-dictionary.org 참조

내용이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특정 부분만을 떼어서 독립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됨.

우선 서북도서군에 대한 군사통제는 정전협정의 체계상 제2조의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제13항 ㄴ목은 정전협정의 효력발생 후 적대 상대방 영역에서의 후방, 연해섬들, 해면으로부터 군사역량 등의 철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북도서군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는 군사역량 등의 철거의 예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이해됨. 즉 정전협정 제13항 ㄴ목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십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섬들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여기에서의 연해섬들(coastal islands)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음. 이렇듯 해당 조항은 군사역량 등의 철거와 그 부연설명을 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의 핵심 규정인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제13항 ㄴ목 4문).”라는 내용을 위치시키고 있는 것임. 그렇다면 이 규정은 군사역량 등의 철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군사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군사통제의 실제적 내용은 군정(軍政)의 개념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교전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됨.

군사통제라는 용어는 서북도서군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의 여러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위 문구의 바로 다음에 등장함. 즉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제13항 ㄴ목 5문).”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인바, 여기서의 군사통제 대상은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의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임. 여기서의 군사통제의 개념도 군사역량 등의 철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해당 섬들이 교전 쌍방 중 공산측이 아닌 유엔군사령관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만약 서북도서군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를 군정(軍政)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논리적으로 한국 서해안에 있는 상기 경계선 이남의 모든 섬들도 유엔군사령관의 군정(軍政)의 대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정전협정의 목적을 벗어남은 물론 현실과도 맞지 않는 것임.

다음으로 정전협정상 서북도서군에 대한 규율을 비무장지대에 대한 규율과 비교해 볼 때, 서북도서군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내지 책임과 차이가 있으며, 양자를 동일시하는 해석을 할 수는 없음.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을 확정함과 아울러 쌍방의 적대행위를 정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는바(제1조 제1항),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responsibility)지며,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짐(제1조 제10항). 이러한 명시적 규정과 달리 정전협정은 서북도서군에 대하여는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military control)하에 남겨둔다고만 하고 있을 뿐이며, 군인 또는 민간인의 출입 통제라든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관한 책임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음. 이렇듯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에 대한 규율과는 달리 서북도서군에 대하여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내지 책임에 대해 별다른 규율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북도서군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비무장지대에 대한 그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음.

#### 4) 후속적 관행

정전협정 제1조 제8항은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또한 정전협정 제10항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며, 유엔사규정 551-4 「한국 정전협정 준수」3-5에 의하면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모든 건축 및 보수 작업을 포함한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 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으며, 비무장지대 내 모든 건축활동은 유엔군사령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인권자의 명백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규율은 서북도서에 전혀 적용되지 않음. 즉 서북도서에 출입함에 있어서 유엔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을 것이 요구되지도 않으며, 서북도서에서 건축활동을 함에 있어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음. 현재 건축행정을 포함한 행정 일반은 웅진군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정전협정 체결 후의 이러한 후속적 관행은 유엔군사령관이 서북도서군에 대하여 행하는 군사통제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요소로 작용함.

#### 5) 검토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서북도서군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military control)의 의미는 정전협정의 문맥을 비롯하여 정전협정의 목적과 대상에 비추어 그 통상적 의미를 파악해 볼 때 군사역량 등의 철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군사통제의 실체적 내용은 군정(軍政)의 개념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교전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됨. 또한 서북도서군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엔군사령관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대한 권한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도 없음.

2. 정전협정 제2조 제15항에 따른 서해 5개 도서 연해수역(3해리)에 대한 UNC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ㄴ목은 서해 5개 도서와 관련하여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서해 5개 도서의 연해수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더 나아가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서해 5개 도서 연해수역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음.

한편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연해수역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인하여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같이 쌍방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였고,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은 1953년 8월 30일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 아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하여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하였음. 북방한계선 설정은 서해상에서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음.<sup>99)</sup>

정전협정에는 서해 5개 도서의 연해수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위와 같이 서해 5개 도서 연해수역에는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북방한계선이 존재하며, 이러한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의 목적인 남북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그러한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99)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개정증보판, 2007, 8면.

한편 정전협정 제2조 제17항은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 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 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함.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호상 적극 협력하여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엔군 사령관에게는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서해 5개 도서 연해수역에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북방한계선은 정전체제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유엔군 사령관은 북방한계선 인근에서의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임.

연평도 근해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상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는 인공어초 설치와 이로 인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즉 연평도 근해에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것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조성, 더 나아가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유엔군사령관에게 대하여 정전협정상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연평도 근해에는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북방한계선이 존재하는바, 만약 인공어초 설치 지역이 북방한계선에 매우 근접하고, 아축 해군전력 일부가 인공어초 설치 지역 인근에 대기중이었으며, 아축의 인공어초 설치 사실을 북측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유엔군사령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오관에 따른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전협정 준수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이 남북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유엔군사령관의 이러한

책임과 권한은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목적과 한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이것이 서북도서군에 대한 군정(軍政) 권한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님. 서북도서 연해수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함에 있어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간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 3. 정전협정 체계상 UNC에서 관할하는 책임지역의 범위 및 그와 관련된 권한의 범위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은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정한 규칙인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 사항」 제4조는 “정전협정 중 군사분계선을 확정함에 관한 규정과 제9항, 제10항 및 제13항 ㄱ목에서 사민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각항 규정을 제외하고 비무장지대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은 모두 한강 하구 수역에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함.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음. 끝.

질의 : 북한정책과-2232 (2016. 7. 3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5844 (2016. 8. 9.)

## 71.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

### 【질의요지】

국방산업 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국방산업 혁신펀드의 구조, 관련 법령, 타 정부부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투자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이 유】

‘국방산업 혁신펀드’(이하 ‘국방펀드’라고 함)란 국방관련 벤처 및 중소기업(기술)에 투자하여 국방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안보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정책펀드로서, (주)OOOOO가 운용하는 모태펀드<sup>100)</sup>를 활용하여 조성될 예정임. 즉 국방부가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모태펀드는 이 자금과 민간투자금을 합쳐 국방관련 벤처 및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임.

한편 국가 자금이 투입된 연구개발에 있어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규정을 보면<sup>101)</sup>,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계약에 따라 국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0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8개 정부부처로부터 출자를 받아 '05년 7월에 결성된 대표적인 정책펀드로서, '16년 10월 기준 약 2조 4,212억원 규모로 운용중임

101) 방위사업법 제31조의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등

그런데 연구개발은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특정 국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인 반면, 국방펀드는 국방 관련 벤처 및 중소기업 진흥을 통한 민·군 상호 가치창출 체계 구축 및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임. 또한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은 오직 해당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쓰이는 반면, 국방펀드를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해당 기업의 운영 자금으로도 쓰이는 등 그 활용 폭이 넓고 제한이 없음. 즉 국가가 연구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국방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그 개념이 상이하므로, 연구개발의 예를 국방펀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임.

물론 국방펀드에 있어서도 국방부, 모태펀드, 기업 등의 합의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국가 소유가 가능할 수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것은 아님. 그러나 국방펀드는 국가가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펀드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 점, 모태펀드는 국방부의 투자 자금 뿐 아니라 민간 자금까지 합쳐 기업에 투자하는 점, 국가 자금이 투입된 연구개발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을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점, 투자를 통해 취득하게 될 주식에 해당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 모태펀드에 투자 중인 타 정부부처에서도 지식재산권을 국가 소유로 한 전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연구개발에 민간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국가 소유로 한다면 민간 투자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펀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은 여러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음. 끝.

질의 : 개념기획팀-490 (2017. 2. 2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2239 (2017. 3. 13.)

## 7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보상

### 【질의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보상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보상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포함되지 않음.

### 【이 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데 대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 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임.<sup>102)</sup>

사안의 경우 군인이 훈련 중 신체장해가 없는 상해를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군병원을 통하여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던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임.

102) 대법원 1997.2.14. 선고 96다28066 판결

그러나,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받는 것은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 및 국가로 하여금 군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군인들의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군인들에 대한 의료권보장 목적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임.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보상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포함되지 않음.

더불어 구체적으로 진료비 상당의 금전적 손해나 정신적손해가 발생하여 국가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배상심의과정에서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끝.

질의 : 해군본부 해양법제과-593 (2017. 3. 3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007 (2017. 4. 4.)

## 73. 동시이행 판결 선고사안에서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의 법률관계

### 【질의요지】

동시이행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상대방이 군용총포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 【답 변】

공탁을 하거나 적법한 방법의 이행 제공을 통해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본 사안은 국가와 민간사업자가 군용총포 납품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합의 해제 하였는데, 이후 군용총포 인도 및 대금 반환 간에 동시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임. 그런데 군용총포 소지 관련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군용총포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법률관계를 살펴보기로 함.

#### 1. 본 사안이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르면, 군용총포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과 감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사안의 민간사업자는 과거 수입 허가를 받아 본 군용총포를 납품하였으나 해당 수입 허가가 '13. 3.부로 만료되어 현재는 유효한 허가를 갖고 있지 않은 바, 이를 근거로 군용총포 인수가

이행불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방위사업청은 상기 군용총포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수출·양도·양수·폐기 허가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sup>103)</sup>, 법원 역시 민간사업자의 이행불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기 때문임<sup>104)</sup>.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군용총포 인수는 이행불능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민간사업자가 적법한 허가를 받아 이를 인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sup>105)</sup>.

## 2. 군용총포 인도 및 대금 반환 방안

### 1) 공 탁

민간사업자가 군용총포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공탁하여 군용총포 인도의무를 이행한다면 대금 반환 집행이 가능할 것임.

다만 공탁은 공탁적성이 있는 물건에 한해 가능한데 군용총포가 공탁적성이 있는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공탁법」 제3조는 공탁의 대상을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용총포가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필요할 경우 먼저 공탁소 등 실무기관에 군용총포 공탁 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이행의 제공을 통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소멸

현재는 법원에서 동시이행 판결이 확정되어 군용총포의 인도 없이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상기 판

103) 민간사업자 군용총포 소지 허가 범위 관련 법령질의에 대한 의견 제출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6765, 2015. 11. 30.)

104) 서울중앙지법 2015. 8. 26. 선고 2014나69251 판결

105) 계약해제 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물론,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 절차의 이행 역시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에서 법원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원고(국가)가 이 사건 물품을 강원도 속초 모 부대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민간사업자)에게 위 부대로 와서 물품을 수령할 것을 최고하고 있으나 보관장소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위 진술만으로 적법한 이행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의 제공이 당심 변론 종결시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

한편 판례에 따르면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sup>106)</sup>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sup>107)</sup>. 따라서 국가로서는 상기 군용총포의 보관장소를 정확히 특정하는 등 적법한 방법의 이행 제공을 계속하면서 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을 것임. 즉 적법한 이행을 계속하는 방법으로<sup>108)</sup> 후소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이에 기한 집행문을 통해 대금 반환을 위한 강제집행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정보사령부 법무실-302 (2017. 2. 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366 (2017. 4. 13.)

---

106) 이는 원칙적으로 사실자료에 그치는 것으로, 법률의 변경, 판례의 변경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음

10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등

108) 다만 현재 민간사업자는 「방위사업법」상 군용총포 관련 허가를 갖고 있지 않은 바, 허가를 취득하기 전까지 실제 군용총포의 현실인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74. 안보학 교수의 정년 보장

### 【질의요지】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의 안보학 교수(초빙교수)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년 60세 보장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 변】

대학교의 초빙교원인 안보학 교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60세 이상 정년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이 유】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정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의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함. 따라서,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년제도’ 자체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60세 이상 정년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대학교의 초빙교원은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위 법의 60세 이상 정년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끝.

질의 : 교육훈련정책과-1874 (2017. 4. 20.)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696 (2017. 4. 24.)

## 75. 국가보훈처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과거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병사로 근무하였던 자의 질병 감정의뢰 회신 결과를 국가보훈처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1. 보훈심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방부장관임
2. 질병 감정의뢰 회신결과를 국가보훈처에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 유】

#### ■ 질의 1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함) 제74조의8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보상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상 중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3항 후단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포함됨.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군인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을 ‘국방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군인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방부장관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질의 2에 관하여

질병 감정의뢰 회신결과(이하 ‘감정결과’라고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sup>109)</sup> 및 민감정보<sup>110)</sup>에 해당될 것임. 그리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sup>111)</sup>이므로, 국방부가 국가보훈처에 감정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나열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도 그 중 하나임. 한편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는데(제74조의5, 제74조의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에는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종합할 때 이 건 감정결과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비록 국가유공자법에 명시적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그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해야 하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의2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사무 등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

109)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110)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11)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민감정보 등을 제공받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타 부처 소관 법령은 우리 부에 해석 권한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국가유공자법은 각각 행정자치부와 국가보훈처 소관이므로, 필요할 경우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끝.

질의 : 국방부조사본부 법무실-97 (2017. 5. 1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4527 (2017. 5. 30.)

## 76. 평창올림픽 군 지원 가능여부 등 검토

### 【질의요지】

1.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간 軍 인원의 대테러·안전활동 지원가능여부
2.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간 軍 인원의 대테러·안전활동 안전임무 수행 시, 조직위에서 지급한 대회 유니폼을 착용하고 임무를 수행해도 현행 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 【답 변】

1.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軍은 단순한 행정·재정 협조 및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하는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대테러·안전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군인은 군복을 착용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조직위원회에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될 경우, 국방부장관과 조직위원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복제에 따른 제복을 착용할 수 있음

### 【이 유】

#### ■ 질의 1에 관하여

##### 1) 평창올림픽법 제6조 적용 검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평창올림픽법에 의거, 조직위원회는 국방부에 대하여 단순 행정·재정 협조 및 지원,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대테러·안전활동에 대하여는 평창올림픽법 제7조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 2) 평창올림픽법 제7조 적용 검토

평창올림픽법 제7조에 의거,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위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이 때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정원장이며, 위원은 치안, 경비,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됨(평창올림픽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안전대책 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조항은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부처간 공무원 파견 등 협조가 가능토록 한 조문임. 군인도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2조),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하는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대테러·안전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3)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특공대 출동요건

한편,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에 대하여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함)상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하여만 수행하는 건이 원칙이며,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그러므로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하는 軍 병력을 민간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

이처럼 軍의 대테러특공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등을 통한 軍의 독자적 대테러활동의 경우에는, 테러방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할 것임.

#### 4) 소결

軍은 단순한 행정·재정 협조 및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하는 대테러·안전 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대테러·안전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테러특공대 등 軍의 독자적 대테러활동에 대하여는 테러방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질의 2에 관하여

「군인복제령」에 의거, 군인은 군인은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이 원칙임(제3조). 다만 다른 기관에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그 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복제에 다른 제복을 착용할 수 있음(제7조). 그러므로 군인의 대회 유니폼 착용은 軍의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 끝.

질의 : 정책기획과-2461 (2017. 7. 1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5997 (2017. 7. 14.)

## 77.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위

### 【질의요지】

화생방방어연구소에서 생물학 임상시료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는지 여부

### 【답 변】

화생방방어연구소에서 임상시료 분석행위를 하는 것은 “화생방 무기의 검증·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법률상 가능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는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음.

### 【이 유】

대통령령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은 제2조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의 하나로 “화생방 무기의 검증·분석·피사찰 및 폐기지원에 관한 업무(제6호)”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화생방방어연구소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소속 기관으로서, 「화생방방어연구소 운영(지시-기획-1)」 제5조에 의하면, “화생방 작용제 식별, 분석, 검증 및 방호기술 연구”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화생방방어연구소가 화생방 무기의 검증·분석 등의 임무수행 차원에서 생물학 임상시료를 분석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함.

한편 일각에서는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화생방방어연구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임상시료 분석이 법률상 제한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화생방방어연구소에서 임상시료 등을 분석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화생방 무기의 검증·분석”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임상시료 분석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화생방방어연구소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임상시료 분석을 할 수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는 “법 제2조제1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열거되어 있는 기관들은 감염병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런데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위는 감염병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화생방 무기의 검증·분석” 임무 수행 차원에서 “화생방 작용제 식별, 분석, 검증 및 방호기술 연구” 등을 위한 것임. 따라서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위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화생방방어연구소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상시료 분석행위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화생방방어연구소에서 임상시료 분석행위를 하는 것은 “화생방 무기의 검증·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법률상 가능하며, 감염병예방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는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음. 끝.

질의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작전과-1307 (2017. 7. 7.)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263 (2017. 7. 21.)

## 78. 군수형자 작업분류

### 【질의요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의 ‘작업등급이 “양”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의 해석에 있어 작업등급 “양”의 충족 기간

### 【답 변】

작업등급이 “양”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작업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작업등급 “양”을 충족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이고, 가능한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음<sup>112)</sup>.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는 문언 자체가 ①작업등급이 “양”인 사람으로서 ②6개월 이상 계속해서 작업에 종사하고 ③작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④요건은 ①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해석

112) 법률 해석관련 판례 입장 : 대판 2009. 4. 23. 2006다81035

되므로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축소해석 내지 확대해석할 수 없음.

또한, ②요건을 전작업을 시작할 때(내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로 해석하면, 제77조 제3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작업등급 “우”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양”으로 승급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작업에 종사한 사람 중 작업성적이 우수하여야 함<sup>113)</sup>.

다만, 현 작업등급 승급 기간이 실제 운영에 비추어 너무 장기인 경우에는 이에 따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질의 : 국방부조사본부 법무실-158 (2017. 8. 1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7441 (2017. 9. 4.)

---

113) 작업성적 및 품행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7조 제3항에 따름.

## 79. 미송환 북한군 사체의 처리

### 【질의요지】

1. 서해에서 북한군 사체가 인양되었을 경우, 同 사체의 처리에 있어 적군 유해처리절차 관련 국방부 지침(북한정책과-794, '09. 3. 31.)에 따라 유해발굴 감식단에 적군묘지로 매장하라는 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2. 위에 따라 적군묘지에 매장할 경우 화장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1. 다양한 이유로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 사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 합의사항이 부재하므로 이는 정책적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문제로 보임
2. 직접 적용가능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보임

### 【이 유】

#### ▣ 질의 1에 관하여

정전협정 추가합의 20항은 “어느 일방이 자기 측 지역 내에서 상대방에 속하는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견한 경우에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비서장을 통하여 이러한 시체의 인도·인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인양된 북한군 사체는 이 합의에 따라 유엔사 군정위를 경유하여 북측으로 송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다양한 이유로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 사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 합의사항이 부재하므로 이는 정책적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문제로 보임.

한편 국방부 지침(북한정책과-794, '09. 3. 31.)인 '적군 유해 처리 절차'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적군 유해를 발굴하였을 때 그 처리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처럼 6·25전쟁과 무관하게 서해에서 인양된 북한군 사체에 대하여도 직접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음. 다만, 이 사안처럼 6·25전쟁과 무관한 북한군 사체를 발견했을 경우 그 처리방안 내지 규정을 정책적으로 마련함에 있어서 기존 '적군 유해 처리 절차'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질의 2에 관하여

인양된 북한군 사체를 적군묘지에 매장할 경우 화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직접 적용가능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보임.

한편 제네바 제1협약 제17조는 “시체는 위생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 및 사망자의 종교상 이유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해서는 아니된다. 화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증명서 또는 인증된 사망자 명부에 화장의 사정과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네바 제3협약 제120조는 사망한 포로에 대하여 “시체는 위생학상의 절대적인 이유나 사망자의 종교 또는 화장에 대한 본인의 명백한 희망에 따라서만 화장할 수 있다. 화장한 경우 포로의 사망증명서에 화장의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각각 시체를 화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들 제네바 협약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무력충돌 상황을 전제한 것이어서(제네바 제1협약

제2조, 제네바 제3협약 제2조) 본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북한군 사체의 화장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취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북한정책과-2466 (2017. 8. 3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7425 (2017. 9. 4.)



#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 총 목 차

[제1집 ~ 제32집]



## 차 례

1. 헌법, 행정법, 선거, 계엄 .....	247
2. 조직관계 .....	250
3. 인 사 .....	253
가. 계급 및 분과 .....	253
나. 위 탁 .....	254
다. 복무기간 .....	255
라. 정 년 .....	258
마. 임 용 .....	259
바. 초임계급 .....	260
사. 임 기 .....	261
아. 군인 복무 기본법, 겸직 .....	261
자. 진 급 .....	262
차. 진 역 .....	263
카. 제 적 .....	267
타. 복 적 .....	268
파. 휴 직 .....	268
하. 휴 가 .....	269
거. 위 임 .....	269
너. 잡 칙 .....	270
4. 징 계 .....	272
가. 성 질 .....	272
나. 사 유 .....	272
다. 종류·대상 .....	272
라. 징계권자 .....	273
마. 징계위원회 .....	273
바. 징계절차 .....	273

사. 징계의 효력 .....	273
아. 항 고 .....	274
자. 잡 칙 .....	274
<b>5. 군무원 인사 .....</b>	<b>275</b>
가. 임 용 .....	275
나.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 .....	276
다. 면 직 .....	277
라. 복 무 .....	277
마. 신분보장 .....	278
바. 징 계 .....	278
<b>6. 보 수 .....</b>	<b>279</b>
가. 보수 및 수당 .....	279
나. 보 칙 .....	282
다. 기 타 .....	283
<b>7. 병 역 .....</b>	<b>284</b>
가. 총 칙 .....	284
나. 징병검사 .....	286
다. 현역입영 .....	286
라. 소 집 .....	287
마. 병역의무의 종료 .....	289
바. 병역의무부과의 특례 .....	289
사.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290
아. 특 전 .....	291
자. 병무행정 .....	291
차. 벌 칙 .....	292
<b>8. 예비군 .....</b>	<b>293</b>
가. 임 무 .....	293
나. 조직과 편성 .....	293
다. 동 원 .....	294

라. 훈 련 .....	295
마. 소집통지서 .....	295
바. 무 장 .....	296
사. 원호 및 가료 .....	296
아. 직장보장 .....	296
자. 실비변상 .....	297
차. 병역법과의 관계 .....	297
카. 권한의 위임 .....	297
타. 벌 칙 .....	297
파. 기 타 .....	297
<b>9. 학생군사교육 .....</b>	<b>298</b>
<b>10. 연 금 .....</b>	<b>299</b>
가. 총 칙 .....	299
나. 급 여 .....	300
다. 퇴역연금 .....	301
라. 퇴직일시금 .....	301
마. 상이연금 .....	302
바. 유족급여 .....	302
사. 재해보상금 .....	303
아. 급여의 제한 .....	304
자. 기금의 조성 .....	305
차. 보 칙 .....	305
카. 기 타 .....	305
<b>11. 보 훈 .....</b>	<b>306</b>
가. 총 칙 .....	306
나. 대상 및 사유 .....	307
다. 급 여 .....	308
라. 기 타 .....	309

12. 국가배상 .....	310
가. 배상책임 .....	310
나. 배상기준 .....	311
다. 외국인에 대한 책임 .....	311
라. 절차(배상심의회) .....	311
마. 기 타 .....	312
13. 군용지취득 .....	312
가. 총 칙 .....	312
나. 목적물(제한) .....	313
다. 절차(원상회복) .....	314
라. 해 제 .....	315
마. 보 상 .....	315
바. 기 타 .....	317
14. 군 수 .....	318
15. 방위산업 .....	322
16. 재 정 .....	324
17. 예산회계 .....	325
18. 국유재산 .....	328
19. 군사시설보호 .....	333
20. 상 훈 .....	336
21. 국립묘지안장 .....	337
22. 형 사 .....	338
가. 군형법 .....	338
나. 군사법원법 .....	339
다. 기 타 .....	341
23. 민사관계 .....	342
24. 기 타 .....	345

## 1. 헌법, 행정법, 선거, 계엄

- 귀농선 북방에서의 민간인의 권리제한 ..... 1-1
- 현역무관 혼인규정 제정 ..... 1-3
- 율곡집행단장의 전결권 유무 ..... 15-73
- 국방정책 자문위원의 신분 ..... 15-91
- 국방부장관의 시체보전법 제6조의 권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 가부 ..... 3-31
- 국방부 조사대장의 신분증 발행권 ..... 5-15
-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아니한 소원의 처리 ..... 3-44
- 불가쟁력이 발생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3-45
- 소원의 재결범위 ..... 5-16
-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결정과 소원법에 의한 재결과의 효력관계 ..... 5-19
- 소원법상의 행정처분해당여부 ..... 14-106
- 개방제한구역의 토지에서 토석채취를 하고자 할 때 허가관청과의 합의  
여부 ..... 9-114
-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원법상 행정청인지 여부 ..... 15-299
- 군인으로서 송요찬씨 석방운동에 서명조인하는 행위가 군형법 및 선거법에의  
저촉여부 ..... 1-5
- 국회의원선거법 제28조의 입후보를 위한 사임의 효력 발생시기 ..... 1-7
- 부대영내에서의 선거연설 및 포스터 첨부행위의 적법성 ..... 1-9
- 현역군인의 선거위원 취임 ..... 1-9
- 국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요건 ..... 1-10
- 병의 국회의원 입후보등록 가능여부 ..... 10-91
- 제3자의 부재자 신고 등 ..... 4-27
- 계엄사령관의 작전지휘권 등 ..... 1-170
- 계엄령하에 있어서 지휘감독권 등 ..... 1-172
-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 등 ..... 1-174, 2-170
- 포고령의 시행시기 등 ..... 2-21
- 포고령 위반자의 법정형 ..... 2-169, 1-256, 1-257
- 계엄시 보안업무지침 제정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조정 ..... 16-157, 21-29
- 계엄법상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의 한계 및 내용 ..... 8-137

○ 계엄사령관의 근로동원 가능여부 .....	9-125
○ 전국계엄과 지역계엄의 한계 .....	13-141
○ 위수령에 의한 적용부대 범위 .....	13-14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관행정청의 의미 .....	16-15
○ 국방부장관의 행정대집행 가부 .....	16-16
○ 헌법 제76조 제2항의 “중대한 교정상태”의 의미 .....	18-11
○ 국방부장관이 ‘지휘서신’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 .....	19-24
○ 합동참모본부의 성격 .....	17-11
○ 합동참모본부가 창설된 것인지, 개편된 것인지 여부 .....	19-14
○ 합동참모본부가 각군의 직속상급기관인지 여부 .....	19-18
○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부 국·실에 협조문에 의한 문서발신이 가능한지 여부 .....	19-21
○ 합동참모본부의 훈령제정권 및 위임전결 가능성 .....	19-26
○ 작전통제권 인수와 휴전협정 .....	19-237
○ 독도경비대에 대한 군의 작전통제 .....	19-240
○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	17-12
○ 위임받아 한 행정처분의 재결청 .....	18-13
○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범규명령성 .....	19-31
○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적용대상 .....	21-20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연구원에 장관의 해외여행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9-11
○ 군용전기통신법상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위임 .....	19-13
○ 재향군인회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인지 여부 .....	18-15
○ 토지협매수시 군수의 보상불가통보가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 .....	19-9
○ 과건된 방위병에 대한 지휘·감독권 .....	18-87
○ 과건된 방위병에 대한 소속군부대의 업무활용 .....	18-89
○ 훈령과 지침의 효력관계 .....	18-16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의 취소 .....	17-13
○ 육군사관학교의 명예교수·명예졸업제도 .....	18-59
○ 군병원과 일반병원의 자매결연 .....	17-35

○ 군병원의 요양취급기관지정과 의료기관개설 .....	18-233
○ 무역대리점 등록업무의 민간단체위탁 .....	19-29
○ 재외공관주재 무관의 대외직명 사용 .....	21-3
○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한 재심청구와 집행정지 .....	21-5
○ 군무원의 정원조정시 경제기획원과의 협의여부 .....	21-7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제출할 서류’에 향후 수집할 자료도 포함되는지 여부 .....	22-1
○ 국방부산하기관의 국방부장관 적인 사용 가능 여부 .....	24-6
○ 국방정보본부 군사보안업무 처리시 협조문 발신 가능 여부 .....	24-8
○ 국방조달본부장이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1
○ 군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4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1조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 .....	26-3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36조제2항의 대외적 효력 .....	26-8
○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국방부공문서의 효력 .....	27-3
○ 직무대리의 권한 범위 .....	27-6
○ 통합방위법상 검문소 운용 .....	27-9
○ 나라사랑카드와 행정권한의 위임 .....	27-17
○ 합참대 지휘·감독권한의 위임 가부 .....	28-2
○ 국직부대에 대한 합참 전투지휘검열 가부 .....	28-4
○ 국군상비병력규모에 관한 국방개혁법의 해석 .....	28-6
○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 .....	28-9
○ 장관의 군정권한 일부 합참의장 부여 여부 .....	28-12
○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간 권한의 민간위탁 가부 .....	28-16
○ 국방부 감사실의 방위사업청 감사 가능여부 .....	28-18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	29-1
○ 국군포로 등록 거부가 기속재량인지 여부 .....	29-2
○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	30-6

## 2. 조직관계

- 해군병원에서의 군속의 치료의무 유무 ..... 1-13
- 폭동진압 ..... 2-15
- 중앙정보부가 국방부 예하 각 정보기관을 구속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29
- 부대 또는 기관설치권한 사항의 위임입법 ..... 3-53
- 군수근무단요원 선발 임명권한의 위임 ..... 15-74
- 전력증강위원회의 법적성격 및 기능 ..... 16-11
- 월남귀순용사 원호심사위원회의 성격 ..... 16-13
- 국방정보본부의 조직법상 성격 ..... 16-14
- 국방품질검사소 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3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 16-155
- 국방부와 합참 및 각군의 관계 ..... 20-3
- 국방부감사관실의 감사범위 ..... 20-5
- 국방부내 C3I 사업단 설치 ..... 20-8
-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검열권한 범위 ..... 20-10
- 합참의장의 인사협의권 ..... 20-58
- 비상대비훈련주관부서 ..... 20-12
- 대사관에의 현역과건근무 ..... 20-15
- 고속도로 건설시 군병력투입근거 ..... 20-17
- 군전공의 정원책정업무의 민간기관위탁 ..... 20-18
- 국방대학원장의 교수임용기간결정권 ..... 20-20
- 국방대학원 부원장의 지휘권 ..... 20-21
-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17-177
-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료 징수 및 활용 ..... 21-9
- 감사임명예정자의 설립위원 위촉 ..... 18-217
- 법인설립전 임직원에 대한 봉급용도의 보조금 지급 ..... 18-218
-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직직원에 대한 보상 ..... 18-220
-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 ..... 21-24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학교법인 이사 겸직 가부 ..... 21-26

○ 군인공제회가 직할기관인지 여부 .....	19-220
○ 정관개정으로 감사의임기가 변동된 경우 정관개정전 선임된 감사의 임기 .....	19-221
○ 군인공제회 산하단체의 이사와 보수약정 .....	19-222
○ 군인공제회 임원의 임기연장방법 .....	19-223
○ 군인공제회 임원의 임기 .....	20-30
○ 군인공제회 관리 골프장이 사업장인지 여부 .....	18-222
○ 재향군인회에 대한 특수자료취급인가와 감독 .....	18-224
○ 재향군인회 임직원의 지방의회의원출마 .....	19-215
○ 재향군인회의 각급회 해산가능여부 .....	19-216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과 수익사업 .....	19-229
○ 재향군인회에 대한 기부금과 국방현금 .....	19-230
○ 재향군인부인회의 사회단체 등록 .....	20-36
○ 예비군수송협회의 수익사업실시 .....	20-34
○ 예비군수송협회의 자동차 유상운송 .....	18-226
○ 예비군 수송협회의 명칭변경 .....	20-35
○ 예비군수송협회의 임원의 취임승인 .....	21-13
○ 예비군수송협회의 전세버스 사업등록 .....	21-15
○ 해병전우회의 사단법인설립허가 .....	18-228
○ 3·6동지회의 사단법인설립허가 .....	19-227
○ 사단법인 성우회의 설립허가 .....	21-27
○ 사단법인 세계군악연구원의 설립허가 .....	21-31
○ 한국국방연구원의 부설기구설치와 법적근거 .....	18-229
○ 한국국방연구원 직원에 대한 조건부 승격실시 .....	21-25
○ 한국국방연구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	21-30
○ 전사편찬위원회의 사업을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19-218
○ 전쟁기념사업회와 부설기관 .....	19-224
○ 전쟁기념사업회의 결산보고 .....	20-32
○ 한·미 안보연구회 법인설립허가 .....	20-37
○ 국군홍보관리소가 특수일간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19-234
○ 문화유적지표조사 소요경비의 부담주체 .....	19-242

- 국방부 통합수송부의 군용차량 집중관리 ..... 21-11
- 한국국방연구원의 부설연구소의 지위 등 ..... 22-2
-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에 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및  
법적근거 ..... 22-3
- 합동참모의장이 작전부대장에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23-1
- 차기잠수함 사업평가단에서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23-2
- 각 병과 사병의 헌병 직무 보조에 관한 질의 ..... 23-3
- 군체력단련장 운영의 재위탁 관련 질의 ..... 23-4
- 국방과학연구소가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 23-5
- 전쟁기념사업회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 23-6
- 계룡대근무지원단 지휘·감독권 위임 가능 여부 ..... 24-3
-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지역·지구계엄사령관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24-5
- 국방부소속기관에 보안적부심의회 설치 가능 여부 ..... 24-10
- 국군수송사령부의 합동부대 지정 가능 여부 ..... 24-12
- 국방과학연구소 제2부소장 직위 폐지 가능 여부 ..... 24-13
- 호국장학재단이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인지 여부 ..... 25-3
- 직업보도교육인원의 별도정원화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하는지 여부 ..... 25-5
-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의 범위 ..... 25-7
- 합참의장이 국직/합동부대의 훈련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5-9
- 각 군 부대훈련과 관련된 예산 업무를 합참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여부 ..... 25-10
- 국직기관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배속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25-12
- 국방중기부대계획 및 연도부대계획을 합참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25-14
- 국방부합동조사단이 각군 헌병업무를 조정, 통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25-15
- 전쟁기념사업회가 예식장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5-16
- 장교제적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25-17
- 「군인사법」 제14조의 결원 보충 ..... 25-18
- 물자·장비의 비축훈령(안)에 대한 사전 법령해석 질의 ..... 26-6
- 군기관에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가능한지 여부 ..... 26-12

○ 부대해체 승인권자 .....	27-23
○ 합참예속 하에 합동군 창설 여부 .....	27-25
○ 해군기지구역 설정 건의권의 법적 성격 .....	27-32
○ 향방대대 편성 .....	27-34
○ 전시창설부대의 모체부대 변경 가부 .....	27-36
○ 해외파병부대 기록관리 .....	27-37
○ 장교후보생의 정원운영 .....	27-42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과의 관계 .....	27-43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	29-3
○ 한국국방연구원 직원의 국외여행 통제 .....	29-4
○ 보상금 환수 시 징수업무기관 .....	30-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 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	30-9
○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본부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 가부 .....	30-13
○ 합동참모의장의 국직부대에 대한 지휘, 감독권 범위 .....	30-16
○ 국직부대에서 합동참모의장 명의의 공문서 하달이 가능한지 여부 ..	30-20
○ 각 군 참모총장이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30-23
○ 군 보건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3
○ 국방정보본부장 부재시 직무대리 임명 .....	31-5
○ 사관학교 명칭 사용 관련 .....	32-3
○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의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지 여부 .....	32-6

### 3. 인 사

#### 가. 계급 및 분과

○ 강등된 장교의 서열 .....	4-57
○ 신분변동에 따른 인사처리 .....	8-30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군인인가 ..... 11-21
- 생년월일 오기로 임관된 장교의 신분 ..... 13-23
- 방위 이병과 현역 이등병간의 서열관계 ..... 15-57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강등 ..... 16-29
- 병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시 계급 재부여 ..... 18-41
-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강등되는지 여부 ..... 19-39
-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현역병에 대한 강등 ..... 19-61
- 전투병과 대대장에 대한 잠정적인 중령계급 부여 ..... 20-55
- 군인·군무원의 상하관계 ..... 20-84
- 군무원에게 지휘관 자격이 있는지 ..... 23-7

## 나. 위 탁

- 군인사법시행 이전의 군위탁생의 의무복무기간 ..... 1-17, 8-47
- 병으로서 외국에 유학한 자의 복무기간 ..... 2-48
- 현역군인의 타업무 겸직의 합법성 여부 ..... 3-60
- 군위탁생의 비용상환 ..... 8-54
- 군인의 외국유학 및 위탁교육과 복무기간의 가산 ..... 1-18, 3-69, 9-21, 10-29, 15-20
- 군 기술위탁생출신 하사관의 복무기간 ..... 11-55
- 위탁교육받은 자가 공상으로 전역한 경우의 비용 반환여부 ..... 19-44
- 방위병의 취업가능여부 ..... 17-34
- 현역군인의 특허권 양도가 영리행위인지 여부 ..... 17-36
- 단기복무장교의 복학보장해당여부 ..... 17-85
- 현역교관의 국외파견 ..... 18-56
- 한국국방연구원에 현역군인지원시 지원기간 설정여부 ..... 18-57
- 국외위탁교육생의 지급경비 반환 ..... 21-51
- 예산지원이나 복무가산 없이 주간대학원에 취학시키는 제도의 적법성 ..... 22-4
- 형이 실효 또는 사면된 자나 중징계후 기록말소된 자가 군위탁생이 될 수 있는지 ..... 22-5
- 군위탁생 해임, 재징계 관련 질의 ..... 23-16
- 군위탁생으로 선발된 단기복무하사관의 지위 ..... 23-17

- 야간위탁교육생의 수학기간 산정 ..... 24-19
- 군위탁자 5년차 전역 가부 ..... 28-48
- 군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면제 ..... 28-66
- 위탁교육 종료자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 29-13
- 복수의 위탁교육 복무기간 가산 ..... 29-16
- 군위탁생 군전공의 수련과목 강제 지정 ..... 30-107
- 국방대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사적 국외여행 ..... 31-13

**다. 복무기간**

- 군인사법 제7조 제2항의 의무복무기간 ..... 1-52
- 학도군사 훈련과정(RNTC) 출신 하사관의 복무연한 ..... 2-35
- 단기복무장교의 복무연장과 전역 ..... 15-88
- 연장복무를 지원한 단기복무장교의 전역시기 ..... 16-19
-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 및 전역 ..... 3-81
- 단기장교의 복무연장 ..... 15-29
- 여군복무기간의 연장 ..... 9-49
- 20년 이상 현역복무자 복무기간 계산 ..... 4-63
- 간부후보생의 장기복무 ..... 5-35
- 의무·법무·군종 병과장교의 복무기간 기산점 ..... 5-45
- 군법무관 시보 실무수습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10-27
- 기본병과 장교가 복무기간중 법무병과로 전과한 경우의 복무기간 ..... 12-38
- 군의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한 자의 의무복무기간 ..... 8-58
- 군의관으로 복무중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의 장기복무 장교 해당 여부 ..... 10-40
-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 11-52
-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중인 군전문의 장교의 복무기간 ..... 9-25
- 군법회의에서 면소 및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자의 복무기간 산입,  
    봉급차액 소급지급 ..... 9-25
-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로 복직될 경우 호봉승급계산시 복무기간공제 여부 ..... 11-41
- 제적된 단기복무 하사의 복무기간 ..... 9-47
- 위탁교육기간의 실역복무 포함여부 ..... 10-24

○ 국비로 외국에 파견한 감독관의 파견기간 .....	10-54
○ 인사관리잠정규정 제31조에 의한 교관복무연장 .....	12-27
○ 병역의무 특례규정 시행이전 군에 종사한 자의 복무기간 기산일 및 복무기간 .....	12-31
○ 무관후보생이 하사관으로 복귀한 경우 복무기간의 환산여부 .....	14-33
○ 이중병적자 복무기간 합산가능 여부 .....	12-59, 13-22
○ 이중병적자의 의무복무연한 .....	8-35
○ 군인사법 제정 이전의 예비역장교의 예비역 복무기간 .....	9-35
○ 예비역으로부터 소집된 실역 복무장교의 복무기간 .....	12-25
○ 예비역 장교·준사관·하사관의 현역 편입규정에 의한 현역복무기간문제 ...	12-61
○ 지원에 의한 예비역 무관의 실역복무, 계급정년 계산 .....	1-45
○ 현역 복무기간 단축사유 .....	9-75
○ 사관후보생의 장기복무지원서 제출의 효력 .....	17-17
○ 의무복무기간을 넘는 기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여군장교를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	17-19
○ 병으로 복무중 임관한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	17-21
○ 6개월간 어학교육을 받은 장교의 가산복무여부 .....	17-22
○ 군의장교의 복무기간 산정 .....	17-23
○ 외국장비제조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군위탁생의 복무기간의 가산 여부 .....	17-24
○ 외국유학한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	17-25, 21-37
○ 제적된 군위탁생의 의무복무기간 .....	17-27
○ 심신장애자 치료를 위한 복무연장 .....	20-68
○ 군인력운용상의 필요에 의한 군복무기간 단축가능 여부 .....	17-74
○ 특과장교의 복무기간단축 .....	17-77
○ 특례보충역이었다가 방위소집된 자의 복무기간 .....	17-80
○ 공중보건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기간의 성격 .....	17-89
○ 주간근무를 하면서 주간과정 위탁교육받은 자의 가산복무 .....	18-27
○ 장교임용전 복무연장철회와 복무연장 장교임명의 적법성 .....	19-40
○ 제적된 일반하사의 병으로서 잔여복무기간 복무 .....	18-83
○ 재영복무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 .....	18-85

○ 군위탁생이 장기복무장교가 된 경우 복무기간 가산여부 .....	19-42
○ 군위탁생 이수기간과 장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 .....	19-50
○ 군법무관 가산복무 적용대상자 .....	21-68
○ 장교임용을 위한 교육기간의 군복무기간 해당여부 .....	21-70
○ 학군장교의 의무복무기간 .....	22-6
○ 해임된 군위탁생의 의무복무기간 .....	22-7
○ 소위임관시 장기복무 인사명령이 발해진 경우의 효력 .....	22-8
○ 정상근무를 하는 주간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	22-9
○ 일반하사가 연장복무를 원하는 경우 복무연장을 할 수 있는지 .....	23-26
○ 현역병(기술특기병) 복무기간 단축 가능 여부 .....	23-14
○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 .....	24-46
○ 복무연장장교에 대하여 복무기간연장 명령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25-25
○ 연장복무장교의 휴직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25-31
○ 공소기각판결시 휴직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산입 여부 .....	25-33
○ 여학생 ROTC 장교 선발시 의무복무기간 .....	25-75
○ 자비입학자 취학추천 및 의무복무기간 .....	26-55
○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기산점 .....	27-55
○ 위탁교육자의 가산의무복무기간 기준 .....	27-57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이 군인사법 제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27-60
○ 군책임운영기관장인 현역군인 계약연장 가부 .....	28-26
○ 이중국적자의 장기복무 여부 .....	28-53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	28-70
○ 유급지원하사의 신분전환시 의무복무기간 기산방법 .....	29-14
○ 유급지원병 복무연장 가능성 .....	29-15
○ 조종장교의 복무서약서의 법적 효력 .....	29-22
○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	29-23

- 해군 항공병과장교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개정 군인사법의 적용시기 30-62
- 가산복무기간 중 정직 처분 받은 자의 복무기간 산정 ..... 30-70
- 간호사관 출신 장교 의무복무기간의 합리성 ..... 31-34
- 복무연장 기간 중 불임휴직을 한 경우 전역일이 연장되는지 여부 .. 31-72
- 비예산 국외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 31-147
- 전직지원교육 지원 요건 상 복무기간과 휴직기간 산입 ..... 32-16
-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특정 병과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32-25

## 라. 정년

- 계급정년에 해당되어 전역되는 장교의 정년해당일 ..... 8-63
- 예비역 장교·준사관·하사관의 퇴역 또는 면역 ..... 9-19
- 군인연금법상 특례에 의해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의 퇴역 ..... 9-24
- 법무·의무·군종장교의 병역법에 의한 면역연령 ..... 11-57
- 의무행정장교에게 군인사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하여 그 연령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14-39
- 군국간호학교의 일반학 과정 교수요원의 연령정년 ..... 15-44
- 군사관학교 부서장 겸 조교수인 현역장교의 정년 ..... 15-87
- 사관학교 교수요원의 인정 여부 및 정년 ..... 21-41
- 포로로 관리중인 자가 현역정년에 달한 경우의 인사처리 ..... 17-30
- 임시대령의 계급정년 ..... 17-31
- 의무복무기간대에 정년에 달한 경우 ..... 18-23
- 특정 병과원에 대한 연령정년 단축 가능 여부 ..... 24-21
- 해병대 영관급장교의 정년 단축 ..... 26-46
- 국제기구 채용으로 휴직된 경우 정년과의 관계 ..... 30-57
- 임시계급의 현역복무기간(정년) ..... 31-103
- 재임용 심사 전 군의 치의 장교 명예전역수당 기준 정년 ..... 32-13
- 개정된 별정군무원 근무상한연령의 단계적 적용가부 ..... 32-27

## 마. 임 용

- 공무원 신분에 관한 행정행위의 효력 ..... 1-40
- 공무원 전직시험 ..... 2-30
- 사관생도의 편입학 ..... 2-50
- 준사관이 군법무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 5-32
- 임용자격의 유효기간과 군복무 ..... 5-42
- 하사관의 임용자격 결격사유 ..... 7-22
-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 7-26
- 병역기피자의 군종장교 선발 여부 ..... 8-21
- 인사발령 취소 ..... 8-39
- 군의관요원의 해·공군 분류에 있어 지원서의 법적 효력 ..... 9-72
-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의 전직 ..... 10-31, 10-32
- 장기복무장교의 연령제한 ..... 11-27
- 민간인 강사의 임명 ..... 11-47
- 사관학교 교육중 도태자에 대한 하사관 임용 가능여부 ..... 12-54
- 군종장교요원 선발 ..... 13-20
- 장교 임용 연령제한 ..... 13-21
- 조건부 의사의 군의관 임용가능성 ..... 13-26
- 제외공관 주재 무관요원 선발규정 제11조의 해석 ..... 13-31
- 예비역 군종장교 후보생의 자격취득 제한연령 ..... 13-42
- 하사관 임용에 있어서의 학력 ..... 16-23
- 사관학교예의 특정직공무원 교수의임용 가부 ..... 16-38
- 국방대학원 교수의 기한부 임용 가부 ..... 16-34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 17-71
- 성결교신학교 졸업자의 사관후보생 지원자격 ..... 20-43
- 정년전역하는 위관급 장교의 준사관 임용 ..... 18-29
- 육군장병을 공군으로 전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19-52
- 군장학생의 타군입대 ..... 20-45
- 5급 공채합격자의 현역장교 임용 최고연령 ..... 20-46

- 영관급장교에 대한 대통령 임명장 수여 ..... 20-56, 21-63
- 육군사관학교의 부교수를 국방정신교육원의 부교수로 보직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23-19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구군속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 23-57
- 독학사의 해군학사장교 지원자격 여부 ..... 24-22
- 임용결격사유자를 준사관으로 임용한 처분의 효력 ..... 24-24
- 북한주민 귀순자의 하사관 특별임용 가능 여부 ..... 24-54
- 국방대학교원 신규채용 ..... 25-28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사관후보생 지원  
26-29
- 장기·연장복무 지원 시 연령상한 연장여부 ..... 27-65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상의 ‘임용’ ..... 28-29
- 학위미취득 장교 임관취소 ..... 28-91
- 준사관 지원자격 ..... 29-9
- 국방대학교 교수 신규채용 시 특정 연구조건 부과가부 ..... 30-29
- 전역심사위원회 결과 ‘계속복무’로 판정된 생도의 임관 가능여부 ..... 30-35
- 군종장교 임용제한 연령 ..... 31-19
- 신원조사에 따른 보안적부심의회에서 ‘부적격’ 결과를  
받은 자에 대한 임용 가능 여부(벌금형 전과 사유) ..... 31-21
- 육군 협약대학 졸업자의 해·공군 장교 임관 가능성 ..... 31-29
- 신원조사 결과 회보 시 범죄경력조회 일체의 회신 가능성 ..... 31-101
-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 유지 연령 ..... 32-52

## 바. 초임계급

- 법무장교의 경력환산 ..... 4-59
-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군법무관의 사회경력 환산 ..... 21-72
- 장교 초임계급 부여 ..... 8-33
- 경력환산의 소급적용 ..... 10-26
- 의무장교의 임용연령제한 및 재임용시의 계급 및 경력환산 ..... 10-30
- 국민방위군 사관근무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볼 것인지 여부 ..... 13-28

-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대한 일반병과 병적편입과 초임계급 ..... 16-24
- 사관학교 교관요원의 초임계급 ..... 17-20
- 사관학교 1년 중퇴자의 현역입영시의 초임계급 ..... 17-70
- 석사학위를 소지한 공사교관의 초임계급 ..... 20-49
- 군의장교의 인턴수련기간에 대한 사회경력 환산 여부 ..... 21-56
- 일반하사제도의 시행 가능 여부 ..... 30-45

## 사. 임 기

- 서리기간의 임기계산 여부 ..... 4-47
- 복무연장에 따른 장교분리 ..... 6-29
- 병과장의 임기 기산 ..... 11-37
- 중요부서의 장의 임기 ..... 15-79
- 해병통신병과장의 임기 ..... 20-63
- 임기제로 진급된 자의 임기 ..... 24-26
- 병과장 및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 ..... 26-19
- 병과장의 임기 중 전직을 위한 해임가능성 ..... 26-44
- 박사학위 교육기간이 사관학교 부교수 임기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6-69
-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 부대 ..... 31-126
- 해군 법무병과장의 임기만료 후 해군 내부 전직 가능성 ..... 31-136

## 아. 군인 복무 기본법, 겸직

- 군인복무규율에 관한 질의(겸직금지) ..... 3-60, 7-34
- 민간대학에 출강하는 사관학교 교수의 겸직 ..... 9-28
- 군인군속의 한국무선종사자협회에 가입여부 ..... 10-201
- 예비역으로부터 소집되어 실역복무중인 장교의 계급 호칭 ..... 13-19
- 군부대장의 학교장 등 겸직가능 여부 ..... 19-176
- 방위소집자의 겸직 ..... 10-35
- 국방정책자문위원 해촉요건 ..... 15-78
- 국방대학원 교수의 겸직 가부 ..... 16-35
- 천주교 군종교구 유지재단의 이사의 직무가 영리적인지 여부 ..... 19-54

- 연예인의 징집전 제작된 광고와 군인복무규율상의 영리행위 ..... 22-10
- 군 소속 체육선수의 프로구단 입단계약 가능여부 ..... 23-11
- 군무원이 재개발조합 이사가 될 수 있는지 ..... 23-17
- 군인공제회 산하법인 임직원의 정치활동 금지여부 ..... 23-55
- 군인의 학교법인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 24-35
- 대외 출강이 겸직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 25-34
- 장관급장교의 산하기관 임원직위 겸직 ..... 26-17
- 현역복무 중인 병사의 직계존속을 위한 선거운동 및 청원휴가 ..... 26-67
- 영리적 직무 범위 판단 기준 ..... 27-68
- 파견 상태로 국제기구에 복무가능 여부 ..... 28-45
- 가점·감점제도로 외박제한 가부 ..... 30-105
- 해병대 사령부의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조치 관련 지침의 적법성  
31-68
- 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장인지 여부 ..... 32-61
- 국방대학교 교수의 대외활동 겸직 가능 여부 ..... 32-69

## 자. 진 급

- 군장성급의 정규진급 절차 ..... 3-84
- 진급낙천사유 ..... 7-23
- 장교진급 ..... 5-26
- 장교진급심사 ..... 8-29
- 장교진급 낙천자의 인사처리 ..... 8-50
- 남조선 국방경비대원의 추서진급 ..... 15-86
- 군인사법 부칙 제2조 해당자의 진급 ..... 9-42
- 군인사법상의 진급 해당연도 ..... 10-25
- 임시소령과 예비역소령 ..... 15-81
- 장교진급 예정자의 진급발령 순위 ..... 14-28
- 군인진급규정에서의 “유죄판결”의 의의 ..... 1-236
- 국제기능올림픽 입선자와 1계급 특별진급 ..... 15-27
- 진급예정자 명단과 유죄판결 ..... 16-22

- 군인사법상의 진급 해당연도에 관한 질의 ..... 17-28
- 공군학사장교의 육군장교 복무경력 인정 ..... 20-51
- 진급최저근속기간 단축규정의 적용 ..... 20-53
- 진급전 전년도에 진급선발 ..... 18-32
- 진급예정인원의 의미 ..... 18-34
- 연령정년에 달한 이후의 진급선발 ..... 18-36
- 진급선발후 연령정년에 달한 하사관의 진급 ..... 18-37
-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진급발령 ..... 18-39
- 진급발표된 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진급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 ..... 19-37
- 원사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 ..... 21-49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중사진급예정자의 진급 ..... 21-65
- 실효된 벌금형 선고사실로 진급선발시 감점하는 것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위반인지 여부 ..... 22-11
- 진급예정자의 법적 지위 ..... 24-27
- 임시계급부여제도의 적법성 여부 ..... 24-28
- 진급예정자가 중징계를 받아 항고하여 경징계로 감경되었으나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 경우 진급발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5-23
- 명예진급제도를 국방부지침으로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 25-37
- 장교진급선발위원회가 진급예정인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 26-39
- 진급예정인원과 진급제청인원의 범위 ..... 26-57
-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의 예외(약식명령 청구) ..... 27-71
- 부사관 근속진급제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 ..... 29-17
- 재외공관 무관의 직책계급장 부여 가부 ..... 29-25
- 예비역 간부의 진급심사 시 전역예정자 선발 가부 ..... 31-95

**차. 전역**

- 병력초과운영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적용 ..... 1-30
-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복무기간 초과자의 전역 ..... 1-47
- 전역지원서 제출기간 ..... 1-48

○ 제적사유가 확정된 군인이 그 확정일 전에 원에 의한 예편이 되었을 경우의 조치 .....	1-49
○ 군인으로서의 신분종결일 .....	1-71
○ 전역일 당일의 신분 .....	15-90
○ 지원에 의한 단기하사에 대한 저능률자 전역규정의 적용 .....	15-75
○ 저능률자 전역규정 해석 .....	2-32
○ 장기복무전형에 불학격한 장교로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처리 .....	3-77
○ 예비역무관의 특수 전면역 .....	7-73
○ 여군 임신으로 인한 전역무제 .....	5-37
○ 군인사법상 복무연장자의 전역 .....	6-23
○ 불명예제대자의복무해제시기 .....	7-16
○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하는 장교에 대한 전역조치 가능 여부 .....	8-43
○ 위탁교육 이수자의 전역원 제출 .....	8-52
○ 연령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 연기 .....	8-53
○ 의원출마를 위한 전역 .....	8-145
○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기일전에 제출된 전역 보류신청 .....	9-29
○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전의 전역 .....	9-32
○ 전역될 병과장의 전역보류 .....	10-19
○ 전역보류처분의 효력기간 .....	15-24
○ 2중전역 발령된 자의 효력 .....	10-20
○ 장기복무 법무장교의 전역 등 .....	10-23
○ 단기하사 및 병에 대한 전공상 여부 결정 .....	9-17
○ 위탁교육을 받은 간호장교의 특수전역 등 .....	11-63
○ 전역의 특례 .....	11-68, 14-35
○ 형집행정지중인 자가 의병전역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동인을 의병전역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12-23
○ 군복무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 .....	16-21
○ 군인신분상실시기 .....	17-33
○ 착오에 의한 전역처분의 취소여부 .....	17-78
○ 현역병의 특수전역 .....	17-79

○ 장기복무장교의 장기복무해임 .....	18-21
○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	18-25
○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시기 .....	19-55
○ 을종 위탁생이었던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	19-58
○ 5년차 전역희망 장기복무장교의 전역절차 .....	20-76
○ 전역지원서 제출 없는 전역지원 .....	18-42
○ 전역지원서의 효력과 인사정책 .....	20-79
○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여부 결정권한 .....	18-44
○ 8,9급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	20-66
○ 의무장교에 대한 전·퇴역신체검사시 적용규정 .....	18-45
○ 전역보류기간만료후 전역보류 .....	18-48
○ 의무복무기간 연장입법의 적용시기와 전역보류 .....	19-63
○ 현역정년에 달한 장교의 전역보류 .....	20-73
○ 퇴역연금 지급대상자의 전역보류 .....	21-53
○ 군위탁생출신장교의 의병전역과 비용반환 .....	18-52
○ 기소된 군의장교에 대한 전역발령일자 .....	20-71
○ 전역에 관한 해군 건강관리및신체검사규정의 효력 .....	21-54
○ 편제조정 및 교과개편과 관련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의 전역관리문제 .....	22-12
○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단기복무장교이 강제전역 여부 .....	22-13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동법 제4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22-14
○ 직업보도교육의입과자격 .....	22-15
○ 임기제 진급자의 전역시기 등 .....	23-10
○ 장기복무 의무장교가 전문의학과정 수습 도중 위 과정을 중단한 경우 5년차 전역이 가능한지 .....	23-13
○ 군인사법 개정 전 임관한 단기장교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해 원에 의한 전역을 할 수 있는지 .....	23-23
○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 기산점 .....	23-25
○ 정원초과 인력해소를 위한 강제전역 가능 여부 .....	23-28
○ 직업보도교육 신청자격 여부 .....	24-33

○ 특수병과장교 전역시 적용할 신검규정 .....	24-52
○ 장관급 장교의 정년전역 .....	25-27
○ 의무조사결과 신체등급(4급) 판정을 받은 자를 전역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	26-23
○ 가산복무기간 중 군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장학금을 반납하고 전역가능한지 여부 .....	26-25
○ 육아휴직자의 5년차 전역지원 .....	26-33
○ 의무조사결과 심신장애등급이 1-7급인 자를 현역복무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26-51
○ 전직된 임기제 진급자의 전역시기 .....	27-73
○ 육아휴직자의 전역일 .....	27-78
○ 기소휴직 처리된 전역예정자의 전역명령의 적법성 .....	27-80
○ 임기제 진급자 보직 변경 .....	28-55
○ 군 체육선수 ‘도태’의 법적 성질 .....	28-68
○ 심신장애전역 대상자 복무 가능 여부 .....	28-73
○ 전투경찰순경 전환복무 해제 .....	28-83
○ 직업보도중 근속진급된 경우 재복무 가부 .....	28-87
○ 전역보류 직권취소 및 철회 .....	29-11
○ 임기제 진급자를 전직지원교육 비대상자로 한 해군 규정 .....	30-67
○ 부사관후보생이 심신장애 전역을 하는 경우 전역처분 필요 여부 .....	30-82
○ 중징계처분에 대한 항고기간 중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30-10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 범위 .....	31-42
○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가능성 .....	31-44
○ 국직부대 소속 해군 위관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 제대 .....	31-59
○ 기소휴직 된 단기복무장교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시 전역일자 등 .....	31-62
○ 1심판결 선고 후 중징계 받은 자의 지원 전역 허가 가부 .....	31-65
○ 육군 예비역 장교 전역명령 정정 .....	31-97
○ 장기복무장교 5년차 전역 .....	32-18
○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	32-45

## 카. 제 적

- 벌금형을 받은 자의 제적 ..... 1-24
-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관의 제적 ..... 1-25
-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의 제적 ..... 1-27
- 군인사법상 제적대상자가 제적되기 전 복권된 경우의 제적 ..... 1-28
- 사건계속중인 자의 제적 ..... 1-32
- 집행유예중 사후조치로 잔여 유예기간의 집행면제 효력 및 제적 ..... 1-53
- 군인사법 제40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의 병역의무 ..... 5-66
- 제적발령 지연자의 제적일자 ..... 7-27
- 제적명령의 지연과 복무기간 환산 ..... 9-20
- 성직자격 박탈된 군종장교의 인사처리 ..... 8-55
- 대리입대자의 신분 ..... 8-27, 9-18, 11-63
- 제적될 자의 제적전 복무기간의 성격 ..... 8-28
- 제적과 복무월수 계산 ..... 8-56
- 유죄확정된 자의 제적 ..... 8-59
- 외국인이 인지한 자의 제적 ..... 8-149
- 해군 예비원의 제적 ..... 9-36
- 2중 병적자의 제적 ..... 9-44
-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제적 ..... 10-41, 13-34
- 제적된 장교의 신분처리 ..... 10-42
- 사면과 제적자 인사처리 ..... 10-48
- 법무장교후보생 중 결격사유로 인해 임관이 불가능할 경우 현역병  
입영여부 ..... 12-65
- 제적된 단기하사의 병역에 관한 질의 ..... 14-37
-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장교 등의 전역 일보 일자 ..... 12-29
- 복무 연장한 임용 하사관이 제적된 경우의 인사처리 ..... 15-35
- 포로·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군인의 인사 ..... 15-53
- 포로 및 행방불명된 군인에 대한 인사 ..... 16-33
- 형사사건이 군의 후보생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 16-30
- 행방불명된 장교의 제적시기 ..... 20-81

- 무관후보생이 된 현역하사관 등의 신분상실시기 ..... 20-65
- 집중호우로 실종된 장병에 대한 순직처리의 가능시기 및 방법 ..... 22-16
- 사관학교퇴교자의 편입학 가능 여부 ..... 24-38
- 하사관 제적 처리 절차 ..... 24-47
- 육군3사관학교 규정에 의한 퇴교 가부 ..... 28-33
- 재심청구로 무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 대한 제적명령 및 진급 ..... 31-54
- 군종장교의 소속 중단 변경과 장교 신분의 보유 ..... 31-112

#### 타. 복 적

- 재심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자의 복적 여부 ..... 3-37
- 상소권 회복된 자의 인사처리 ..... 2-44, 6-30
- 무죄판결된 직위해제 공무원 복직시기 ..... 8-40
- 복직 발령시기 ..... 8-62
-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재심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복직 ..... 9-33
- 재심과 복적시기 ..... 10-45
- 착오에 의한 제적임이 확인된 경우 해군 예비사관의 복적 ..... 10-46
- 재심무죄인 자가 연령정년에 달한 경우 복직 및 전역시기와 복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범위 ..... 22-17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학적복원 및 추가임관 ..... 23-26
- 선고유예판결 받은 자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 ..... 25-36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의 상고심 계속 중 복직 가능여부 ..... 26-49
- 긴급조치위반 무죄 판결과 복직 가능성 ..... 31-23

#### 파. 휴 직

- 휴직으로부터의 복직시기 ..... 1-20, 8-62
- 군법회의에서 무죄로 확정된 자의 복직 ..... 9-46
- 휴직명령 시기 ..... 11-32
- 휴 직 ..... 11-44
- 휴직이 호봉 재획정에 미치는 영향 ..... 15-17
- 소급 휴직명령의 적법 여부 ..... 12-50, 11-17

- “공소권무” 결정을 받은 자의 인사처리 ..... 14-21
- 벌금형 선고사건의 이송가 휴직명령 ..... 19-57
- 휴직기간 계산방법 ..... 19-67
- 3군합동부대 소속장병의 외박규정 ..... 24-36
- 육아휴직자 진급발령 보류 ..... 28-81
-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일부를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29-27
- 예비 간호사관생도 가입학 기간 중 퇴교처분 관련 ..... 30-21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30-74
- 가사휴직을 1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31-151
- 육아휴직한 간호장교에 대한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활용가능성 ..... 31-154
- 남성 군인의 불임·난임 휴직 ..... 32-11
- 기소휴직과 무죄판결 ..... 32-57

#### 하. 휴 가

- 불치의 병(암)으로 진단된 장교의 해외 휴가 ..... 10-55
- 군인의 휴가일수와 공휴일 포함여부 ..... 16-32
- 대간첩작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복무단축 등 ..... 16-44
- 군인의 휴가중 해외여행 ..... 17-37
- 벌금형 확정된 자 대한 소급휴직 명령 가능 여부 ..... 24-41
- 기소휴직된 자의 상고심 계속 중 복직 가부 ..... 27-85
-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청원휴가 가부 ..... 28-52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지침 하달의 적법성 ..... 31-49

#### 거. 위 임

- 의병전역권 위임 ..... 7-15
- 한·미통합 제1군단 부군단장의 권한 부여 ..... 8-31
- 시험실시 권한의 위임 ..... 11-22
- 휴직명령권의 위임 ..... 11-67
- 방위병에 대한 인사 및 징계권의 위임 ..... 16-27

## 너. 잡 칙

- 외국사관생도의 국내유학 ..... 7-18
- 하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육군참모총장의 규칙 제정 ..... 9-26
- 전사일자 기준 ..... 9-41
- 군무이탈자의 처리 ..... 10-47
- 국방대학원 입학자격 ..... 11-26
- 현역장교의 타군으로의 전군 ..... 12-122
- 국방대학원 교수 등의 신분보장 ..... 13-32
- 군인사법중 개정법률 등의 시행에 따라 현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에  
대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 14-24
- 포상권자의 범위 ..... 15-42
- 사법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 시보의 실무수습 ..... 8-24
- 예비역장교의 현역장교로의 편입 ..... 11-59
- 국방부 직원(군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보직관리 ..... 12-57
- 전사편찬위원 및 촉탁의 임용 ..... 15-40
- 전사편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직급표시 ..... 15-58
- 탈영기록 정정 ..... 5-28
- 기소중지처분된 자의 보직 ..... 7-25
- 사관학교 등의 용어 정의 ..... 15-66
- 하사관 지원 입대자가 중사로 진급 계속 복무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로서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 15-67
- 예비군 중대장의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겸직 ..... 16-36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특별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에 대한 처리 ..... 16-39
- 국군장의 요건 ..... 17-38
- 장기입원환자의 처리 ..... 20-69
- 생사불명의 포로에 대한 사망구분 ..... 20-83
- 심신장애로 전역하는 자에 대한 군장학금 반납 면제여부 ..... 22-18
- 군 영내에 설치한 게임기의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한 경우  
영업허가의 대상이 아님 ..... 22-19

○ 국방부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 만료시 직무대행 가능여부 등 .....	23-12
○ 승진임용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	23-27
○ 특수병과 장교의 당직근무에 관한 질의 .....	23-24
○ 군장학생 해임시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반납 여부 .....	24-43
○ 부사관의 학군무원후보생 편입 .....	27-89
○ 부사관 근속진급의 시행일 .....	27-90
○ 대학장학생의 3사 입학시 '전학'의 적용 여부 .....	28-36
○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의 '학기말'의 의미 .....	28-43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상 장기지원 가부 .....	28-57
○ 월남전 실종자(하사 안00) 법적 지위 .....	28-76
○ 사관학교 퇴교자 출신 부사관 법적지위 .....	28-94
○ 전역 후 재의무조사 .....	28-127
○ 육군3사관학교 1~3기 졸업생 학점인정 .....	29-19
○ 국방대부총장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 .....	29-24
○ 사관학교 가입학자의 신분 .....	29-26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 .....	29-28
○ 군수형자의 일반교도소로 이송 .....	30-43
○ 군교수의 재임용심사 .....	30-85
○ 인사교류 통제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보직 기산점 .....	30-87
○ 영관장교의 임명장에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 .....	30-96
○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반납처리 .....	31-11
○ '군 내 임신여성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	31-27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군인의 범위 .....	31-38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위원 해촉 .....	31-52
○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자 등이 군인인지 여부 .....	31-74
○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 약식자력 조회 권한부여 가부 .....	31-83
○ 입대취소 또는 무효인 자의 신분 .....	31-124
○ 부사관 군장학생의 장학금 반납 .....	31-131
○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 직무대리 가능성 .....	31-145

- 근무원 근로계약 시 계약 명의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으로 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32-35
-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의 허가범위 ..... 32-39
-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검토 ..... 32-45
-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 ..... 32-59

## 4. 징 계

### 가. 성 질

- 형사처분과 징계처분 상호간의 관계 ..... 1-54

### 나. 사 유

- 군인신분 취득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가능 여부 ..... 1-37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자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 8-45
- 징계사유 소멸시효 ..... 12-56
- 군인사법상 징계사유의 시효 ..... 9-23
- 징계시효의 기산점 ..... 21-75
- 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 27-92
- 무단국외여행자 징계 ..... 32-54

### 다. 종 류 · 대 상

- 카투사병의 징계 ..... 2-39
- 간부후보생의 징계 ..... 3-57
- 하사관후보생의 군인사법에 의한 징계 ..... 5-41
- 군속징계 ..... 7-33
- 파견된 공무원 또는 군인에 대한 징계권 행사 ..... 8-46
- 병의 강등 ..... 8-60, 12-133
- 소집중에 있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한 징계권 행사 ..... 10-110
- 징계유예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30-41
- ‘군수용자’, ‘영창시설’의 개념과 계호업무 종사자 범위 관련 ..... 32-31
-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해당여부 ..... 32-47

## 라. 징계권자

- 징계권자의 부인권 행사와 징계처분 ..... 2-51
- 하자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의 취소 등 ..... 3-66
- 징계위원회의 직무 ..... 3-79
- 타군 장병에 대한 징계 ..... 6-42, 7-35
- 위수사령관의 징계권 ..... 6-43
- 감독을 받은 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범위 ..... 2-31
- 징계권자로서의 함정장의 정의 ..... 15-82
- 징계권자 자격 ..... 11-19
- 군인사법상의 징계권자 ..... 12-45
- 수도통합병원분원장의 징계권 및 표창권 존부 ..... 13-38
- 국방대학원 소속의 본부대장 및 본부중대장의 경징계권 행사 가능 여부 ..... 14-30
- 미8군 한국군 연락장교단장의 징계권 ..... 12-52
- 국방품질관리소장의 현역군인에 대한 징계 ..... 21-52
- 한국국방연구원에 파견근무중인 현역군인에 대한 징계 ..... 21-49
- 국방대학원소속 특정직 교수의 징계관할 ..... 23-8
- 수입군부대장이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 25-29
- 국방과학연구소 전속 군인에 대한 징계 관할 ..... 32-63

## 마. 징계위원회

- 군인사법 제51조의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성격 등 ..... 1-61

## 바. 징계절차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수속 진행 ..... 3-85
- 감사기관의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신청 기간 중 징계절차 ..... 30-80
-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요구를 한 상태에서 징계협의자가 타 부대로 전속된 경우 징계절차 ..... 30-99

## 사. 징계의 효력

- 직무대리자가 한 징계의 효력 ..... 5-39

- 징계처분의 취소 ..... 2-42
- 징계처분 취소 변경 ..... 3-82
-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 질의 ..... 5-27
- 징계처분의 정지 ..... 7-20
- 징계처분을 받은 군속에 대한 면직가능 여부 ..... 11-71
- 전소속부대장이 한 징계처분의 효력 ..... 5-27
- 징계조치기간의 경과와 징계의결의 효력 ..... 19-59
- 징계특별사면의 효과 및 현역복무부적합조사 ..... 26-71
- 징계유예 취소의 요건(군인징계령 제21조 제2항의 해석) ..... 29-29
-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의 직권취소 가부 ..... 29-31
- 혐의없음의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청구 가능 여부 ..... 29-32
- 2회의 경징계처분 중 두 번째 경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 가부 ..... 30-65

**아. 항 고**

- 징계항고 심사결과 결정에 따른 취소 내지 감경에 있어서의 소급  
적용여부 및 경감조치시의 집행방법 ..... 1-38
- 국군징계항고심사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 2-56
-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임명문제 ..... 3-56
-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3-87
- 징계항고 업무처리 절차 등 ..... 4-39, 10-50
- 중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여부 미결정자에게 전역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12-36
-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 취소결정만 있고 종국적 판단이 없는 경우의  
재징계 ..... 18-54
-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 30-55

**자. 잡 칙**

- 징계권자의 경감조치의 한계 등 ..... 3-63
- 징계처분취소와 현역복무 부적격자로서의 전역 ..... 15-47
- 징계위원회의 불문의결 가부 ..... 16-28

-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도 징계등 기록 말소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23-20
- 강등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 예비역으로서의 계급이  
원상회복되는지 ..... 23-15
-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 26-59
- 특별사면 명단 누락자의 사면 가부 ..... 27-95
-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취소 권고의 효력 ..... 28-61
-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도 징계사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 29-30
- 군인징계령 제21조(징계유예) 해석 관련 ..... 31-47
- 재징계 의결요구 기간 ..... 31-91

## 5. 군무원 인사

### 가. 임 용

- 전역되는 현역군인을 군속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면제 가능 여부 ..... 10-53
- 군속임용 전에 취득한 자격증 및 면허증을 가진 자를 군속  
인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전직할 수  
있는지 여부 ..... 12-45
- 군속인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전직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의  
의의 ..... 13-25
- 군복무당시의 중대장, 대대장의 경력을 군속인사법 시행령 소정의  
행정직 군 경력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 14-19
- 임용예정 군무원의 해당 직무분야 경력인정 ..... 21-76
- 현역복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의 군속임용 제한 여부 ..... 8-37
- 재임용된 군속을 퇴직전 다른 직군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승진시킬 수 있는지 ..... 15-19
- 다른 직열로 변경한 경우의 승진경력 평정 ..... 15-23
- 직렬을 무시한 군속 3급 이상의 보직관리 ..... 15-26
- “원직급으로 전직할 경우”의 의미 ..... 15-89

- 군속채용의 치고 연령 ..... 15-85
- 신규채용과 군속의 강입 ..... 15-37
- 4급갑류 군속의 특별승진 ..... 15-31
- 군속인사법 제9조의 채용연령 및 정년규정 배제 여부 ..... 1-77
- 군속의 복무연한 서약서의 법적 효력 ..... 1-79
- 군속의 채용연령 ..... 2-34
- 정년 연장의 기준시점 ..... 15-84
- 전직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 16-42
- 국군정신전력학교의 교수자격 ..... 19-48
- 일반학 담당교관의 개년 ..... 19-66
- 복무기간만료전 군인의 군무원 임용 ..... 20-85
- 군무원 임용결격사유발생시 처리 절차 ..... 24-50
- 별정 군무원의 상위상당계급 임용 ..... 25-30
- 군무원인사법상 별정군무원으로 조종군무원 임용가능 여부 ..... 26-64
- 군무원의 통합보직관리 ..... 27-98
- 군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27-101
-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재조정 ..... 27-103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군속승진 가능 여부 등 .. 29-6
- 군무원 승진예정자의 군속승진 심사대상 포함 여부 ..... 29-12
- 합동군사대학교 계약군무원의 채용 계약 승계 ..... 30-32
- 일반계약직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재채용시 선발대상 및 공고 ..... 30-77
- 군무원 전직시험 면제 여부 ..... 31-32
- 일반계약군무원 직위지정범위 확대 가능성 ..... 31-110
- 별정군무원의 상위 상당계급 재임용 가능성 ..... 31-149
- 기능군무원 추가합격 결정 ..... 32-67

**나.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

- 군속특별채용시험 제한문제 ..... 4-52
- 군속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임용자격 ..... 15-55
- 일반사면과 군무원 특별채용 시험자격 ..... 16-41, 17-39

- 1급군무원 특별채용시 환산특례 적용여부 ..... 18-61
- 박사학위 소지 군인의 군무원 채용 ..... 20-87
- 4급 군무원 특별채용시 소령 이상으로 전역한 자로도 가능한지 여부 ..... 22-20
- 별정군무원의 특별채용 ..... 27-104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29-5
- 기능군무원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 시, 특별채용시험 면제  
가부 ..... 30-48
- 일반계약군무원(1급) 직위 지정 가능성 ..... 31-120
- 신원조회 및 보안적부 심의 결과에 따른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의 적법성 ..... 31-134

#### 다. 면 직

- 군속의 면직시기 및 해직된 군속의 계속근무 등 ..... 4-54
- 군속인사법 중 결격사유 ..... 5-38
- 서독에 파견된 간호군속의 현지 해임 가능 여부 등 ..... 14-26
- 군무원의 직권면직 ..... 17-43
- 임시군무원의 직권면직 ..... 17-45
- 해외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의 사직 ..... 17-46
- 군무원 임용시 작성한 의원면직서의 효력 ..... 19-68
- 약식명령이 청구된 군무원의 직위해제 ..... 21-58
- 군무이탈 중인 군무원의 직권면직 가능 여부 ..... 26-37
-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의 육아휴직과 의무복무기간 ..... 31-128

#### 라. 복 무

- 위탁교육중인 군속의 사표 제출 ..... 9-45
- 군속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한 면직 여부 ..... 10-33
- 교육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직급명칭 ..... 20-89
- 군무원에 대한 당직사령·당직사관의 임무부여 ..... 20-91

- 군무원 위탁교육시 의무복무기간 ..... 24-48
- 군무원의 병가시 허가권자 ..... 24-49
- 군무원의 당직편성 ..... 29-21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시행 관련 ..... 30-51
- 군무원 근무성적 평정자 ..... 30-90
- 예비군지휘관 전보관련 근속년수 ..... 31-17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군무원의 범위 ..... 31-40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상 전보 및 인사교류 규정 해석 ..... 31-86
- 군무원 위병사관 근무편성 ..... 32-65

**마. 신분보장**

- 군속의 병가 기한문제 ..... 2-49
-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무원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 ..... 17-41
- 임시군무원의 법적 자위 ..... 17-48
-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는 때로부터 4년 5개월 경과후 강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9-47
- 군무원 승진평정 대상인 교육훈련 과정 ..... 20-93
- 군무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서 직급소지기간 ..... 21-35
- 행정직 군무원의 경력평정 ..... 21-60
-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신분 ..... 30-54
- 승진공석 추가 승인 가능여부 ..... 31-71
-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국방부 지침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31-80
- 기존 훈령과 배치되는 군무원 동일부대 지침 발령의 가능성 ..... 31-99

**바. 징 계**

- 군속의 지각 및 조퇴자 ..... 2-33
- 군속징계에 대한 임용권자의 승인 ..... 6-41
- 징계처분의 불이익기간 ..... 15-51
- 군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위직”의 개념 등 ..... 16-26
-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 18-63

- 군인복무시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군무원징계 ..... 20-61
- 군무원의 정직기간 중 교육과견과 출장이 가능한지 여부 ..... 31-89
- 고위공무원도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31-116

## 6. 보 수

### 가. 보수 및 수당

- 진급으로 진급 전보다 보수가 적어진 자의 호봉승급 ..... 11-75
- 초임 계급이 중위 이상으로 임용된 장교의 진급시 호봉부여 ..... 13-36
- 진급시 호봉승급 ..... 12-71
-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되는 자의 호봉부여 및 호봉조정 후의  
승급기간 계산 등 ..... 3-92
- 대위 8호봉이 진급한 경우 호봉부여 ..... 15-76
- 상사에서 준위로 진급한 자에 대한 호봉부여 ..... 7-37
- 강등되었다가 월계급으로 환원된 하사관에 대한 호봉부여 ..... 14-95
- 하사관 복무경력 있는 군법무관의 초임호봉 확정 ..... 21-83
- 예비역 지역중대장 상여금 지급 ..... 12-73
- 무죄선고받은 자의 미지급 상여금을 소급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13-98
- 전역일자 이후에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보수지급 ..... 2-60
- 사관학교 교관의 신분과 보수지급 ..... 1-92, 3-98, 4-67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미결중인 준사관 및 하사관 또는 복역중인  
병에 대한 봉급 지불 ..... 1-87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보수지급 ..... 4-168
-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장교의 봉급 지불 ..... 8-63
- 전역 및 제적취소된 자의 봉급 지불 ..... 1-81
- 구속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받은 자의 봉급지불 ..... 1-83
- 무죄판결이 확정된 장교에 대한 휴직기간중의 봉급지불 ..... 5-49
- 전역 및 제적취소된 자의 봉급 지불 ..... 6-37
- 전역취소 판결과 전역기간중의 제수당 ..... 15-198
- 군인의 특수근무수당 및 군속의 특수업무 장려수당 지급시기 ..... 15-200

○ 부양가족의 범위 .....	15-201
○ 군수련전공의와 제수당 지급 .....	15-205
○ 학생군사교육요원에 대한 장기복무수당지급 .....	15-206
○ 사면된 징계처분에 의한 상여금 및 정근수당의 감액 .....	10-208
○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한 자에 대한 제수당 지급 .....	15-209
○ 여군장교의 가족수당 지급 .....	9-24
○ 군인 피복수당 지급 .....	3-96
○ 육군기술군속의 수당지급 .....	3-97
○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장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급 .....	7-40
○ 군법무관 수당 지급 .....	8-67
○ 범무병과로 전과한 군법무관이 군법무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2-14
○ 군법무관의 자격상실 및 수당지급 여부 .....	3-92
○ 공무원의 위원직 수당의 합법여부 .....	5-53
○ 출동 함정에 근무하는 병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	14-98
○ 함정근무수당 지급 .....	1-92
○ 휴직된 군속의 조정수당 지급 .....	11-77
○ 교관교재 연구수당 수급권자 .....	16-50
○ 구군인보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4의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법무관”의 의미 .....	16-51
○ 전문·기술분야 종사 경력자의 병과전환과 호봉재획정 .....	16-52
○ 경력을 합산받지 못한 자에 대한 호봉재획정의 시기 절차 .....	16-53
○ 관사입주 장병에 대한 주택수당 지급가부 .....	16-55
○ 군인 군무원의 제안제도와 특별승급 .....	16-56
○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범위 .....	16-58
○ 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시기 .....	16-59
○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소멸시효 기간 .....	17-55
○ 여자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 범위 .....	17-57
○ 전사편찬위원회 위원에 대한 가족수당 등 지급여부 .....	17-59
○ 제적된 군인에 대한 보수지급 기한 .....	17-60

- 입영교육중의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한 보수지급 ..... 18-67
- 직계존속과 주거가 다른차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 18-72
- 가족이전비 지급제외 ..... 18-73
- 영국교육기관에 파견된 조종사와 제외근무수당 ..... 19-79
- 육군사관학교 5급 사서직 군무원에 대한 사서수당 ..... 19-83
- 군사법원 서기 및 군검찰 서기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 20-101
- 비행휴관정된 조종사에 대한 항공수당 지급 ..... 20-103
- 사실상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18-74
- 원계급복귀하여 전역한 장교의 퇴직급여산정 ..... 20-106
- 임시고용원의 퇴직금지급 여부 ..... 19-73
- 임시군무원 퇴직금 산정기준 ..... 19-77
- 여군병과 폐지로 전역하는 여군병과장과 명예전역수당 ..... 19-75
- 19년 6월 근속후 병과장으로 전역하는 자와 명예전역수당 ..... 19-81
- 명예전역수당 지급 위한 병과장의 근속기간 ..... 20-105
- 명예전역수당 지급 여부 ..... 21-79
- 군인에 대한 자문비 지급 ..... 20-99
- 주택수당에 관한 문제 ..... 22-21
- 공무원보수규정 제 30조의 2의 군인 근속가봉과 관련한 문제 ..... 22-22
- 현역 군인 등에 대한 감수비 지급여부 ..... 22-23
- 군무원의 직위해제 기간중의 보수 ..... 22-24
- 장교로 전역한 후 다시 군법무관이 된 자에게 군법무관 장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전역전 복무기간의 산입여부 ..... 22-25
- 재심무죄인 자가 복직된 경우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22-73
- 명예전역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명예전역 수당 지급관련 질의 ..... 23-30
- 귀환 국군포로의 봉급관련 질의 ..... 23-32
- 임기제진급 장군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23-33
- 현역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번역료 지급 가능여부 ..... 23-34
- 퇴직한 군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 23-36
- 기술수당지급대상자 관련 질의 ..... 23-38

-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이 군인보수법상 보수지급 대상인지 23-41
-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명예진급만 한 상태에서 명예전역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 23-42
- 봉급인상률 차등적용 가능 여부 ..... 24-73
- 교관이 다른 부대로 전출한 경우 교관연구 조성비 지급 가능 여부 25-58
- 헌병수사관의 위장피복비 증액 가부 ..... 25-70
- 병 복무기간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의 차등 지급 가능 여부 ..... 26-85
- 군법무관수당 지급 요건인 “임관 후 3년”의 의미 ..... 27-119
- 특수경력직공무원 근무 중 파면된 자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7-122
- 학군무관후보생의 보수 ..... 27-126
- 명예전역자의 장애보상금 지급여부 ..... 28-120
- 준사관의 퇴직금 산정방법(부사관임용취소시) ..... 28-122
- 선고유예시 잔여퇴직금 지급 ..... 28-124
- 진료미종결 전역자의 공무상 요양비 ..... 28-133
- 해외 파병장병 수당 ..... 28-139
- 피복비 소급 지급 가부 ..... 29-38
- 군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심사 전 사망한 경우 수당지급 가부 .... 29-40
- 군인군속급식규정상 현물지급의 의미 ..... 29-45
- 항공수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29-46
- 보수 분할지급 여부 ..... 29-50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 30-124
- 기소휴직 후 무죄 선고로 복직된 자의 봉급 차액 지급 여부 ..... 30-130
- 휴직(기소)중인 사관생도의 급여 지급 여부 ..... 30-138
-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국가비상사태’ 해석 ..... 32-23
- 함정근무수당 지급 ..... 32-112

## 나. 보칙

- 집체교육기간중 임금 지불 ..... 7-42
- 파면 등으로 제적된 하사 등에 대한 전역급여금 지급 ..... 2-58

- 장기복무 해임과 동시에 하사로 전역되는 자의 전역급여금 지급 ..... 2-60
- 생존이 확인된 실종자, 행방불명으로 제적된 자의 봉급 및 연금지급 ..... 6-35
- 포로가 된 군인의 대한 봉급지급 ..... 16-49
- 관할관 확인조치에 의한 형집행 면제의 경우 급여액 지급 ..... 9-30
- 군인의 호봉승급 기준일자 ..... 17-61
-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경력환산기준 ..... 17-64
- 임용전 경력의 복무기간환산 ..... 18-68
- 호봉확정시 잔여기간의 차기승급시 반영 ..... 18-70
- 민간인 이발사 근무기간의 기능군무원 호봉합산 ..... 20-95
- 법무장교(장기) 초임호봉 산정 방법 ..... 28-116
- 부사관 임용취소시 준사관 호봉산정 ..... 28-130
- 재임용에 따른 전 신분의 군 교육기간 경력인정 ..... 30-72

#### 다. 기 타

- 국내여비규정 제9조의 소관장관의 해석 ..... 1-86
- 국내여비규정상외의 이천료 및 가족 이천료의 지급 해당범위 ..... 3-95
- 근무연습 소집에 의한 동원훈련중인 자에 대한 급여금 지급 ..... 10-57
-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보수의 지급 ..... 10-60
- 퇴교자 변상금 ..... 12-75
- 사관생도 휴가비 지급 ..... 13-97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대상 ..... 14-97
- 과일 선급금 면세 적용 ..... 7-41
- 잡급직원의 퇴직금 청구권과 소멸시효 ..... 15-210
- 잡급직원 재직기간의 기산 근거 ..... 15-211
- 잡급직원의 처우 등 ..... 15-202
- 사관후보생 등의 교육훈련중 퇴학과 상여금 등 지급 ..... 16-47
- 육군복지근무지원단 근무원의 경력인정 여부 ..... 17-53
- 호봉의 소급승급 신청과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 21-112
- 순항훈련중인 사관생도 여비지급 급류 ..... 21-117
- 5.18사건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부터 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지 .....	23-29
○ 퇴직자가 복무중 사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지 .....	23-35
○ 병사를 위한 국가의 보험 가입 가능여부 .....	23-103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환수와 소멸시효 .....	26-80
○ 군장학금 반납면제신청 기한의 법적성격 .....	28-105
○ 망자를 대리한 연금 소급 청구 가부 .....	28-108
○ 상이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8-109
○ 훈련중 보충역 공단부담금 부담 여부 .....	28-112
○ 한남대 위촉강사 강사로 수령 가부 .....	29-47
○ 개인회생절차 관련 전세자금 회수가부 .....	29-48
○ 군 발행 간행물에 투고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원고료 지급 가부 ..	30-127
○ 해군사관학교 교수 산학협력단 연구비 수령 가능여부 .....	32-72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한 재심사·재산정 요구 가부 .....	32-89
○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여부 ...	32-93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의 의미 .....	32-97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법률관계 .....	32-99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 .....	32-108
○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호비 산정시점 .....	32-119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시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경우 .....	32-122

## 7. 병역

### 가. 총칙

○ 6년 이상의 자유형 선고와 병역의무 .....	15-136
○ 역종 변경 .....	6-69
○ 예비역 하사관을 제1국민역으로 역종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16-76

○ 제적자의 역종 부여 .....	6-71
○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자격 있는 자의 예비역 장교 편입 및 복무기간 ...	16-79
○ 제대 후에 복무할 역종 .....	1-141
○ 국토건설원의 역종 관리 .....	7-96
○ 역종 구분 .....	10-39
○ 이중병적자 처리 .....	2-40
○ 학도 입영군사훈련필자에 대한 병적사항 등 .....	2-96
○ 이중병적자의 병적정리 .....	4-50, 6-74, 7-87, 14-61, 15-166
○ 사관학교 중퇴자의 병적관리 .....	6-62
○ 병적누락자의 처리방안 .....	6-68
○ 제적자의 병적관리 .....	7-100
○ 병적정정 .....	10-76
○ 역종정정 .....	10-38
○ 입영전 및 입영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된 예비역 군종장교후보생의 병적관리 .....	10-85
○ 해외이주 허가 취소와 보충역 편입처분의 효력 .....	15-150
○ 여자 현역복무지원자 지원 취소 .....	5-73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의 전역시 역종부여 .....	2-88, 6-79
○ 학도의용군으로 종군한 자의 예비역 편입 .....	6-63
○ 주재국 거주 영주권 소지자의 병역의무 .....	15-145
○ 외국시민권 취득과 병역의무 .....	2-90
○ 외국국적 취득과 병역의무 .....	10-81
○ 외국국적 취득자의 대한민국국적 상실시기 .....	16-75
○ 하사관이 장교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경우 병적처리 .....	1-140
○ 현역병 입영영장이 취소된 제1보충역의 복무연차 .....	7-85
○ 단기하사 복무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 .....	19-101
○ 육군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 .....	20-252
○ 전투경찰대설치법상 현역병으로 징집결정된 자의 범위 .....	20-253
○ 의무경찰에 대한 해·공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적용 .....	20-255
○ 국정회복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	21-249

- 인턴과정 수료후 군전공의요원시험에 합격한 자의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 21-251
- 군의·치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전 신체검사 및 역종분류 ..... 22-37
- 공익근무요원을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활용할 수 없음 ..... 22-38
-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소년범)에게 병역의무 부과시 적용할 형기 23-43
- 임용취소 된 하사관의 보충역 편입 여부 등 ..... 23-47
- 미호적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여부 ..... 24-98
- 개정 병역법 제71조의 적용범위 ..... 25-74
- 사법시험합격자를 5급 공채시험 합격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5-86
- 신학대학 영어교육과 학생이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 ..... 25-88
-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 인정 기준 ..... 25-89
- 국외에서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병역법상의 병역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6-117
- 보충역에 해당하는 퇴교자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면제 가능 여부 ..... 29-35

#### 나. 징병검사

- 징집 입영한 자의 제적과 징병검사 ..... 7-90
- 신체검사 체격등위 판정 ..... 11-103
- 현역복무지원과 종전의 징병처분의 효력 ..... 2-95
- 국방부 내규인 신체검사규칙의 성격 및 효력 ..... 16-77
- 개정된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의 적용시점 ..... 21-257
- 공중보건 의사에게 적용될 신체검사규칙 ..... 23-4
- 군병원정밀신검 의뢰시 군병원장의 신체등위판정권한 ..... 24-97
- 장병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재검 ..... 25-84

#### 다. 현역입영

- 군대의 영의 개념 ..... 2-104
- 현역병의 사법연수원 입교 가능 여부 ..... 15-163

- 현역 복무기간 연장 요건으로서의 전시·사변의 개념 ..... 2-81
- 복무기간 기산시기 ..... 1-143
- 입·제대 일자의 군복무기간 산입 ..... 15-132
- 2중병적자의 복무기간 합산 ..... 2-112
- 방위병 복무기간의 현역병 복무기간 산입 ..... 15-133
- 사관학교 2년 중퇴자의 현역 복무기간 계산 ..... 3-122
- 사관학교 후보생 교육기간의 복무기간 환산 여부 ..... 8-103
- 현역병 입영처분의 철회가능여부 ..... 17-69
-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었다가 현역으로 편입된 자의 병적상 입대일자 ..... 19-87
- 금오공고 퇴교자의 미회수 변상장학금의 회수책임 및 소멸시효 ..... 22-39
- 병역법시행령 제28조가 병역법 제19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22-40
- 병무비리로 인한 보충역처분 취소시 복무기간 ..... 24-100
- 보충역 입영대상자가 현역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 현역병 병역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82
- 입영신체검사 후 의무사관후보생의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27-109

## 라. 소 집

- 보충역과 균형법의 적용 ..... 6-87
- 보충역의 방위소집 활용 ..... 10-86
- 단순 노무제공을 위한 방위소집 ..... 15-64
- 방위병 과건에 관한 질의 ..... 13-60, 14-31, 16-86
- 방위병의 개인화기 ..... 15-144
- 방위병에 대한 신체검사와 소집해제 ..... 14-72
- 해외이주가 허가된 자의 방위소집해제 ..... 14-74
- 집행유예를 받은 자의 전가족 해외이주와 방위소집해제 ..... 16-90
- 방위병의 재영복무 ..... 15-161
- 부상방위병의 가료비 지급 ..... 16-87
- 근무연습 소집자에 대한 조발시행 여부 ..... 10-90
- 근무연습 소집의 근거법규 ..... 15-155
- 근무소집중 구속된 자의 근무소집 해제 ..... 1-135

○ 근무소집 기피자의 재소집 .....	3-119
○ 근무소집 연기사유 .....	5-75
○ 근무 또는 연습소집중에 있는 자를 대간첩작전에 종사시킬 수 있는지 여부 .....	5-90
○ 외항선 선원의 근무 및 연습소집 면제 .....	7-72
○ 근무연습 소집과 휴직 등의 관계 .....	15-152
○ 전문분야 예비역 장교의 소집 .....	11-49
○ 전시 등에 있어서 법무장교 소집 .....	7-83
○ 특수직 위관 충원 .....	5-87
○ ROTC 훈련생의 보충소집 .....	6-65
○ 예비역 하사관의 전시 보충소집 .....	15-134
○ 전시 현역복무를 마친 병의 충원소집 .....	8-102
○ 전투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지 못한 귀휴병의 소집 .....	10-82
○ 중복된 신분의 정정방법 및 교육소집을 병역법에 의한 소집으로 볼 것인지 여부 .....	13-24
○ 방위소집 면제자에 대한 전시 방위소집 .....	15-147
○ 예비역 장교후보생 신분으로 군병과학교에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	15-62
○ 근무연습 소집에 있어서 “입영기일”의 의미 .....	16-81
○ 교육소집 불참과 보충교육 .....	16-82
○ 긴급사태 발생시 동원령 선포 이전의 소집 및 동원 .....	16-83
○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방위병의 구속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17-72
○ 방위병의 취업가능 여부 .....	17-75
○ 방위소집중인 자의 특수전문요원 교육과정 편입 .....	18-105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사유 .....	17-82
○ 흠 있는 입양과 보충역 편입처분의 효력 .....	17-83
○ 전시근무소집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처우기준 .....	17-86
○ 국방부 근무 방위병의 보호방위병 소집해제 .....	21-253
○ 면사무소에 과건근무중인 방위병에 대한 지휘·감독권 .....	21-265
○ 방위제도 폐지 후의 장기대기 방위병에 대한 방위소집 면제처분 .....	21-276
○ 보충역이 훈련소집 중 공무상 입원시 소집훈련기간에 포함 여부 .....	29-34

#### 마. 병역의무의 종료

- 35세 초과된 입영기피자의 징병의무 ..... 7-94
- 단기복무하사에서 중사로 특진된 자의 전역후 예비역 복무기간 ..... 8-95
- 병으로 입영하여 하사관으로 특진된 자의 예비역 복무기간 ..... 15-182
- 현역병의 구속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17-73
- 연령정년규정의 개정과 예비역 병역의무 종료시점 ..... 18-100
- 단기사관학교에서 퇴교된 자의 교육기간과 병의 복무기간 ..... 19-89
- 장교, 준사관, 하사관이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적에서 제적되는지 여부 ..... 19-94
- 제한연령초과로 인한 의무사관후보생의 제적 ..... 20-243
- 장기근무이탈자의 군인 신분 보유 여부 ..... 22-41
- 전시특례상의 병역의무 종료시점 ..... 24-103
-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투경찰의 제2국민역 편입 가능 여부 ..... 24-104

#### 바. 병역의무부과의 특례

- 전투경찰대원의 신분 ..... 10-79
- 전투경찰대원 추천자의 기초군사훈련중의 신분 ..... 15-92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 제3항 “징집이 결정된 자”의 의의 ..... 13-147
- 해양경찰대원의 의병 전역 ..... 15-158
- 석탄광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보충역 편입 ..... 11-101
- 군수업체 지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병역특례의 효과 ..... 13-61
- 특례보충역의 해외이주 ..... 15-154
- 방위병의 소집기피나 복무중 이탈이 복무기간 단축혜택에 미치는 영향 ..... 15-160
- G.P 근무병의 복무기간 단축의 절차 ..... 15-165
- 사관학교 중퇴자의 사관학교 재학기간의 성격 ..... 19-97
- 장남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분가한 경우의 병역면제 ..... 19-99
- 1년 이상 국내 체재한 국외 영주권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등 ..... 22-42
- 가족 이민과 공익 근무 요원 소집해제 ..... 23-45
-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처분변경시 적용 부령 ..... 25-78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 32-80

## 사.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재학자 징집연기 ..... 6-75
- 휴학자의 복학과 징집연기 ..... 1-137
- 2인 이상 전사로 인한 징집연기 ..... 6-57
- 가사에 의한 징지연기 ..... 7-98
- 가사사정으로 인한 징집연기 및 복무단축 ..... 5-77, 9-83
- 부양능력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 ..... 6-67
- 병역미필자로서 자수 신고한 자의 징집연기 ..... 7-97
-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의 징병검사 연기 현역 입영 ... 9-95, 8-98
- 예비역 무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장의 징·소집 연기 ..... 9-86
-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입영 연기조치의 위법 여부 ..... 2-111
- 병역법상 독자의 해석 ..... 2-113, 5-63, 5-68, 5-70, 5-86, 6-89, 7-93
- 부재선고와 독자여부 ..... 16-89
- 법의 부자와 현역 복무기간 단축 ..... 3-127
- 무죄판결과 복무기간 단축 혜택 제한 ..... 5-82
- 독자·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인한 현역기간 단축 ..... 7-70, 7-77, 7-78
-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예비역 하사관의 전역 ..... 15-137
- 전투경찰 순경의 복무기간 단축 ..... 12-107
- 방위소집해제 사유로서의 전가족 해외 이주 ..... 15-141
- 방위소집해제 사유로서의 생계유지 곤란 ..... 15-143
- 병역법상 전 가족의 정의 ..... 7-101, 11-99
- 과월사병의 의가사 전역 ..... 3-123
-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면제 ..... 12-120
- 군기술 위탁생 출신 하사관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면제 ..... 14-66
- 2대 이상 독자의 방위소집 면제 여부 ..... 6-59
- 특수전역 ..... 6-60, 6-64, 7-92, 8-99, 9-93
- 현역병의 특수전역시 역정 판정의 증거법 ..... 7-80
- 현역장교 병적 편입자의 가사사정에 의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15-148
- 방위병의 소집기피나 복무중 이탈이 복무기간 단축혜택에 미치는 영향 ... 15-160

- G.P근무병의 복무기간 단축의 절차 ..... 15-165
- 사관학교중퇴자의 사관학교 재학기간의 성격 ..... 19-97
- 장남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분가한 경우의 병역 면제 ..... 19-99
-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 ..... 29-33

#### 아. 특 전

- 재영기간중 직장 보장 ..... 1-132
- 입영기피후 자수한 자의 고용원 임명 ..... 2-84
- 병역미필자의 해고 ..... 2-91
-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한 자의 장교 임용문제 ..... 3-118
- 병역의무자의 공무원 임용 ..... 6-56
- 1928년 출생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취직제한 등 ..... 2-89
- 군기술위탁생의 임용과 휴직기간 ..... 15-156
- 학적보유가 가능한 복무형태 ..... 15-157
- 은행원 승진시험자격과 병역법 제76조(불리한 처우금지)와의 관계 ... 7-30
- 병역기피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처벌 ..... 9-88
- 병역기피로 인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임용제한 ..... 11-108
- 병역법상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처분 금지 ..... 13-64
- 군복무후 복학보장 ..... 18-109
- 초등학교 교원으로서 의무종사와 권익보장 ..... 18-110
- 교사경력산정시 병 및 하사의 복무기간 합산 ..... 20-60

#### 자. 병무행정

- 병역미필자 해외출국시 신체검사 기준 ..... 7-84
- 행방불명자 처리 ..... 1-133, 10-88, 12-126
- 군번부여 전 사망자의 처리 ..... 2-85
- 병무행정 수행상 필요한 경찰서장의 협조의무 ..... 3-125
- 병적확인서 발급 ..... 6-66
- 병역의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 6-83
- 병역기피사실 확인 ..... 7-66

○ 병무심사위원회 성격 .....	7-88
○ 특수현역면제자의 증명서 발급 .....	8-96
○ 무관후보생의 해외여행 .....	13-59
○ 병역확인 .....	2-86
○ 지정의료시설 운영 .....	5-81
○ 징병처분변경원 처리 .....	7-91
○ 장교에 대한 6년 이상 형 선고시 병적 .....	18-79
○ 수개선고형의 형기합계가 6년 이상인 경우의 병적 .....	18-81
○ 집행유예 선고받은 현역병의 보충역 편입 .....	20-237
○ 국외여행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17-90
○ 병역법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의 효력 .....	20-248
○ 예·체능분야의 특기자의 국외여행 허가 .....	19-96
○ 국외이주로 보충역 편입되었다가 복무중인 자에 대한 보충역 재편입 .....	20-245
○ 국외이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 및 재취소 .....	21-262
○ 출국, 입국행위를 되풀이한 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	20-246
○ 국외여행중에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보증인 (모에 대한 친생자 관계에 대하여 소송중)의 대체가능 여부 .....	22-43
○ 병역법시행령상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의 의미 .....	22-44
○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해 개별입영 도중 사망한 사람의 신분 .....	23-46
○ 군종장교 임용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	25-76
○ 병역법 부칙 제5항(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	26-118
○ 보충역 교육소집기간 조정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27-111
○ 무관후보생의 전역처분 .....	28-98
○ 공군사관생도 심신장애전역 판단 기준 .....	28-101
○ 신체검사시(-에이즈검사-) 동의 여부 .....	28-102
○ 병무청의 과오로 현역병 입대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	30-111

## 차. 별 칙

○ 대리로 입대한 자의 신분 및 처벌 .....	1-146, 7-65, 9-92
○ 병역법상의 과태료 .....	1-194

- 국외여행 병역의무자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2-87
- 고시합격자의 징·소집 불응에 대한 고발조치 ..... 2-109
- 입영기피죄 성립여부 ..... 4-70
- 병역기피자 공소시효 ..... 5-84
- 수호의 징병검사 불응과 죄수 ..... 5-91
- 병역법위반죄(징병검사기피 및 입영기피)의 성립여부 ..... 6-72
- 미귀국 병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 11-113
- 병역법상의 과태료 결손처분 ..... 14-75
-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고발 ..... 6-76
- 재복무지원자의 입영불응 ..... 5-72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중국적자의 미귀국시 처벌 ..... 18-114
-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후 재복무통지에 불응한 자의 처벌 ..... 21-279
- 병역법 제90조 제1항의 ‘지정기일’의 의미 ..... 22-45
-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질의 ..... 24-106
- 귀국보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가능한지 여부 ..... 25-73
- 모집에 의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권 행사 여부 ..... 25-80

## 8. 예비군

### 가. 임 무

- 예비군 지원자의 복무의무 ..... 6-83, 17-93
- 직장예비군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김포공항 경비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9-110
-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 업무 수행 가능성 ..... 31-122

### 나. 조직과 편성

-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의 연령계산법 ..... 8-93
- 직장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의 범위 ..... 9-91
-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의 범위 ..... 15-177

- 수형인에 대한 향토예비군 편성과 대원신고의무 ..... 15-189
- 수임군부대장의 예비군지휘관 임명행위의 효력 ..... 16-94
- 장교로 임용된 예비역 하사관의 직책변동과 신분 ..... 16-96
- 예비군 지휘관 임명행위의 효력 ..... 18-119
- 직장예비군부대장의 보직발령순위 ..... 20-260
-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경우 해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105
- 직장예비군 부여단장으로 임명된 자에 대한 퇴직규정 적용 ..... 20-263
-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정년과 직원정년의 관계 ..... 20-265
- 향토예비군설치법상 거주지의 의미 ..... 20-257
- 서울시 지하철 직장예비군 부대편성 ..... 20-259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29-7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 ..... 29-8
-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정년 ..... 29-10
- 직장예비군의 통합 편성 ..... 29-18
-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동일계열 전보 ..... 29-20
- 통합직장예비군부대 편성 및 본부직원의 소속 ..... 31-36
- 퇴역여군의 역종변경 가능성 ..... 31-161
- 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대원 해당성 ..... 32-50
- 전시 전방군단 향방예비군 운용 ..... 32-77

**다. 동원**

- 향토예비군 동원절차 ..... 5-64
- 향토예비군 동원 ..... 6-85
- 예비군동원 대상자 ..... 6-88
- 관할 육군사단장의 명의를 아닌 예하단위 부대장이 발행한 교육훈련소집통지서의 효력 ..... 9-78
- 향토예비군 대원의 동원유예사유 발생시 그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9-80

- 군부대의 군속에게 예비군동원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할수 있는지 여부 ..... 9-82
-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자의 범위 ..... 9-87
- 국외 영주권을 얻은 자(병역면제처분자)의 예비군 편성 ..... 9-87
-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이(경찰서 관할하의)  
동원훈련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 12-142
- 동원훈련 보류대상자의 범위 ..... 15-179, 15-180
- 형집행정지와 예비군대원의 동원 및 훈련연기 사유 ..... 15-190
-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절차 ..... 15-192
- 향토예비군 동원 요건 ..... 16-93
- 병력동원훈련 소집불참자에 대한 훈련재소집 ..... 20-256
-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보류 ..... 24-108
- 작전동원업무의 이관 ..... 27-113
- 동원보류 대상자 ..... 32-86

#### 라. 훈 련

- 직장에 고용된 향토예비군 대원의 교육훈련 시간과 고용기관의 근무시간 ..... 9-73
-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여부 ..... 9-139
- 형집행정지중인 자의 예비군교육훈련부과 ..... 17-94
- 국민투표기간중의 향토예비군훈련 ..... 17-96, 18-122
- 예비군훈련면제기간중의 회사출근의무 ..... 17-97
- 직장예비군에 대한 비근무시간의 교육훈련 ..... 17-98
- 국적회복자에 대한 국적상실전 훈련의무부과 ..... 18-121
- 소집면제된 보충역에 대한 훈련과 병역법상의 교육소집 ..... 19-112
- 사법연수생이 방침보류대상인지 여부 ..... 31-77

#### 마. 소집통지서

- 예비군 대원의 교육소집을 위한 소집통지서 발부권자 ..... 8-100
- 예비군훈련 교육소집통지서 발급의 위임 ..... 16-95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제3항의 ‘거주지 이동’의 의미 ..... 19-108
-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앱)을 통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발송 ..... 31-108

## 바. 무 장

- 어선단 예비군의 무장 ..... 7-67
- 예비군이 무기를 휴대하여 국가중요산업시설을 경비할 수 있는지 여부 ..... 12-137

## 사. 원호 및 가료

- 임무수행중인 향토예비군 대원에 대한 의료기관 지정 ..... 11-109
- 동원 또는 훈련중이 아닌 예비군의 사고에 대한 보상 ..... 16-100
- 사망한 대리훈련자가 원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16-64
- 예비군대원이 스스로 부단함 가료비에 대한 보상여부 ..... 17-102
- 향토예비군 대원에 대한 가료비의 부담 ..... 17-105
- 향토예비군이 임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경우의 비용부담 ..... 19-107
- 예비군중대장이 교육중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17-107
- 전투경찰 순경으로 예비역에 편입된 자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원자격 유무 ..... 17-178
- 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 30-117
- 예비군훈련 중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금의 각 지급기관 ..... 31-189

## 아. 직장보장

- 비번시간에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당일 근무를 계속시키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 9-81, 12-139
- 고용주의 동원훈련소집중에 있는 향토예비군 대원에 대한 일당 지급 ..... 10-95
- 동원 또는 훈련의 경우 임금 및 직장 보장 ..... 13-87
- 일용인부도 피고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15-184
- 예비군훈련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불지급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여부 ..... 16-99
- 직장예비군대원의 입원가료기간중 임금지급여부 ..... 17-100
- 예비군훈련 중 부상 후 자의로 민간병원 진료받은 경우 휴업보상금 지급 가부 ..... 31-167
- 「예비군법」 제10조 직장보장 ..... 32-84

## 자. 실비변상

- 집체교육중인 자의 임금지불 여부 ..... 6-55
- 일일노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으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 임금지급여하 ..... 13-88
- 비근무시간중의 예비군교육훈련과 임금지급 ..... 18-123

## 차. 병역법과의 관계

- 방위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한 향토예비군 훈련실시 ..... 9-71, 10-96

## 카. 권한의 위임

- 예비군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 13-91
- 무기, 탄약 등 관리유지권 위임 가능 여부 ..... 14-89

## 타. 벌 칙

- 향토예비군 훈련 불응자에 대한 처벌 ..... 9-85, 11-117
- 향토예비군의 거주지 이동 불신고에 대한 처벌 ..... 13-89
- 교육시 예비군대원의 복장위반과 형사처벌 ..... 16-97
- 직장예비군대원이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가능 여부 ..... 17-108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거절 행위의 처벌 근거 ..... 17-109
- 훈련을 받지 아니한 향토예비군대원의 처벌 ..... 18-124
- 동원훈련중 군부대를 이탈한 예비군에 대한 처벌 ..... 21-274
-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훈련통지서 전달의 효력 ..... 24-112

## 파. 기 타

- 전사한 향토예비군의 고진급 및 제적 ..... 6-81
- 예비군 대원의 교육소집을 위한 소집통지서 발부권자 ..... 8-100
- 향토예비군 중대자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입후보시 사퇴여부 9-140
- 향토예비군 중대장의 퇴직금 청구 ..... 15-181
-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성질 ..... 15-186
- 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협의회와의 관계 ..... 24-111
- 향방동원된 예비군을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25-85

-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 지원 관련 감사의 주체 ..... 31-57
- 직장예비군대대장의 복무종료(근속기간, 정년) 관련 ..... 31-142
- 예비역 간부 진급에 있어 퇴역 연령 기준일 ..... 31-159
- 전시 예비역 간부의 병역의무 연장 ..... 32-29

## 9. 학생군사교육

- 학적보유자의 인사처리 ..... 10-76
- 학생군사교육 이수자 재영기간 단축 ..... 10-77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임관되는 예비역 장교의 임용시기 연장 ..... 10-78
- 학생군사교육과 방위병 및 전투경찰대원 복무단축 ..... 15-131
- 전투해경요원의 귀휴기간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9조 제3항의 재영기간단축적용 여부 ..... 12-112
- 교육법시행령 제150조 제3항의 소급적용 ..... 12-114
-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2부에 재학중인 학생의 예비역 장교후보생 지원 및 선발 ..... 12-117
- 일반군사교육 대상자 중 심신장애자의 처리 ..... 13-29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동 시행규칙 개정(학적변동학생처리) 이후 문제점 ..... 12-128
- 일반군사교육 학점 취득 ..... 12-131, 13-111
- 일반군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제출처 ..... 13-112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9조 복무단축 기간 ..... 13-113
- 학생군사교육의 재수강 ..... 13-114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 소정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의 의의 ..... 14-113
- 예비 역무원의 보충소집 연령 ..... 14-115
- 군의료시설이 학생군사교육령의 시행규칙 소정의 의료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 14-115
- 예비역 무관후보생이 학생군사교육을 이수한 후 현역 장교로 임용될 경우 복무기간의 단축대상이 되는지 여부 ..... 14-118
- 사면으로 복학된 자의 일반군사교육 이수자로서의 복무기간 단축혜택 ..... 15-218

- 군사원호대상자의 범위 ..... 15-220
- 군사교육 이탈자의 범위 ..... 15-222
- 정확처분과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병적관계 ..... 15-223
- 학군무관후보생 교육용 무기의 관리·수송책임자 ..... 20-145
- 여학생 ROTC 장교 선발시 의무복무기간 ..... 25-75
- 군장학생 선발취소 ..... 25-129
- 여자 학군후보생이 장교로 의무복무하는 기간 동안 교원으로 임용을  
유예하거나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30-89
- 공군장학생 출신 조종장교의 장학금 반납 여부 ..... 30-114
- 군장학생과 군사교육 ..... 31-25
-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32-114

## 10. 연금

### 가. 총 칙

- 전몰군경의 정의 ..... 1-115
-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범위 등 ..... 1-125
- 순직해당 여부 ..... 2-65
- 군인연금법상 공무원의 개념 ..... 8-73, 9-57, 3-104
- 기여금 반환의 이자계산 ..... 6-49
- 향토예비군의 지역중대장, 임시고용원의 군인연금 수급권 ..... 8-75
- 애국청년단원의 임무수행중 사망도 전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8-89
-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재정의 성질 ..... 15-124
- 공무원재직기간의 군복무기간 통산여부 ..... 17-113
-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군복무기간 ..... 17-114
- 하사관후보생 교육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18-129
- 미군부대 고용원 근무경력과 공무원 경력 ..... 19-46
- 전공사상처리기준 ..... 17-120
- 장관급 장교에 대한 전·공상심사위원회 구성 ..... 20-107
- 파면되어 제적된 자의 공상해당 여부 ..... 18-134

○ 불명예 전역자의 전공상 해당여부 .....	18-136
○ 전상해당자의 전역후 사망시 전몰해당여부 .....	18-138
○ 군인연금법의 적용시기 .....	19-117
○ 양 부모도 군인연금법상 직계존속인지 여부 .....	19-121
○ 사우디주재 무관과 전투종사기간 .....	19-122
○ 추서진급자의 보수월액결정 .....	20-125
○ 군인연금법의 개정과 휴직 또는 정직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21-91
○ 군인연금법상 유족인 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폐질상태의 기준시점 ....	21-127
○ PKO 파견요원의 근무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기간 .....	21-135
○ 하사관의 준사관후보생 교육기간중 기여금을 징수하였는바, 그 기간은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지 .....	22-27
○ 퇴역연금 지급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4년이 경과된 자의 상이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	23-40
○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	24-62
○ 국정상실자의 특례급여청구권에 관한 질의 .....	24-66
○ 소급기여금 사후징수에 관한 질의 .....	24-71
○ 임시계급진급자의 퇴직급여 산정기준 .....	24-77
○ 군인연금법상 유족승계 가능 여부 .....	25-60
○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계산 .....	25-61
○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의 적용대상자 .....	26-87
○ 국가패소에 따른 재처분시 소멸시효 주장 가부 .....	31-169

## 나. 급 여

○ 연금소급지급 .....	11-83
○ 연금수급권의 압류 .....	1-102, 3-106
○ 군인연금법상 구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수급권의 시효 .....	1-99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의 공무상 질병, 부상 및 사망 .....	1-104
○ 연금법 중 재정업무규정 .....	2-74
○ 유족이 없는 군인사망급여금의 사용 .....	9-38

- 군인연금 환불에 있어서의 이자가산 여부 ..... 13-52
- 강등된 자가 다시 진급된 경우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계산 ..... 1-98
- 상사로부터 준위로 진급과 동시에 전역된 자의 연금지급 ..... 1-100
- 군인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 ..... 10-67, 11-94
- 무죄선고와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 계산 ..... 15-110
- 무관후보생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 산입 가능 여부 ..... 13-47, 5-59
- 연금의 지급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의 처리 ..... 18-130
- 6·25 당시 예비역 사관으로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 산정 ..... 21-123
- 공상관련 비보험급여부분 지급방안 ..... 24-64
- 군인 연금 급여종류 변경 신청 ..... 31-192

#### 다. 퇴역연금

-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 2-74
- 재심판결에 의하여 무죄확정된 자의 퇴직연금수령권 여하 ..... 13-51
- 30년 이상 복무자의 퇴역연금 지급률 ..... 15-122
- 연금지급정지기간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급받은 퇴역연금을 지정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119
-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 20-118
- 실종선고취소된 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여부 ..... 22-28
- 퇴역연금의 재정시 처분청의 잘못으로 복무기간을 일부 누락시킨 경우 직권정정할 수 없음 ..... 22-29
- 군인연금수령자의 유죄확정시 기지급연금의 환수가부 ..... 22-30
- 퇴역연금 소급지급시 이자가산여부 ..... 22-31
- 명예전역수당 산정시 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63
- 퇴직 후 소득 발생자의 연금정산 ..... 28-135

#### 라. 퇴직일시금

- 월의 중간에 진급과 동시 전역된 경우 퇴직일시금 지급 ..... 1-113
- 퇴직일시금 지급 해당여부 등 ..... 2-61

-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환경고용원의 퇴직금 산정 ..... 21-98
- 명예전역수당 지급시 현역정년의 개념 ..... 24-68
- 원계급복귀 전역자의 퇴직일시금에 관한 질의 ..... 24-75
- 진급일자에 전역한 자의 최종보수월액 결정 ..... 29-42

#### 마. 상이연금

- 전상자가 아닌 공상자의 상이군인연금 해당 여부 ..... 1-122
- 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 및 부활 ..... 17-115
- 퇴직일시금 지급받은 자에 대한 상이연금지급 ..... 18-132
- 하사관후보생 교육중 상이를 입고 임용된 자가  
상이연금수급권자가 되는지 여부 ..... 22-32
- 군인연금법상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의 의미 ..... 24-57
- 상이연금지급의 판단 기준시점 ..... 24-58
- 상이연금수급권이 소멸된자가 폐질 정도가 악화된 경우  
상이등급개정신청을 하여 다시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5-49
- 상이등급 개정 신청시 반드시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5-66
- 만기전역자의 상이연금청구 ..... 27-128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 여부 ..... 30-120
-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한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 31-184

#### 바. 유족급여

- 유족연금의 상계가능성 ..... 13-48
- 순직 후 지급받을 연금·상여금·조의금 등에 대한 모와 처의 상속비율 ... 12-84
- 유족 우선순위 ..... 12-103
- 친생모가 군인연금법상 유족이 되는지 여부 ..... 13-50
- 호적상의 처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간의 유족연금 수급권 경합 ..... 8-80, 13-46
- 자를 출산한 전사자 약혼녀의 사실상의 혼인관계 ..... 9-58
- 유족연금 지급 ..... 2-64
- 군인연금법상의 연금기간 기산일 및 급여제한규정 적용 ..... 2-67

- 중사로 추서된 순직한 단기하사의 유족연금 지급 ..... 9-39
- ROTC 피교육중 순직한 자를 장교로 고진급시킨 경우 유족연금지급  
가능 여부 ..... 13-55
- 유족일시금 지급 ..... 7-57
- 사망원인 정정의 경우 유족연금 지급 여부 ..... 17-116
- 순직자의 모가 친가로 복적한 경우의 유족연금 지급 여부 ..... 17-118
- 입양군인의 생조모 사망과 사망조위금의 지급 ..... 19-123
- 입양된 군인의 생부사망시 사망조위금 지급 ..... 20-120
- 입양된 군인의 친생모가 군인연금법상 유족인지 여부 ..... 21-108
- 사망군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전액수령한 보상금의 환수 ..... 20-121
- 제적된 군인의 가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 20-123
- 친가복적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20-127
- 유족연금수령권자가 유족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1-138
- 군인과 그 배우자 등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의 사망조위금 지급 .... 21-132
- 민법개정과 계모의 유족연금청구권 ..... 22-33
- 유족연금청구권의 시효 ..... 24-60
- 국가유공자등록거분처분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41
- 국적상실자의 유족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 25-68
- 군인연금법상의 유족 ..... 26-90
- 대법원판결과 상이한 유족연금지급결정의 취소여부 ..... 26-106
- 계모에 대한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 29-43

**사. 재해보상금**

- 군인재해보상금 지급 대상 ..... 15-125
- 교육 및 방위소집자에 대한 재해보상 가능 여부 ..... 15-120
- 군인재해보상금 지급요건 해당여부 ..... 3-110
- 군인재해보상규정 제6조 제2항의 해석 ..... 13-117
- 의병전역절차 진행중 정년전역하는 경우의 장애보상금 지급여부 ..... 17-119
- 장기제공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 20-113

- 병역동원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의 지급사무는 국가보훈처에 있음 ..... 22-34
- 명예전역 후 장애보상금 지급청구 ..... 27-131
- 의병전역자 정상전역시 장애보상금 지급 여부 ..... 29-41
- 재심의로 공상판정 받은 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 31-171

#### 아. 급여의 제한

- 전역 후 공무원으로 취업하였다가 퇴직한 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 10-66
- 연금수급권자가 공무원으로 취업된 경우 동연금 지급 ..... 1-107
- 이사 대우 이상의 촉탁 또는 고문으로 임명된 경우 연금 지급 정지분 ..... 15-107
- 잡급직원 채용과 퇴직연금 수급권과의 관계 ..... 15-119
- 전사편찬위원이나 촉탁이 된 경우의 연금지급 제한 여부 ..... 15-99
- 군인연금 지급제한 대상기관 ..... 15-101, 15-111
- 퇴직한 군인이 다시 군인 또는 공무원이 되었을 때의 연금처리 ..... 1-119
- 군인퇴역연금의 지급정지(향토예비군 중대장 임용) ..... 6-50
-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정지된 자의 연금 지급 ..... 1-112
-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 등 ..... 1-116
- 사상피의자로서 기소중 사망한 자의 군인사망급여금법의 적용 ..... 1-121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연금지급 ..... 2-67
- 제적자의 연금 수급(선고유예판결) ..... 7-56
- 군복무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급여제한 ..... 21-115
- 복무중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만료 전에 출감한 자의 연금지급 ..... 9-60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어 복무한 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 10-63
- 사병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하사로서 계속 근무하는 자에 대한 연금지급 ..... 10-65
- 연금지급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 ..... 15-118
- 형사사건으로 제적된 장교의 연금지급 ..... 11-85
- 연금지급 및 정지 ..... 11-87, 12-97
- 군인연금지급 제한기관 ..... 14-45

- 전쟁기념사업회의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해당 여부 ..... 24-82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용승계된 자가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인지 여부 ..... 24-84
- 연금지급정지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조치 ..... 25-65
- 군인연금법 제19조의3 ..... 26-78
- 연금제한시기의 기준이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 ..... 26-92
- 장애보상금 지연청구 시 지급가부 ..... 27-133
- 전역 후 퇴직급여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급여지급 여부 ..... 30-136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판단기준 ..... 31-194

#### 자. 기금의 조성

- 군인연금기금으로 매입한 재상의 처분 ..... 14-55
- 공무원 연금법상의 기여금 납부 등 ..... 1-118

#### 차. 보칙

- 퇴역연금지급에 있어서의 타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1-95
-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 26-82

#### 카. 기 타

- 퇴역연금수급자가 인사소청으로 전역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되었던  
급여의 회수 ..... 1-103
-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재정 ..... 1-109
- 퇴직자에 대한 소급 연금재정변경처분의 가부 ..... 21-129
- 퇴역연금수급권자 사망했을 시 이미 발생된 수급권의 승계 ..... 1-110
- 장기입원사병에 대한 전역특별급여금 지급 ..... 1-114
- 학도의용군과 연금법 적용 ..... 1-123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한 행위의 한계 ..... 1-124
- 중사 이상으로서 2년 미만에 전역한 자 등에 대한 연금 지급 ..... 2-72
- 군인연금기금의 예탁 ..... 15-126
- 제적후 복직된 자의 연금지급 ..... 15-69
- 제적된 군인의 공무원 재임용시 반환하여야 할 퇴직급여 ..... 21-93

- 복무연수를 채우지 못한 단기하사의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16-63
- 명예퇴직수당 압류 가능성 ..... 24-70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재직기간 합산 ..... 24-79
- 군인연금법상 구상권의 소멸시효 ..... 25-47
- 명예전역전 사망자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지급여부 ..... 25-51
- 전투근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정 ..... 26-75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투근무기간의 계산) 관련 ..... 27-136
- 상이연금청구에 대한 잘못된 각하 ..... 27-139
-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한 학자금 대부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대부금을 회수 가부 ..... 30-140
-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국직기관 전문계약군무원 포함 여부 ..... 31-204
- 대출 협약서와 급여 수급계좌 선택권 ..... 32-117

## 11. 보훈

### 가. 총 칙

- 민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군사원호보상 및 군인재해보상과의  
관계 ..... 15-104
-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시행에 있어서 국방부장관과 보훈처장간에  
생기는 책임한계 및 감독권 행사 ..... 3-24
-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사실확인서의 효력 ..... 20-109
-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 25-55
- 서해교전 중 행방불명된 자의 전사일자 결정 ..... 25-59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보상금 수령권자 ..... 29-36
-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결정 ..... 29-37
- 사망한 국군포로의 상속인 ..... 29-92
-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인용 재결에 따른 조치 ..... 31-165

## 나. 대상 및 사유

-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된 자”의 의미 ..... 15-95
- ROTC 대학생 야영훈련중 부상자 대우 ..... 5-57
- 만기전역자가 군복무 당시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재발한 경우의  
군사원호보상 ..... 7-46, 9-62
- 군인사법상의 전공상(41조) ..... 7-47, 2-94
- 공상의 개념 및 공사상의 구분권자 ..... 15-102
- 동원된 예비군의 가료 ..... 7-49
- 공상범위 ..... 8-22
- 헌병의 구타로 사망한 피의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 8-77
- 입영 전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전공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8-41
- 과월재해보상금 수급권 ..... 8-78
- 현역병 징집시 입영부대 도착전 집결지에서 사격중 사망한 자에  
대한 군사원호보상법 적용 ..... 8-85
- 군사원호보상법상 공무상 질병의 발병원인 ..... 9-55
- 향토예비군 중대장이 귀가 후 신경성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원호대상자 해당 여부 ..... 9-67
-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지급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원인 ..... 9-66
- 보충역으로서 군부대에서 방위소집교육중 사망한 자의 원호 ..... 10-68
- 연습훈련중 부상한 향토예비군이 응급치료후 귀가했으나  
이후 재발한 경우 치료혜택의 가능 여부 ..... 10-97
- 예비역 무관후보생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및 현역병적 편입 ..... 15-97
- 방위소집된 자가 전상 등 사유로 특수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군인재해보상금 지급 ..... 11-91
- 근무연습중(예비역) 이병, 질병, 사망, 재해의 경우  
군인연금법이나 재해보상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 12-81
- 장기적인 질병이 공무수행중 발생하였는바 여부의 판단기준 ..... 13-114, 14-50
- 전공상으로 인하여 의병 전역되어야 할 자가 행정착오 등을 이유로  
만기 제대되었을 때 상이군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4-69

- 대오를 이탈한 향토예비군대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원호가능 여부 ..... 14-91
- 국토건설단 건설원이 상이를 입은 경우 원호가능 여부 ..... 15-115
- 재학생의 입영중 상이에 대한 보상 ..... 16-65
- 공상해당자의 사망시 순직 해당 여부 ..... 18-140
- 공무중 발생한 질환으로 사망시 순직해당 여부 ..... 18-141
- 공무이탈상태에서 입은 상해의 공상해당 여부 ..... 18-142
- 군번 없는 참전용사에 대한 종군기장 수여 ..... 20-128
- 서해 훼리호 사고로 사망한 군인 및 군무원의 순직처리 ..... 21-87
- 동원훈련중 조기 귀가하다가 사망한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 21-89
- 파면·수형 등의 사유로 전역한 군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 21-141
- 6·25전쟁중 징용되어 사망한 철도종사원의 전사자 해당 여부 ..... 24-92
- 병 사망위로금 지급 가부 ..... 29-39
- 10·27법난으로 상이를 입은 자 중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 29-91

#### 다. 급 여

- 과월전사자의 사망급여금 지급 ..... 6-47, 7-52
- 사망급여금 지급 순위 ..... 7-59
- 사관생도 사망급여금 지급기준 ..... 8-83
- 군인사망급여금 지급대상자 ..... 8-87, 10-71, 31-174
- 주월한국군 재해보상금 차액지급 ..... 10-70
- 장교가 군법회의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원호혜택 여부 ..... 12-90
- 재해보상금지급대상 예정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의  
보상금의 지급 ..... 14-48
- 전역 전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 있는 자의  
보상방법 여하 ..... 14-52
-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자의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 31-182

## 라. 기 타

- 만기전역자로서 입원중인 원호대상자의 처리 ..... 15-113
- 귀순하여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상의 원호대상자 선정 여부 ..... 11-89
- 독립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제4조의 2와 동법 부칙  
제2조와의 관계 ..... 12-88
- 월남귀순자가 5년 이내 원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2-99
- 방위소집 필한 자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13-54
-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상의 제대군인 ..... 15-109
- 군무이탈자와 군사원호 혜택 및 병적처리 ..... 15-112
- 상이기장 수여사실에 대한 확인서 발급 ..... 16-146
-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상 귀순용사의 범위 ..... 16-147
- 현역용 의약품을 월남귀순용사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6-153
- 예비역에 대한 군병원 진료 ..... 18-235
-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 대한 조세감면 ..... 20-130
- 순직군인의 배우자를 무시험에 의해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2-35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 23-39
- 상근예비역에 대한 진료 제공 범위 ..... 24-40
- 군인보험 보험료중 국고보조금의 성격 및 용도 ..... 24-86
- 군부대의 민간에 대한 의료 지원시 법적 문제 ..... 25-43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 가료비를 교육소집훈련을 실시한 군부대장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45
- 행정심판 재결내용 및 효과 ..... 26-110
- 위폐봉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28-115
- 한국전쟁 중 미군 측에 귀순하였다가 반공포로로 석방된 자의  
참전유공자예우법 적용 여부 ..... 31-176
- 징병검사장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를 시행함이 타당한지 여부 ..... 31-197

## 12. 국가배상

### 가. 배상책임

-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이 기지공사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1-198
- 국가기관 상호간의 손해배상문제에 있어서 국가배상법의 적용 타당성 여부 ..... 3-29
-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액 ..... 3-38
- 배상책임 한계 ..... 4-94, 4-113, 5-147, 5-152
- 배상금 지급 결정 ..... 4-98
- 국가배상책임 유무 ..... 4-99, 4-103, 4-110, 5-120, 5-124, 5-141, 5-150
- 배상문제 ..... 5-119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중에 향토예비군중대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15-227
- 운동선수 재해 ..... 5-126
-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 ..... 5-127
- 국가배상책임 유무 및 과실정도 ..... 6-128
- 공무원의 직무 집행 ..... 6-130
- 외국군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7-118
- 제3자(피해자)를 대신하여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8-160
- 국가배상법 적용 대상 ..... 10-159
- 정책지정 광산으로 국가안보상 개방중지를 조치한 경우 등에 있어서 광산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가부 ..... 12-169
- 소집중인 방위병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 신청 가능 여부 ..... 12-175
- 군병원에서 수술한 자가 민간병원에서 동일병인에 대하여 재수술을 받은 경우 청구권의 전부 ..... 14-43
- 민간인이 군용기 탑승시 손해배상책임 ..... 19-205
- 군정비공장의 정비인건비와 손해배상 ..... 19-207
- 열차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 20-114
- 국방부 일반직에 대한 통근버스지원과 사고처리 ..... 20-116
- 국가배상금의 분리 또는 사전지급 가능 여부 ..... 24-189

## 나. 배상기준

- 월급여액 없을 시 배상액 산정 ..... 4-89
- 입원치료중 사망하였을 경우 요양비 산정 ..... 4-90, 4-92
- 유족배상 및 장애배상액 산정 ..... 4-95, 4-109, 5-133, 5-143, 5-146, 5-156
- 배상신청유무와 배상금 심의결정범위 ..... 5-129
- 배상지급 신청자의 범위 ..... 5-140
- 대체임금 조사방법 ..... 15-234
- 위자료 기준액 ..... 5-148
- 위자료 지급대상 ..... 6-123
- 병원당국의 요양비 청구 ..... 6-126
- 피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국가배상금 지급문제 ..... 6-134
- 피해보상금 지급 ..... 7-113
- 배상금(사용료) 지불 ..... 10-135
- 3개 부위 이상 신체장애자의 장애정도 평가방법 ..... 13-119
- 장례비인용 ..... 14-123
- 군차량사고의 피해자가 운전병과 합의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 여부 ..... 14-127
- 배상결정 후의 장해배상신청 ..... 16-141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보상 ..... 32-220

## 다. 외국인에 대한 책임

- 국가간의 상호보증 ..... 2-181
- 배상금 지급 ..... 5-139
- 외국인 개념 ..... 5-155
- 한·중국간의 국가배상법의 상호보증 ..... 6-119
- 중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7-114
- 한·미협약에 따른 주한미군의 피해복구청구 ..... 10-139

## 라. 절차(배상심의회)

-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절차 ..... 2-187
- 예산부족에 따른 국가배상사건 처리 요령 ..... 4-97

- 배상심의회 운영 ..... 4-106, 4-116
- 배상액 기준 초과금액 승인요청 절차 ..... 4-112, 5-136
- 국가배상법 적용문제 ..... 4-115
- 배상심의회 관할 ..... 4-116, 5-121, 5-137, 5-153
- 배상심의회 사무처리 ..... 5-123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중단 및 재심 ..... 5-131, 7-116
- 특별배상심의회와 지구배상심의회와의 권한관계 ..... 7-121
- 배상금지급결정 전 부동의된 사건처리문제 ..... 8-157
- 국가배상금 지급 후의 사정변경 ..... 8-158
- 손해배상금 지급절차 ..... 13-118
- 국방부장관의 배상심의회에 대한 지휘감독권 ..... 14-126

#### 마. 기 타

- 징발기간중 미군이 채석한 돌대금 지급 ..... 7-119
-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적용 여부 ..... 12-173
-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상채무 임의변제 ..... 14-124
- 국가배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15-229
- 예비군작전동원 및 교육훈련시 민간자동차 사용의 문제점 ..... 15-231
- 군수송기의 민간인 탑승 가부 ..... 21-153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 신청 가능 여부 ..... 24-185
- 국가배상을 위해 필요한 감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질의 ..... 24-187

### 13. 군용지취득

#### 가. 총 칙

- 징발재산중 소유자 불명시 민법규정의 적용여부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한 재산의 인계 ..... 9-104
-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대통령령의 적용대상 여부 ..... 9-105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이 도시계획법 제82조 소정의 도시계획을 목적으로 설정되었을 경우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12-145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특별조치령 해석(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 13-106
- 군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공특법) ..... 20-162
-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 ..... 20-170
- 국방부장관의 민통선 설정·변경권 ..... 20-204
- 사인도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 22-46
-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2007년 우리 군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 29-75

#### 나. 목적물(제한)

- 징발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매각처분 취소 ..... 1-176
- 징발토지의 지목변경 ..... 1-177
- 군이 점유사용중인 사유재산의 징발 ..... 1-189
- 군이 무단점유하는 토지에 대한 수용가능 여부 ..... 21-189
- 비상계엄 해제지역의 징발 ..... 1-191
- 선박소유 및 징발보상 ..... 4-83
- 징발재산의 교환 ..... 8-114
- 징발재산중 공유재산의 범위 ..... 10-117
- 징발된 임야상의 입목매수 ..... 10-118
- 민통선 북방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징발 ..... 12-159
-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이전에 수용·매수 또는 반환된 토지가 특조령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 13-104
- 착오로 매수한 징발매수토지의 처리 ..... 17-154
- 증권매수토지에 대한 이중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징특법) ..... 20-200
- 중복등기된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행사 ..... 20-202
- 일부공유자의 지분과 국유지를 교환할 수 있는지 ..... 23-49
- 공유지분과 국유지의 교환가능 여부 ..... 23-51

#### 다. 질 차(원상회복)

- 소유자 미확인 징발물 처리 ..... 1-178
- 재산권의 소유자를 착오하여 행한 징발의 법적 효력 ..... 9-103
- 대통령공고 제29호 제3항 중 “국방부장관의 고시지역의 범위” ..... 9-106
- 징발재산매수에 있어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매수행위의 효력 ..... 9-117
- 소송 계류중인 징발 보상금 지급신청서 처리 ..... 12-147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의 법리 ..... 17-151
- 전쟁기념탑 건립과 환매권 발생여부 ..... 19-161
- 해군기지조성사업과 환매권 발생(공특법) ..... 20-164
- 군병원 지휘관관사 신축과 환매권(공특법) ..... 20-166
- 환매기간내 환매대금 미납시 환매권 발생(공특법) ..... 20-168
- 환매권 소멸된 징발재산의 반환 ..... 20-181
- 징특법상의 환매통지의무 이행시기 ..... 20-183
- 판결선고 이후부터 이행시가지의 환매대금 이자가산(징특법) ..... 20-185
- 공공사업실시에 따른 환매권 생사의 제한 ..... 20-187
- 환매권 상실한 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19-166
- 특별조치령의 ‘중전의 상황이 종료된 날’의 의미 ..... 19-168
- 착오에 의한 협의매수와 환매권 발생여부 ..... 19-178
- 환매권 행사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21-170
- 징특법상 징발재산을 수의매수할 수 있는 지위의 양도 가부 ..... 21-181
- 군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특법상의 환매권 행사 여부 ..... 21-199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2의 해석 ..... 21-214
- 국보위특조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대통령령에 의거 수용된  
토지의 처리문제 ..... 22-47
-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징발재산의 수의매각여부 등 ..... 22-48
- 징특법상의 수의매각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국공유지 처분제한과의 관계 ..... 22-49
- 공특법상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때”의 의미 ..... 22-50

- 양여하기로 합의한 국가재산 중 환매권 발생이 예상되는 토지의 처리 ..... 22-51
- 징특별상 증권매수지를 상속인에게 수의매각하는 경우  
     제사주재자 1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22-52
- 징특별상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을 선지급하여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 22-53
- 분당, 일산 신도시 관련 양여가용금액과 대체시설비용의 정산가능 여부  
     또는 잔여 양여대상재산으로 대체시설과의 정산가능 여부 등 ..... 22-54
- 활용계획 없이 전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방위산업체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 환매대상이 되는지 ..... 22-55
-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환매권행사 가부 ..... 23-52

#### 라. 해 제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권으로 매수한 재산과  
     처분시 연고권을 부여하기로 법정화해한 재산의 매각 여부 ..... 12-183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매수통지 등을 누락한 경우  
     그 매수의 효과 ..... 14-108
- 징발된 토지반환과 매수대금 환수 ..... 20-180
-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 25-93

#### 마. 보 상

- 징발보상령에 의거 기보상한 보상액 재조정 ..... 1-180
- 징발보상금 부정지급 ..... 2-172
- 징발보상에 있어서 목적물의 확정 ..... 2-176
- 징발보상금 지급과 목적물의 변경 ..... 2-178
- 징발보상금의 수령자 확정 ..... 5-95
- 징발목적 없는 징발건물에 대한 피해보상 ..... 3-42
- 징발보상기간 기산 및 법인소유 재산징발후 그 주주교체에 따른 보상문제 ..... 3-159
- 원 조선주택영단의 자산 등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여부 ..... 4-84
- 소송계류중인 징발재산의 보상금 지급 ..... 8-109
- 토지구획정리지역에 편입된 징발재산의 매수 및 보상 ..... 8-110
- 징발공유재산을 병무청 청사부지로 부정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8-112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부칙 제2조(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기준) ..... 9-113
- 공유 징발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 ..... 9-116
- 징발 이후 보존등기를 필한 징발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 ..... 9-188
- 소송계류중 피징발자의 징발보상금 청구 ..... 9-121
- 불하된 재산의 보상기간 ..... 10-121
- 징발보상금 지급일 ..... 10-124
- 소유권이 인정된 미등기토지 징발보상금 지급 ..... 10-125
- 사기행위로 인하여 징발재산 매수대금을 착오 지급하였을 경우 국가채무의 소멸여부 ..... 10-128
- 징발토지가 후에 군에서 인위적으로 변형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의 보상관계 등 ..... 10-129
- 징발보상금 환수 ..... 11-127
- 징발보상금 과오불 환수에 따른 이자가산 ..... 11-135
- 소송계속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 신청 .... 11-196
- 귀속휴면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 ..... 11-140
- 농지계획법상의 상황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과오불 환수 .. 12-149
- 국방부에 징발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징발법 제23조에 의한 시효중단사유 여부 .... 12-151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 당시보다 환지후의 지적이 적어진 경우의 환매대금 ..... 12-153
-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처리 ..... 12-155
- 징발보상금 청구소송에 의한 가집행금과 징발보상채권과의 상계 .. 12-157
- 징발보상금 지급 ..... 12-166
- 징발재산에 대한 멸실보상 청구권 존부 ..... 13-103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 14-105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간 ..... 16-117
- 징발중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징발보상 ..... 3-163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 보상책임 ..... 17-169
- 비무장지대내의 사유재산의 보상여부 ..... 17-172
- 민통선 지역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 20-205
- 징발보상금 지급대상자 ..... 18-175
- 공공용지 협의취득시 보상금 지급시기 ..... 18-177
- 허가·신고·무허가 관행어업에 대한 손실보상 ..... 19-180
- 토지수용 재결과 대법원 판결의 효력상충관계 ..... 19-183
- 영농보상시 농축산물표준소득 산정방법(공특법) ..... 20-161
- 주한미군시설의 교외이전사업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 ..... 20-175
- 아산만 어업보상협약서(안) 검토 ..... 20-178
- 매수협의 성립후 보상금 미지급시의 법률관계 ..... 21-191

#### 바. 기 타

- 법령적용 범위와 분배농지 및 귀속재산의 징발보상 취급 ..... 1-182
- 징발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징발보상 ..... 1-186
- 징발지상에 군원공사 실시 ..... 1-188
- 노무자 징용 ..... 1-193
- 통신시설의 기능단위 징발가부 ..... 3-158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매수재산의 소유권 취득시기 ..... 15-215
- 개인이 징발중에 있는 귀속재산을 국가로부터 매수한 경우의  
징발사용료 지급 ..... 5-96
-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 18-183
- 어로한계선의 남하 축소 지정·고시 ..... 18-237
- 지방산업개발단지 사업자 지정 관련 질의 ..... 23-53
- 징발재산환매에 있어 피징발자의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  
지분처리 ..... 23-48
- 우선매수 통지 없는 경우 우선매수가 가능한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관련) ..... 23-55
- 국가가 상대방에게 교환으로 제공한 토지가 제3자의 소유로  
확정된 경우, 국가가 대상으로 토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등 ..... 23-56

- 징특별상 피징발자에게 징발한 토지를 우선매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106
- 용산기지 내 미군 임대주택부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용산부지에의 해당 여부 ..... 29-69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가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 ..... 29-76
- 부당이득금 반환의 근거 법률 ..... 29-78

## 14. 군 수

- 군수물자 불하 ..... 1-150
- 군수품관리 전환문제 ..... 2-118
- 군수품의 정의 ..... 2-119
- 군화 해체비용 지급의 합법성 여부 ..... 2-120
- 전비품에 대한 검사 및 전비품 손망실로 인한 변상판정 ..... 3-132
- 군수품구매 공급업무의 담당부서 ..... 6-95
- 군수품에 관한 불용결정 ..... 6-97
- 교환에 따른 금전의 보충지급 ..... 6-98
- 사관생도 피복지급 ..... 7-105
- 군수품의 구매공급 주관청 ..... 7-106
- 전비품 손망실 변상판정 ..... 7-108
- 군장품 조변 수의계약 ..... 8-120
-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자로부터 군용 통신전자장비를 납품받는  
경우 군수품관리법, 군용 전기통신법, 전자공업진흥법, 전자관리법  
적용 여부 ..... 10-205
- 석유류세 면세조치 ..... 11-145
- 군복및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 품목 ..... 11-147
- 조세감면 규제 ..... 11-149
- 주월한국군에서 인수된 방송장비를 한국방송공사에 인계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근거 ..... 11-150
- 군수품 구분 ..... 11-154

○ 군용장구의 범위(금속단추) .....	11-156
○ 손망실 처리 .....	12-182
○ 탄약생산군수업체가 원자재 고갈로 군이 비축한 탄약 등의 대여를 요청한 경우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12-205
○ 군공창생산품을 국방부장관이 외국회사에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13-123
○ 국방부장관의 군수물자 수출추천권 여부 .....	13-124
○ 불용폐품의 교환계약에 따른 채무이행보증방법에 관한 회계질의	14-143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연구기관의 개념 .....	14-146
○ 기념관전시용 6·25 전사품이 군수품관리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14-148
○ 장기계약에 있어서 “수년”의 의미 .....	15-239
○ 군수조달에 관한특별조치법상의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 .....	15-240
○ 군수품의 수출업체 무상대여 .....	15-241
○ 국방과학연구장려금 지급대상자 선발의 취소사유 .....	15-243
○ 군수품의 범위 .....	15-245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계약체결 군수업체 지정을 실무위원회가 위임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5-249
○ 군수사업 목적 .....	15-250
○ 전비품의 검사 .....	15-253
○ 군수품의 손망실처리 .....	15-255
○ 관세법상 군수품의 정의 .....	16-103
○ 군수품 교환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권 위임 .....	16-105
○ 연료바지선의 군수품 해당 여부 .....	16-107
○ 군용 유류를 관리전환할 수 없는 경우 .....	16-108
○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군수품을 불용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6-109
○ 국방품질검사소가 군수물자의 하자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7-129
○ 군수품인 유한수명품목의 처리방법 .....	17-131
○ 불요군수품의 교환 .....	17-132
○ 군수품교환시 가격결정 .....	19-147
○ 구형방독면을 무상대여하고 신형방독면으로 상환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19-148
○ 관급원단수득률 책정업무의 위임 .....	17-133
○ 군수품의 해외보관 및 포괄적 출납명령 가능 여부 .....	17-134
○ 군수품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양여 .....	17-136
○ 군수품 불용결정시의 장부가액 .....	18-171
○ 군수품의 대여 .....	18-172
○ 국산화 개발물품에 대한 구매의무 .....	19-150
○ 산림청·경찰청 등에 대한 군수품 지원과 상환 .....	20-139
○ 안경사 아닌 안경군납업자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	20-141
○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등 .....	21-233
○ 복수의 물품관리관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및 물품출납공무원의 인사명령권 .....	22-63
○ 정상적인 사용의 결과로 군수품이 훼손된 경우 손상실처리를 해야 하는지 .....	23-58
○ M1소총 탄약을 방산업체로 하여금 폐기하도록 할 수 있는지 .....	23-59
○ 군피복 현금판매의 적법성 여부 .....	23-60
○ 군 일용품 현금 판매의 적법성 여부 .....	23-63
○ 군수품으로 사용되는 승용차에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	23-64
○ 소총을 외국인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	23-65
○ 대학에 대여된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용 총기관리책임 .....	25-120
○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4조 해석 .....	25-123
○ 국방·군사시설사업자 지정 .....	26-140
○ 한국철도공사 전환과 여행장병안내소 시설의 무상사용 중지 여부 .....	26-145
○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축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해당 여부 .....	26-148
○ 외출·외박시 관용차 사용 .....	26-150
○ 일반직공무원의 군용승용차 운전 가능 여부 .....	26-152
○ 위성수신장비 외주정비 .....	26-154
○ 노후 건설공병장비의 불용결정 .....	26-156
○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에게 예비군피복을 소급지급할 의무 .....	26-158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술료 징수 유예·감면·면제 여부 .....	26-164

○ 정부부처에서 위탁관리 의뢰한 차량이 군수품인지 여부 .....	26-166
○ 군용항공기 관리·처분에 관한 적용 법률 .....	27-145
○ 불용품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	27-147
○ 군함과 민간선박 충돌 시 손해배상 합의의 최종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	27-149
○ 업체연구개발확인서 회수 가부 .....	28-143
○ 불용군수품 교환시 협의 여부 .....	28-148
○ 미군기지 철거 시 발생물건의 군수품해당 여부 .....	28-152
○ 차량운행 및 관리규정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	28-155
○ 물품관리법 제28조 “계약담당공무원” 의미 .....	28-160
○ 군수품관리법상의 교환 상대자 선정방법 .....	28-163
○ 육로 탄약호송 작전간 무기사용 가부 .....	28-167
○ 전투복 해외양도시 비군사화 작업 필요 여부 .....	28-169
○ 고무보트 및 고속단정의 무상양도 가부 .....	28-172
○ 기존 조합원의 미상환채무분담액 승계여부 .....	28-175
○ 불용장비 물물교환시 감정평가 수수료 .....	29-51
○ 육군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방위사업청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9-52
○ 군수품 유상양도 가부 .....	29-53
○ 불용 총기 교환 관련 법적 문제 .....	29-54
○ 의장대 행사복 무상 양도 가부 근거 법령 .....	29-56
○ 의장대 행사복 무상대여 가부 .....	29-57
○ 고단가 수리부속 불용결정 및 처리 절차 .....	29-58
○ 불용물품 압류 가부 등 .....	29-59
○ 군복 및 군용장구를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	29-60
○ 군수품 양도시 장관 승인 여부 .....	29-61
○ 부적합 소독약 하자처리 문제 .....	29-62
○ 군 상용차량 획득시 영세율 적용 가부 .....	29-63
○ 불용군수품 대여 가부 .....	29-64
○ 점유개정의 방법의 K9자주포 대여 가부 .....	30-144

- 국내 교육파견 장군에 대한 전용승용차 지원 가부 ..... 30-146
- 군수품관리법상 교환 해당여부 ..... 30-149
- 기준미달 전투화의 해외 수출 가부 ..... 30-151
- 군용표지가 없는 반합판매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 31-215
- 탄약대여 시 대여금액 산정 ..... 32-127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 32-130
- 경과규정 없는 개정된 훈령의 적용여부 ..... 32-135
- 이사회물 수송임 비용 ..... 32-137
- 금속제 모장이 단속대상인지 여부 ..... 32-139
- 불용군수품 매각 관련 검토 ..... 32-141
- 조약에 따른 군수품 불용결정 시 절차문제 ..... 32-143
- 군수품 교환계약 ..... 32-146
- 폐기된 탄약의 성격 ..... 32-153

## 15. 방위산업

- 방산특조법 제20조 제1항의 해석 ..... 17-137
- 외국인출자기업의 방산업체지정 ..... 17-138
- 일반업체의 군사용 장비개발 ..... 17-140
- 주요방산물자지정에 대한 방산실무회의 권한 ..... 20-147
- 소프트웨어가 방산물자인지 여부 ..... 20-149
-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수출하는 방산물자 수출업체 지정 ..... 20-152
- 완성품인 전차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의 효력 범위 ..... 21-158
- 군용항공기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 21-160
- 방산물자조달계약조정위원회의 지체상금면제 권한 ..... 20-154
- 장래 획득할 함정장착장비 생산에 대한 해군의 계약체결권 ..... 20-155
- 생산실적 없는 방산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징의행위제한 ..... 20-157
- 방산물자 조달시 적용될 환율의 결정시점 ..... 21-147

- 방산물자인 공군항공기의 정비시 군과 업체의 물량배분기준 ..... 21-149
-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에 관한 문제 ..... 22-64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당해연도 물량’의 범위  
22-65
- 개발확인서의 명의변경 가부 ..... 22-66
- 고무사출성형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시운전에 필요한  
고무재료를 개발하였는바, 군용물자의 개발계획 승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22-67
- 방산물자의 지정범위 ..... 22-68
- 천마체계 지원장비에 대하여 별도의 방산물자 지정이 필요한지 ..... 23-61
- 획득협회의 기종결정의 적법성 질의 ..... 23-62
- 시제합주계약업체 선정 이후 상세설계 및 건조업체를 경쟁입찰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 ..... 23-66
- 방산특조법 제20조의 2 적용범위 ..... 23-67
- 함정의 방산물자 지정 가능 여부 ..... 24-151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군용물자 연구개발 범위 ..... 24-154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상 방산원가 착오시 부당이득금 환수여부 ..... 24-159
- 수출용 방산물자 대여료 조정방안 ..... 24-161
- 노동조합 전임자/임시 상근자 급료지원 ..... 25-113
- 후속양산 기술도입생산사업 선행업무 ..... 25-116
- 방산보증기금 회수방안 ..... 25-117
- 군용폭발물(탄약)의 폐기에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 25-119
- 방산수출업 신고 수리여부 ..... 25-122
-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2조 제2항의 ‘업체자체 연구개발 희망업체’의  
의미 ..... 26-160
- 방산업체 지정 취소 ..... 26-162
- 운용시험평가계획작성기관인‘소요군’에 합참이 포함되는지 여부 .. 27-151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상 총사업비의 개념 ..... 27-154
- 신규업체의 업체투자연구개발 승인 ..... 27-158

- 과학화경제사업 위탁 집행 가부 ..... 29-55
- K-21 장비 대여기간 재연장 ..... 29-65
- 수출용 품목의 규격화 여부 ..... 29-66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판매 허가관련 .. 30-154
- 국방정보시스템 기술지원 분야를 별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30-157
- 방위산업 착수금 사용기간 산정 관련 ..... 31-217
- 국방규격 관련 업무 주체 ..... 32-178

## 16. 재 정

- PX의 원천세금징수 의무 ..... 1-159
- 포획선박 처리 ..... 1-160
- 관급원료 취급 ..... 1-161
- 예산부대조건의 해석 ..... 1-163
- 관세법상 고발의 효력 ..... 1-167
- 잉여관급원료의 처리 ..... 2-123
- 국고금 지불 ..... 2-124
- 나포관리 선박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소송비용지출 ..... 2-126
- 국가기관의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 2-130
- 주월군 귀국시 관세법상 신분 ..... 3-135
- 국군용 석유류의 면세대상 여부 ..... 3-137
- 공급계약위반과 지체상금 ..... 18-151
- 이행지체와 지체상금 부과 ..... 18-208
- 공사실적의 승계 ..... 18-155
- 국방·군사시설사업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 19-182
- 두채류장비인도후 매각계약체결시까지의 사용료 징수 ..... 20-143
- 성능미달된 침투성 보호의에 관한 계약책임 ..... 20-219
- 업체 자체 개발품의 국방규격과 관련한 채무불이행 책임 ..... 21-162
- 지체상금 부과 ..... 17-143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7-144
- 단가계약 예정이행량을 초과 납품한 경우 계약 이행 여부 ..... 21-238
- 계룡대 체력단련장이 자체수입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이 국제법상 계약인지 ..... 22-69
- 무인항공기(UAV)체계개발계약 지체상금면제 가능 여부 ..... 24-165
- 지체상금적용시 월 누적일수 계산방법 ..... 24-177
-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비용부담주체 ..... 28-180
-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감리비 분담 ..... 29-77
- 국방부가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 29-85
- 변제충당의 순서 ..... 29-89
- 복지기금을 통한 해군마트의 포인트 제도 운영의 타당성 ..... 31-178
-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대행기관과의 약정 관련 ..... 31-207
- 기부금품 사용 대상자 ..... 31-239
- 국가채권을 공시송달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 32-191
- 분할납품계약에서 지체상금 산출 여부 및 기준 ..... 32-193
- 용역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 여부 ..... 32-202

## 17. 예산회계

- 재향군인회가 예산회계법 규율대상인지 여부 ..... 16-70
- 영치금취급자의 회계직공무원 임명 ..... 1-151
- 심계원 변상판정에 대한 집행방법 ..... 1-151
- 국채반환 ..... 1-154
- 매매계약이 해체된 경우 계약보증금 반환 ..... 9-112
- 수의매각후 일부 해제시 계약보증금의 귀속 ..... 21-243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가격 제한과 계약해제 ..... 16-69
- 공사청부계약 해지 ..... 1-158
- 부정건설업자 처리 ..... 1-200
- 군납업자 부당행위 제재 ..... 4-75, 10-147
- 시설공사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회피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 21-229

○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개정과 부정당업자 제재 .....	21-234
○ 권리권 없는 행정부서의 국유재산매각과 입찰보증금 처리 .....	5-105
○ 입찰보증금 납부서 기재금액이 예정가격의 10/100 미달인 경우와 입찰의 효력 .....	5-106
○ 공고내용과 다른 입찰보증금을 받고 실시한 입찰 및 매매계약의 효력 .....	21-241
○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의 예산회계법상의 법인 해당여부 .....	9-159
○ 물품계약 .....	10-145
○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사항 보장절차 .....	10-150
○ 유류조변에 있어서 면세구매 .....	10-158
○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도급경비 지급관서의 범위 .....	10-159
○ 도심지 주둔 미군시설을 교외로 이전통합함에 있어서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	10-179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소정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14-150
○ 국가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	14-169
○ 감사원 판정전 변상명령 .....	14-172
○ 물품출납공무원에 대한 변상판정 .....	9-143
○ 군납품에 대한 변상책임 .....	16-71
○ 채권관리관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10-136
○ 군인공제회 아파트건립사업의 성격 .....	17-146
○ 군인공제회가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자격 및 해약 .....	21-105
○ FMS 종결잔액의 국고세입조치 여부 .....	18-149
○ 올림픽기장 제작의 예산회계법상 문제 .....	18-156
○ 전쟁기념사업회의 수의계약과 예산회계법 적용여부 .....	18-158
○ 수의계약가능기간 종료 후의 수의계약체결 .....	20-221
○ 수의계약에 의한 유류구매 .....	20-228
○ 수의계약에 의한 전산장비 임대차계약체결 .....	20-232
○ 정부계약체결시 군인공제회의 지위 .....	20-223
○ 장기계속계약방식에 의한 설계용역계약체결 .....	20-231
○ 국방전산망사업 전담사업자지정의 의미 .....	20-225
○ 국방일보 광고수입과 수입대체경비 .....	19-127

- 군장품류 구매입찰 참가자격 ..... 19-128
- 예산회계법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뇌물을 준 자’의 범위 ..... 21-231
- 방송공사의 시설을 임차하여 군통신망 운용시 임대 사용료의 납부 ..... 21-227
- 세입징수관이 발송한 재고지서, 재독촉장의 시효중단효력 ..... 22-70
- 입찰서의 금액표시에 한글과 숫자가 상이한 경우 당해 입찰의 효력 ..... 22-71
- 군이 공항공단으로부터 유지·보수 비품 등을 현금으로 대신 지급받아  
비행장시설의 유지·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 ..... 22-72
- KTX-2 계약특수조건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검토 ..... 23-68
-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 23-69
-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 23-70
- 국군수도병원부지 매각계약 해제 가능여부 등 ..... 23-71
- 가압류된 급여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귀속 ..... 23-72
-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른 업체의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 23-73
- 몰수된 계약보증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 ..... 23-74
- 가계약제도의 국내계약 도입이 위법한지 ..... 23-75
- 계약 해제없이 보증인 또는 주계약자를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 ..... 23-76
- 물가연동금지특약의 적법성 여부 등 ..... 23-77
- 군 복지시설 운용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 23-78
- 화재보험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 23-79
- 매출이 취소된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입찰서류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68
- 입찰업체의 영업직원이 뇌물을 제공한 경우 부정당한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24-170
- 물품구매 입찰업체의 적격심사에 관한 질의 ..... 24-172
- “동일품목을 2개 이상 업체에서 개발하였을 경우”의 의미 ..... 24-174
- 주계약업체의 협력업체 변경시 국방부의 승인 여부 ..... 24-179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에 규정된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해당 여부 ..... 24-180
- 부정당업자 추가제재의 타당성 여부 ..... 25-121

○ 허위서류에 의한 입찰 및 계약의 효력 .....	26-170
○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예산 지출업무의 이관 여부 .....	27-163
○ BTL사업 조건부 실시협약 체결 가부 .....	27-166
○ 건축공사 설계비 요율 산정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 .....	27-169
○ 관리비 할증료를 군관사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7-172
○ 현장설명서에 추가된 심사기준의 법적 효력 .....	27-176
○ 국가 계약의 대가 지급에 있어 검사 단계의 생략 가부 .....	27-178
○ BTL사업 지역중소업체 자격요건 .....	28-189
○ BTL사업 재고시시 사업규모 축소 가부 .....	28-193
○ BTL사업 시공출자자 부도로 인한 법률관계 .....	28-208
○ 해군진해관사 BTL사업 건설주간사 지위 .....	28-231
○ 계약사무 일부 타 기관 분장의 문제 .....	29-86
○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수의계약 가부 .....	29-87
○ 부정당업자 제재 확정 후 중도금 지급 가부 .....	29-88
○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7조 제5호 “구속 등 형사처벌로 인한 경우”의 의미 .....	30-177
○ 용역계약에 있어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가부 .....	32-195
○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	32-200

## 18. 국유재산

○ 국가에 대한 사인재산의 기부채납 .....	16-113
○ 포획선박 인정 여부 및 그 처리 .....	1-164
○ 미창 귀속재산 불하 .....	1-169
○ 국유군용지상의 무단건축물 철거에 있어서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여부 .....	3-27
○ 국유임야 대부 .....	2-132
○ 사찰부지와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	15-169
○ 한국군인복지회의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 .....	8-84
○ 채석장의 보상액 산정(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	16-120
○ “평가액의 산술평균치”의 의미(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	16-121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	15-170
○ 사단법인 국방부동우회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허가 ....	21-177
○ 개간촉진법과 국유재산법의 관계 .....	15-171
○ 국유재산의 사용료 .....	15-173
○ 국유재산법상 사용수익료의 징수 여부 .....	21-185
○ 군용시설특별회계법상의 국유림의 처분절차 .....	8-153
○ 용도폐지 건물의 매각처분 .....	10-126
○ 토지구획정리사업시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10-115
○ 공원부지 활용 .....	2-121
○ 국유재산 처분 .....	44-76, 13-78
○ 관사사용료 징수 .....	7-54
○ 국유재산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분임보관청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10-153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	11-131, 11-132, 13-80
○ 국유재산을 공매할 경우 대부신청을 거부한 자 등의 동의를 요하는가의 여부 .....	11-138
○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부기간 도과시의 효과 .....	13-69
○ 국유재산 매수자가 등기완료 전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변경 신청한 경우의 그 효과 .....	12-207, 13-70
○ 부분배자가 상환완료하기 전에 국가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	13-71
○ 국유재산 사용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	13-73
○ 국유재산을 공매함에 있어서 공동명의로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 ....	13-74
○ 도시계획 저촉재산 처리 .....	13-75
○ 매각건물철거에 대체이행 가능여부 .....	13-76
○ 무주부동산 국유화 .....	13-77
○ 재향군인회가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매각처분하였을 경우 국가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12-209
○ 국유재산법상 전물군경유족회의 법적성격 .....	12-219
○ 도시계획구역안의 국유농지의 매각 .....	9-108

○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의 사요 .....	9-111
○ 개인소유명의로 등기된 하천부지의 매수가부 .....	9-120, 10-123
○ 국제관광공사가 공익법인인가 여부 .....	10-155
○ 기부받은 장교관사 건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10-151
○ 분배농지 소유권자 .....	13-80
○ 농지계약법에 의거 분배된 농지가 국유로 확정된 경우에 이미 납입한 상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13-82
○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문제 .....	14-79
○ 연부상환조건으로 매매한 재산의 소유권 .....	14-82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소정의 “건물”의 개념 .....	14-84
○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국유재산의 양도 .....	15-292
○ 군의 사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 .....	15-303
○ 지방자치단체의 탄약고 이전사업 대행 .....	16-115
○ 토지수용법상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범위 .....	16-116
○ 대체시설 제공자에 대한 국유재산 양여 .....	18-161
○ 기관상호협약에 의한 대금정산 .....	18-165
○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국유재산매각 .....	18-167
○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 군용지의 무상귀속 .....	21-183
○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19-159
○ 수색비행장의 항공대학 사용과 사용료 징수 .....	19-133
○ 국유재산 매각과 사용승인 .....	19-135
○ 지정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매각 국유재산의 재취득 .....	20-198
○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 .....	19-136
○ 국유지 매각대금 납부기일연장 .....	20-190
○ 국유재산법상 매각대금 납부기간 연장의 의미 .....	20-193
○ 민간인의 대공화기 구매가능 여부 .....	19-138
○ 국방품질관리소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양여 .....	19-141
○ 국유재산의 무상관리환 .....	20-199
○ 전쟁기념사업회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5년 이상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	19-143

-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수의매수할 수 있는 지위의 양도 ..... 21-167
-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적용 이자율 ..... 21-172
- 국유재산 매각화해 후 계약체결을 지연하고 있는 매수인에 대한 종치 ..... 21-209
- 이주대책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분양가격 및 분양자격의 결정시점 ..... 21-211
- 가압류의 제3채무자인 국가의 재산양여 ..... 21-221
- 은닉 국유재산 자진반납자의 결정 ..... 21-179
- 은닉재산 자진반납에 대한 특례매각의 법률적 성격 ..... 21-206
- 군체력단련장의 회원권 발급 ..... 21-96
-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에 건축된 무허가 하사관 아파트 보상여부 ..... 21-187
- 건설부장관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행위의 노력 ..... 21-201
- 기부채납받은 재산을 군인공제회에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22-56
- 국유재산 매수자의 특약위반에 따른 해체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 22-57
- 국가가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을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납기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지급의무 ..... 22-58
- 군인공제회에 아파트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군관리의 토지를 무상사용 허가할 수 있는지 ..... 22-59
- 기부채납된 군사용 차폐용 간판의 사용료 면제기간 ..... 22-60
- 임야토석의 매각에 있어 산림법 적용여부 등 ..... 22-61
- 강의실 사용료 징수여부 ..... 23-54
- 군 숙소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적 적법성 여부 등 ..... 23-57
-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 24-115
- 수량부족매매시 국유재산 매각대금 산정 방법 ..... 24-118
-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국유재산사용허가의 효력 ..... 24-119
- 국유재산(애기봉 주차장) 사용료 징수 가능 여부 ..... 24-120
-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연체료부과대상 ..... 24-124
- 국유재산 매각시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비 지급 여부 ..... 24-126
- 매수한 징발재산 등의 수의매각 가능 여부 ..... 24-128
- 국보위 특별법상 수의매각 가능 여부 ..... 24-130
- 국유지에서 채취한 토석 처분시 적용법률 ..... 24-132

○ 매각부지에서 발견된 오염토양 및 폐기물의 처리 책임 .....	24-144
○ 국유재산 특례매각 .....	25-95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25-96
○ 수용 및 징발된 토지를 국유재산법상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	25-104
○ 수용토지의 수익계약에 의한 매각 .....	26-123
○ 행정재산(상가) 사용허가시 재계약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	26-133
○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된 국유지의 매각 가부 .....	27-183
○ 군 관사의 관리환 가부 .....	27-185
○ 부동산 계약업무를 공병부서와 경리부서 중 어디에서 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	27-187
○ 국유재산 사용료율 산정기준 시점 .....	27-191
○ 사용·수익허가 변경승인 .....	27-193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후 해당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	29-71
○ 무상 사용허가를 한 기부채납 시설(행정재산)의 대체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유지 여부 .....	29-72
○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징수 가부 .....	29-79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임의 촉탁 가부 .....	29-80
○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30-161
○ 국방대학교 운동장 이용 .....	31-227
○ 군인연금기금으로 유상 매입한 자산의 “국방·군사시설” 해당여부 .....	31-230
○ 군 병원 설립과 관련한 검토 .....	32-148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	32-157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 .....	32-161
○ 「군인복지기본법」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32-165

- 군 공중전화 미 철수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 32-169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판단시 적용 법조 ..... 32-173
- 통신지원업체 행사장소 제공여부 ..... 32-187

## 19. 군사시설보호

- 방호구역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초가지붕 개량가부 ..... 10-81
- 관계행정청이 국방부장관 등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한 허가처분의 효력 ..... 11-129
-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광업권 설정허가 ..... 11-142
- 군사시설보호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의 ..... 11-166, 12-113, 12-215
-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협의완료시점 ..... 21-195
- 항공탄약고지역의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3-129
- 민수용 유통저장시설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3-130
- 부대부변 주택신축 ..... 14-155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 12-171
-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 대상 ..... 15-259
- 외국법인 토지취득허가와 국방부장관과의 협의 ..... 15-260
- 행정청의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싸리채취 절차 ..... 15-264
-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범위 ..... 15-265
- 관할부대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권한 유무 ..... 16-143
-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위법한 건축공사에 대한 조치 ..... 17-156
- 방위산업체 생산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인지 여부 .... 17-158
- 군용전기통신법의 특별보호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 여부 ..... 19-174
- 예비군 교육훈련장이 군사시설인지 여부 ..... 19-176
- 토지수용법상의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의미 ..... 17-159
- 공군기지법상 기지보위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 여부 ..... 18-179
- 국가보안상 현저히 유해한 건축물 철거 ..... 18-181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전에 설정예정통보를 받은 군수가 행한 건축허가의 적법성 ..... 19-155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전 건축허가의 효력 .....	19-164
○ 공군기지법을 위반한 건조물설치허가의 효력 .....	20-210
○ 공군기지법 규정의 효력 .....	20-212
○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아파트에 대한 고도제한 .....	20-208
○ 외국정부와의 합의각서에 기한 재산권 제한 .....	20-214
○ 군용항공기지법과 미공군규정의 효력관계 .....	20-216
○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과 관할부대장과의 사전협의 .....	21-174
○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 .....	21-197
○ 대지조성을 위한 절토와 군용항공기지법상 건축물의 고도제한 .....	21-203
○ 건축물 제5조 소정의 허가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172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설치결정시의 협의 .....	20-206
○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에 관련된 협의 .....	20-207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축허가 취소 .....	19-157
○ 일반적인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의 법적근거 .....	19-169
○ 군사시설의 촬영, 묘사 등의 행위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금지되는지 여부 .....	19-171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군사시설의 의미 .....	21-218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범위 .....	22-62
○ 군용항공기지법상의 고도제한에 저촉되나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시설물의 설치에 동의할 수 있는지 .....	23-50
○ 군사시설보호구역상 부동의, 협의, 위타지역조정승인권 .....	24-135
○ 재래식 탄약의 비군사화 처리시설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37
○ 군용항공기지구역내 행위제한사항의 발효시점 .....	24-138
○ 군용화약류제조시설의 신축, 변경행위에 관한 질의 .....	24-139
○ 예비군훈련장의 군사시설 해당 여부 .....	24-141
○ 군의 폭발물처리장이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43
○ 군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25-96
○ 199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 계룡대 본청에 대하여 2003년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5-102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도로개설 동의를 현물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25-108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 협의)대상 건축법제9조의 건축신고 사항이 포함되는지 .....	26-126
○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내에 심정 설치 허용 여부 .....	26-129
○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의 대상 .....	26-131
○ 군용항공기지법 적용여부 .....	26-137
○ 부산항건설사무소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7-195
○ 군용항공기지법상 연속적인 능선형태의 의미 .....	27-201
○ 영내 설치되는 주유소가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27-20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재협의대상 여부 .....	28-18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상 “방공기지” .....	28-197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상 ‘협의’의 범위 .....	28-200
○ 스넥바 입찰공고시 참가자격 제한 가부 .....	28-205
○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심의절차 .....	28-213
○ 기부대양여사업 대체시설에 비품포함 여부 .....	28-216
○ 한 필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건축된 경우 협의 대상 여부 .....	28-219
○ 군용항공기지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제공주체 .....	28-223
○ 주한미군기지 소요물을 사업자에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여부 .....	28-227
○ 주한미군기지 오염토양 조사 및 정화작업의 범위 및 주체 .....	28-229
○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	29-67
○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한 허가가 군 협의 대상인지 여부 .....	29-68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 .....	29-70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9-73

-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군사시설의 의미 ..... 29-74
- 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 변경 ..... 29-81
- 토양오염정화 관련 비용 부담 문제 ..... 29-82
- 토양오염정화 관련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 ..... 29-83
- 저유소 오염토양정화책임 및 비용 청구 ..... 29-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 30-164
- 민간투자예 의한 군 체력단련장 건설 시 적용법률 ..... 30-168
-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  
협의대상인지 여부 ..... 30-171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령 관련 ..... 30-17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해석 관련 ..... 31-219
- 건축법 상 국방·군사시설인 군관사 내 과외교습 등 상행위 가부 31-23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5항의 재협의 요청 관련 32-176
- 비행안전 제1구역의 군사시설 설치 승인권자 ..... 32-18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 ..... 32-183

## 20. 상 훈

- 부대표창의 범위 ..... 1-128
- 상이기장 및 군인유족기장 수여대상자의 범위 ..... 1-129
- 군표창규정 제7조 및 군표창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권자의 해석 ..... 2-80
- 반공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계 ..... 3-32
- 반공법 제10조에 의한 상금 및 보조금 지급 ..... 3-35
- 무공훈장대리 수여권 문제 ..... 3-250, 4-135
- 무공훈장 수상요건 해당여부 ..... 3-259
- 유족순위 ..... 3-260
- 중앙정보부장의 국군장병에 대한 표창 ..... 4-133
- 위수사령관의 표창권 ..... 4-138
- 외국대통령 부대표창 수장폐용 가능여부 ..... 7-145

- 계엄사령관 표창권 행사 ..... 10-185
- 비군인에 대한 6·25사변 중군기장령 수여 가능 여부 ..... 24-93
- 故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요건 충족 여부 ..... 30-132

## 21. 국립묘지안장

- 배우자 국립묘지 합장 가부 ..... 3-108, 15-45
- 재혼한 군인의 경우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는 배우자 ..... 21-121
- 예비군의 국립묘지 안장 ..... 7-45, 9-56, 11-24, 13-41, 13-39, 21-119
- 영현기록서류에 “미수집 및 불명”으로 기재된 자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 ..... 11-29
- 소집중인 방위병의 국립묘지 안장 가부 ..... 13-34
- 해양경찰대 대원이 순직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가부 ..... 14-167
-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 ..... 15-60
-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립묘지에의 안장이 가능한지 여부 ..... 15-64
-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대상 ..... 17-122
- 경비교도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여부 ..... 17-124, 21-125
- 교정시설 경비교도의 국립묘지 안장여부 ..... 18-144
- 국립묘지 안장대상 ..... 17-125
- 무공훈장을 받은 경찰관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인지 여부 ..... 17-126
- 테러 등에 의한 사망한 자의 위패봉안 ..... 18-145
- 휴가·외출중 사망한 국민의 국립묘지 안장 ..... 20-133
- 상해임시정부요인의 국립묘지 안장 ..... 20-135
- 비전공사망으로 처리된 군인의 국립묘지 안장여부 ..... 21-85
- 국립묘지 안장시 육군본부소속 군무원의 순직확인권자 ..... 21-103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와 국립묘지 안장대상 ..... 21-110
- 6·25사변시 무공훈장을 받은 군속이 국립묘지령상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인지 ..... 22-36
- 재직당시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도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찰관으로 볼 수 있는지 ..... 23-31

-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국립묘지 안장자격 ..... 24-88
- 전직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 24-90
- 국립묘지 비문 설치 ..... 25-53
- 국립묘지 합장대상인 배우자의 의미 ..... 26-96
- 전몰의제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 26-98
- 충무 이하 무공훈장 수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 26-101
- 국립묘지 합장 대상 여부 ..... 26-103

## 22. 형 사

### 가. 균형법

- 균형법 부칙 제6조에 의병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1-221
- 군무이탈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 ..... 1-25
- 군무이탈후 사면되었으나 계속 복귀하지 않는 자 등의 처리 ..... 1-201
- 주월 한국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 관할지역 내에서의 전시 사변규정의 적용여부 ..... 3-212
- 군무이탈자 비호죄의 적용여부 ..... 4-164
- 노획물에 대한 영득과 횡령 ..... 4-173
- 주월한국군이 월맹으로 탈출한 경우에 있어서의 처벌 ..... 5-112
- 군속의 군무이탈 ..... 6-104, 15-274
- 5·16 이전 군무이탈자의 복무설정행위의 효력 및 군무이탈죄의 성립여부 ..... 6-110
- 5·16 이후 군무이탈자로서 제1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한 처벌 ..... 15-273
- 적전의 개념 ..... 7-130, 1-24
- 방위소집중인 향토예비군의 형사처벌 ..... 7-135
- 하자 있는 입영조치와 군무이탈죄 성립여부 ..... 7-140
- 청원경찰의 군법 피적용 문제 ..... 13-133
- 군무이탈후 일본 밀입국자에 대한 균형법상 처벌가능 여부 ..... 13-137
- 균형법상 상관의 개념 ..... 14-159

- 정부관서에서 방독면을 사용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 16-135
- 사관학교 가입학자가 군형법 피적용자인지 여부 ..... 18-187
- 재영중인 학군사관후보생이 군형법 피적용자인지 여부 ..... 18-188
- 향토예비군대원이 군형법 피적용자인지 여부 ..... 18-190
- 경찰제복인 전투복 등의 착용·제조·판매와 처벌 ..... 18-197
- 연예인들의 군복착용 허용여부 ..... 18-198
- 예비군복이 단속대상품목인 군복인지 여부 ..... 20-267
- 암호자재수발시의 무장경호병을 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9-198
- 뇌사상태인 군인의 장기이식 허용 ..... 20-111
- 해외 장기군무이탈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 22-73
- 입영기피죄 등의 공소시효 기산점 ..... 23-83
-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하여, 군형법 제1조 제3항 소장 '실역'의 의미 · 23-85
- 정문 위병소 배치 헌병이 군형법 상 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245

#### 나. 군사법원법

- 일반사면에 따른 재심청구 ..... 1-124
- 형집행기간 산입 ..... 1-215
- 노무단소속 예비역 장병의 재판관할 ..... 1-216
- 고등군법회의의 분실설치와 관할관의 확인권의 내부적 위임 ..... 1-220
- 추징금 징수 ..... 1-223
- 군법회의 계속중인 민간인의 수용 및 미결수의 일반병원의 입원 .... 1-226
- 5·16 이전 군복무 이탈자에 대한 형사관할 ..... 1-227
- 의병집행정지 출소자 잔형집행 ..... 1-228
- 군법회의법상 관할관의 확인조치 ..... 1-229
- 군법회의 사형판결의 집행방법 ..... 1-231
- 형면제와 형집행면제와의 차이점 ..... 1-231
- 형기 기산일 ..... 1-233, 1-244, 1-246
- 형집행정지된 자에 군법회의 판결의 효력상실 ..... 1-234
- 몰수물자 처리 ..... 1-239

○ 공소심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권 .....	1-241
○ 국가재건 최고회의령 제34호에 의한 군법회의관할의 성질 .....	1-242
○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사건처리 .....	1-247
○ 국법회의의 관할권 .....	1-248
○ 재산형 집행 .....	1-260, 2-212
○ 군수사기관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의 효력 .....	1-261
○ 형집행중인 국회의원 석방결의 .....	1-262
○ 계엄지역내에서의 군법무관의 영장의 효력 .....	1-264
○ 군정보원에 대한 범죄사건 취급 및 밀수출입 물자취급과 밀항선원 처리권한 .....	1-266
○ 군법회의 판결사건 .....	1-268
○ 미결구금일수 산입 .....	2-193, 6-108
○ 구속기간 갱신 .....	2-194
○ 군수사기관의 수사업무의 한계 .....	2-196
○ 입영부대 도착자에 대한 재판권 .....	2-198, 6-115
○ 계엄군법회의의 사형선고의 집행방법 .....	15-269
○ 미결구금일수의 집행 .....	15-275
○ 벌금형 언도 .....	2-213
○ 군무이탈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적용여부 .....	3-206
○ 군법회의 설치 및 설치보류 .....	3-207
○ 형집행정지중에 있는 자의 형의 면제 .....	3-211
○ 공소시효가 완성된 장물의 압수 .....	3-215
○ 군법회의 재판집행기관 .....	3-217
○ 군법회의 재심 .....	3-226, 3-229
○ 공소제기절차 .....	3-231
○ 비관할자에 대한 영장발부의 정당성 여부 .....	3-232
○ 2개군 이상 관련사건의 재판관할 .....	4-128
○ 5·16 이전 군무이탈자의 잔형집행 .....	7-137
○ 구속당한 응소자의 신분관계 및 영장효과 .....	8-128
○ 보안대 요원의 구속절차 .....	8-130

○ 비상계엄선포시 수사권 .....	8-131
○ 근무연습소집에 의하여 국군부대에 소집된 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구속 및 소집해제 .....	9-129
○ 타군소속 장병에 대한 긴급구속 및 그 인치된 기간의 구속기간 통산여부 ·	9-130
○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 재판권 관할 .....	10-106
○ 공소시효기간 산정 .....	10-108
○ 전시 근로동원자의 군법회의 적용 .....	10-109
○ 군 사법경찰관리가 군장품 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 및 군장품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 .....	10-111
○ 군용폭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 .....	10-163
○ 장물인 군용물의 압수 및 그 보좌관의 처벌가능 여부 .....	13-134
○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해석에 있어서 물가의 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	13-136
○ 군용열차내 수송관이 군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16-137
○ 고용군무원의 재판관할권 .....	17-163
○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받은 파면형의 구제절차 .....	17-164
○ 국군보안부대원의 구속·관할 등에 관한 문제 .....	18-192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된 예비군에 대한 군사재판관할권 .....	19-196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의 처리 .....	18-195
○ 계엄사령부예의 군사법원 설치가능 여부 .....	19-189
○ 관할관 확인조치기간이 미결구금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19-193
○ 검찰수사관이 입건하여 검찰관에게 송치할 권한이 있음 .....	22-74

#### 다. 기 타

○ 국방경비법상의 형의 면제 .....	1-224
○ 예비검속 .....	1-232
○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해석적용 .....	1-254
○ 정치범의 개념 .....	1-259
○ 해안경비법상의 금고와 형법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0조의 금고 또는 구류와의 이동 .....	2-192

- 군법회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보상요구 ..... 2-209
- 외국환 소지행위의 처벌 가능성 ..... 3-140
- 국방경비법 제96조의 “판결”의 해석 ..... 3-222
- 형의 실효와 파면취소사유 해당여부 ..... 4-127
- 여군 영창설치 및 헌병직무보조병 임명 ..... 4-165
- 반공법에 대한 질의 ..... 5-111
- 군인 등에 대한 전매법 위반사건의 고발 및 통고처분 ..... 5-113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성립여부 ..... 7-133
- 총포화약류단속법 적용 ..... 10-166
- 군의관이 승조하지 않고 있는 해군함정에 위생하사관이 출동중 불가피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발병, 사망한 경우 의무책임 ..... 12-187
- 외국국적 취득자에 대한 군무이탈자 수배해제 ..... 15-270
- 수형자의 청원에 의한 군교도소에서 작업과 상여금 ..... 15-271
- 군교도소의 미결수에 대한 작업상여금 지급 ..... 10-186
- 치료감호집행기간의 형기산입 ..... 20-271
- 출·퇴근시 교통통제를 하는 헌병이 도교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의 헌병인가 ..... 22-75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군용물 재산범죄 처리 ..... 31-221

### 23. 민사관계

- 강제집행에 관한 질의 ..... 1-195
- 외국인 토지소유권 취득허가 ..... 1-197
- 소송비용 관장 ..... 1-199
- 채납토지개량조합비 승계의무 유무 ..... 1-201
- 소운송업법 조문해석 ..... 1-204
- 소운송업법에 의한 하역작업 ..... 1-206
- 탄약저장 지역내에 거주하는 민간인의 철거 ..... 1-208
- 고철수집에 대한 법적해석 ..... 1-210
- 국유, 공유, 민유 부동산의 구분 및 징발부동산의 보상금 지급 기산일자 ..... 1-212

○ 관권침해에 대한 법규해석 .....	1-213
○ 군량미 수급절차에 있어서 인도청구권 유무 .....	2-182
○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	2-190
○ 비영리법인 설치허가 주무관청의 범위 .....	3-39
○ 미확정 채권양수자의 지위 .....	15-290
○ 재판상 화해의 효력 .....	15-294
○ 중첩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15-302
○ 민통선 북방지역의 재산에 대한 매수 .....	14-103
○ 외국정부의 한국내 부동산 취득 .....	3-176
○ 소유권 양도증 및 공증증서 소지인에 대한 물품인도 문제 .....	3-182
○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	3-183
○ 청구원의 순위보전 .....	3-185
○ 방치 매장광물의 소유권 .....	3-188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있어 공시송달방법 .....	3-195
○ 귀속재산 여부 .....	4-118
○ 미군주둔지역 임야의 처분권 .....	4-121
○ 유언의 효력 .....	5-101
○ 사단법인 설립 .....	5-102
○ 군경선교회의 설립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 .....	16-125
○ 예비군수송협회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감독권 .....	16-126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변경된 법인정관의 효력 .....	16-128
○ 비영리법인의 기부금품모집 행위와 그 설립허가 취소 .....	16-129
○ 신원보증서 .....	5-103
○ 일본에 귀화하기 전에 한국에서 입적시킨 양자와의 귀화후 친권관계효력 .....	7-125
○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 부가 .....	8-110
○ 군견구입을 위한 복권발행 .....	8-121
○ 매장물자 발급보증금 처리 .....	8-123
○ 전부명령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기존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9-135
○ 채권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효력 .....	10-156

○ 소송계류중인 대지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제지방법 여하 .....	14-175
○ 예고등기된 토지를 매수할 경우의 보상 .....	14-177
○ 매매계약 체결 전에 필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	14-179
○ 감사원 판정에 의한 변상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	10-138
○ 군수품 손망실 사건에 대한 배상청구 .....	10-141
○ 매수후 소유권 미이전 재산보호 .....	12-161, 12-221
○ 부당이득금의 이자적용 .....	12-164
○ 매매계약후 당사자를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	10-154
○ 매도인의 하자담보기간 .....	16-130
○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채무승계 .....	16-131
○ 민간차량에 상이를 입은 군인의 치료비 청구 .....	17-175
○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18-203
○ 지상권 설정 계약후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	18-204
○ 이행대행자의 사용 .....	18-206
○ 배상결정시 예견못한 적극적 손해발생과 배상 .....	18-211
○ 가압류된 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이 행하여진 경우의 효력 .....	18-213
○ 전우신문에 일간신문 기사를 전재할 경우의 저작권 침해 여부 .....	19-203
○ 계약해제시의 책임 .....	19-208
○ 퇴학당한 국군간호사관후보생도의 경비반환 .....	20-23
○ 해직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퇴직금 산정 .....	20-24
○ 재임용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퇴직금 반환범위 .....	20-27
○ 중재절차에 있어서 국가의 대표자 .....	22-76
○ 수용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	23-87
○ 군의관의 민간인 진료시 면책협약의 효력 .....	24-193
○ 존속기간 영구인 지상권설정계약의 유효성 .....	25-100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급여채권 범위 .....	26-169
○ 행정봉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	27-211
○ 비영리법인인 국방인재개발원의 수익사업 .....	31-243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32-185
○ 동시이행 판결 선고사안에서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의 법률관계 .....	32-222

## 24. 기 타

○ 표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선박처리 .....	1-130
○ 수로업무법에 관한 질의 .....	1-156
○ 사체부검 .....	1-272
○ 0-2 요원의 노동조합조직의 합법성 .....	1-274
○ 부대우편물 검열에 대한 적법성 여부 .....	1-276
○ 외국인의 한국변호사회 가입 .....	2-180
○ 제적사유 해당자의 사면처리 .....	2-47
○ 사회단체등록의 업무소관 .....	2-218
○ 군노무자 노동운동 .....	2-216, 2-219
○ 해군함정에 대한 선박법 및 선박안정법의 적용여부 .....	2-220
○ 일반사면으로 인한 원계급복귀 .....	2-269
○ 일반사면에 따른 병역기피자 처리 .....	2-270
○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면 해당 여부 .....	2-271
○ 사면법에 의한 복권 .....	3-171
○ 노무근무단의 노무자의징계 .....	3-154
○ 직위해제기간의 정의 및 소득세 징수 .....	4-79
○ 임시우편물단속법 제3조 .....	4-143
○ 우편물의 지구검열실시 .....	4-144
○ 군통신시설 이설보상 .....	4-152
○ 현역군인의 가사심판법 적용 .....	4-174
○ 군인보험 계속 신청 .....	5-147
○ 사면의 효력 .....	7-139
○ 사관학교 퇴교자의 교육기간이 사병경력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15-65
○ 관공서의 휴일 .....	15-50
○ 군의관의 대한의학협회 회원 가입 .....	8-141
○ 매장물자처리규정 제3조 제2항의 작전지역의 의미 .....	9-151
○ 공문서 작성시 기안책임 .....	10-171

○ 보안업무에 관한 질의 .....	10-179
○ 비밀취급인가 .....	10-180
○ 군인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취소여부 .....	10-191
○ 공인회계사 자격 .....	10-195
○ 군사우체국 설치와 관련하여 체신부와의 군사우편요금 결제 .....	11-164
○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의한 신원조사 .....	11-167
○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상 동원업체 의무위반시 처벌 근거 .....	11-170
○ 민원결과통보에 대한 회신 .....	12-191
○ 국방부 의무자문관 임명에 있어서 이미 판정된 보안적부심사의 효력 .....	12-195
○ 보안업무시행규칙 개정문제 .....	12-225
○ 고속도로 연변 토지형질변경 .....	13-142
○ 사단법인 한국군인복지연합회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13-143
○ 공직선거기간 중 병력동원훈련이 가능한지 .....	23-80
○ 방산물자계약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서를 경영위원회 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	23-81
○ 읍, 면, 동 방위협의회 존치여부 .....	23-82
○ 반복민원 종결처리 부서 .....	23-84
○ 타 정부기관 생산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안조치를 해야 하는지 .....	23-86
○ 기념주화 발행가능 여부 .....	23-88
○ 군복지시설도 영업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23-89
○ 군보도요원중 발급가능 여부 .....	14-168
○ 민간업체가 발칸포를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	14-181
○ 민통선 북방에서의 광석반출 .....	1-202
○ 귀농선 부근의형석을 전리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	1-203
○ 사전동원 영장의 법적효력 .....	15-280
○ 양자와군인자녀 교육법상의자녀 .....	15-282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의 적용대상 .....	15-283
○ 기능사 훈련교사의자격기준 .....	15-288

○ 주재무관 자녀의 군인자녀교육법상의 혜택 .....	15-286
○ 단기사관학교설치법상의 초대대학의 의미 .....	15-288
○ 국방대학원에 1년의 석사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15-289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업체 .....	15-296
○ 복권의 효력 .....	15-297
○ 한국국방학회(비영리법인)의 정기간행물 유가판매 .....	15-298
○ 일반사면령상의 금품수수비위의 범위 .....	15-300
○ 국군정신전력학교 연구실의 국민윤리학회 회원가입 .....	15-301
○ 광업권의 권리를 수용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 .....	16-114
○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 .....	16-144
○ 입원환자를 위한 군인의 신체 일부제공 .....	16-149
○ 재향군인회의 회비수납방법 .....	16-150
○ 근로기준법상의 계속근로연수 .....	16-151
○ 재향군인회의 의문성금 각출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	16-152
○ 국방관리연구소 연구원의 승용차 면세혜택 여부 .....	16-154
○ 육사신보에 일반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	16-156
○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술할 수 있는지 여부 .....	17-174
○ 군함에 의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과 오염방지 .....	18-239
○ 개정 신체검사규칙의 적용대상자 .....	19-233
○ 군병원이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19-238
○ 군병원에서 민간인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가부 .....	19-244
○ 각군 발행의 군 대형운전면허의 효력 .....	21-156
○ 문서 수발 전령병의 가스총 휴대 .....	21-152
○ 국보위특조법의 폐지와 그에 따른 사전동원, 비공개동원, 부분동원 .....	21-259
○ 정훈교육자료로 TV, 프로그램이나 출판물의 내용을 복제 반포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22-77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추진하면서 군부대 오수를 연계처리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군부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22-78
○ 미 정부 소유 기술품을 생산시에는 국산품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바 정비시에도 지적 소유권이 적용되는지 여부 .....	22-79

-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위산업물자를 구입하여 국가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여부 ..... 22-80
- 보안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개정 필요성 ..... 22-81
- 국방대학원 특정직 교수의 재임용 적용기간 ..... 22-82
- 공군기술고등학교학생의 후불승차 가능 여부 ..... 24-192
- 한의사 면허 소지 사병의 진료행위 가능 여부 ..... 24-195
- 훈련비밀기록물의 보존절차 ..... 24-198
- 6.25전쟁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의 저작권 ..... 25-127
- 국군체육부대 선수팀의 프로리그 참가 ..... 25-131
- 군부대 통상명칭을 국정원 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5-133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 25-135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군 병원에서 관리하는 사체의 일부를  
떼어내서 별도의 장소에서 부검할 수 있는지 여부 ..... 25-136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록 전체 송부요청에 대하여  
국방부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5-138
- 민간검찰이 현역군인을 내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5-140
- 보험료 급여공제 수수료 징수 ..... 26-173
- 외국인강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여부 ..... 27-214
- 국고대여학자금대부 대상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포함 여부 ..... 29-44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의해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 29-49
-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 ..... 29-90
-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에 ‘주과수’ 포함 여부 ..... 29-93
- 국방부 감사처분의 거부 가능 여부 ..... 29-94
- 공무원 및 군인의 비영리법인 참여 가부 ..... 29-95
- 군 차량 중과실 교통사고 보호대책 ..... 29-96
-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직무발명 관리 ..... 29-97
- 군 이사화물 업체와의 업무제휴 ..... 29-98
- 중앙복지시설 예약환불금 ..... 29-99

○ 군 차량 보험 업무 .....	29-100
○ 국회의원의 군부대 교양강의 가부 .....	29-101
○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명의 신고 접수 및 피해종교단체의 범위 ...	30-180
○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	30-184
○ 전문자격(면허)을 보유한 의무병의 군 보건의료행위 가능여부 .....	31-187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유급의 현장연수” 관련 .....	31-200
○ 특정수혈부작용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적법한지 여부 .....	31-247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32-104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검토 .....	32-207
○ 서해 5개 도서의 관할권 문제 .....	32-209
○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 .....	32-218
○ 안보학 교수의 정년 보장 .....	32-225
○ 국가보훈처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32-226
○ 평창올림픽 군 지원 가능여부 등 검토 .....	32-229
○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위 .....	32-222
○ 군수형자 작업분류 .....	32-235
○ 미송환 북한군 사체의 처리 .....	32-237



##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제32집

발행일 2018년 5월 7일  
편집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발행처 국방부  
디자인 국군인쇄창 원고편집과  
인쇄 국군인쇄창 M18030358



간첩, 방산스파이, 기밀누설, 테러범 등 우리나라의 숨은 위험들을 신고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 신고유형

간첩 / 방산스파이  
기밀누설 / 테러범  
방산스파이 / 방산기밀유출  
방산기밀유출 / 방산기밀유출

#### 상급내역

간첩: 1년 이상  
방산스파이: 1년 이상  
기밀누설: 1년 이상  
테러범: 1년 이상

#### 신고방법

전화: 1337  
국방기무사령부  
국방기무사령부  
국방기무사령부  
국방기무사령부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인터넷, 인터넷, 모바일 신고/상담시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

